

K C V S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2010년 8월 26일(목) 09:30~17: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학술대회 일정

| | 일 시 | 내 용 |
|-------|-------------|---|
| | 09:30~10:00 | 등 록 |
| | 10:00~10:10 | 개회사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 | 10:10~10:40 | 개편 전국범죄피해조사 소개 및 범죄통계사이트 시연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 |
| | 10:40~10:50 | 휴 식 |
| 제 1 부 | 10:50~1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센터장 발표 1.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2.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탁종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 론 : 신동준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진우 경찰청 수사과 경감 |
| | 12:30~14:00 | 점심시간 |
| 제 2 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 발표 1.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노성호 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발표 2. 폭력 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김성언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토 론 :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 15:40~16:00 | 휴 식 |
| 제 3 부 | 16:00~17: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이순래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발표 1.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김준호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2.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 주요 모델들의 검증 박정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성식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토 론 :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Contents

목 차

| | | |
|-------------|---|-----|
| □ | 개회사 | 1 |
| □ | 개편 전국범죄피해조사 소개 및 범죄통계사이트 시연 | 7 |
|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 | |
| 제 1 부 | 발표 1.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 37 |
| | 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발표 2.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 93 |
| | 탁종연(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 제 2 부 | 발표 1.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117 |
| | 노성호(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 |
| | 발표 2. 폭력 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 147 |
| | 김성언(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 |
| 제 3 부 | 발표 1.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 183 |
| | 김준호(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 | 발표 2.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 233 |
| | 박정선(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
| | 이성식(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

개회사

1
가

1994

3

가

가

2008

12

2009
가

」가

,
1

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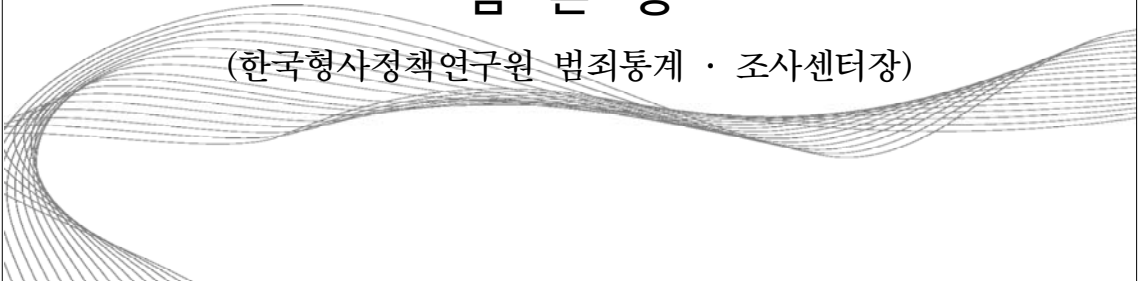
2010 8 26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개편 원칙과 특징**

김 은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 · 조사센터장)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개편 원칙과 특징]

김 은 경*

I. 추진배경 및 목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숨은 범죄(hidden crime) 발생률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각종 범죄예방 정책수립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¹⁾

그러나 기존 범죄피해조사는 모집단의 편향성, 표본의 대표성, 표집방법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과 한계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과학화된 통계자료로서 자리매김 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기존 범죄피해조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의 질과 유용성을 향상시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2009년 KCVS(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였다. 개편의 핵심목표는 (1) 범죄피해의 보고율을 늘리고, (2) 개별사건의 피해양상에 관하여 추가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다.

본 개편작업의 의의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격적인 대규모 전국표본설계에 기반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는 건국 이래 최초로 기획되는 우리나라 범죄현상에 관한 종합적 사회조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정확성과 유용성이 향상된 기초통계들은 각종 형사정책이 실제에 근거한 정책(evidence-based)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집합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 · 조사센터장

1) 2009년 실시된 조사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피해조사라는 이름으로 8번째 실시하는 조사이다. 첫 번째로 실시된 1990년의 범죄피해조사는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하였고, 다섯 번째로 실시된 2000년의 범죄피해조사는 국제범죄피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율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범죄피해율 및 범죄비용(Costs of crime)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사회지표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범죄문제해결에 대한 공공적 관심과 실천을 고취시킬 수 있다.

넷째, 조사 원자료(raw data)를 통계정보DB 시스템으로 구현, 범죄피해실태 및 추이 등을 일반국민에게 알게 쉽게 통계의미풀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사데이터(시계열적 및 인과론적 분석자료)를 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범죄학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범죄피해조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1. 범죄피해조사의 연혁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양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197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경험적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본격적인 범죄피해조사는 1991년에 시작한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규모의 조사가 아닌 지역조사였고, 체계적으로 전국규모의 범죄피해조사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후 거의 동일한 표집방법과 설문지를 이용하여 주기적(약 3년 주기)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비교적 체계적·안정적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1년에는 세계 70여개 국가가 실시하는 국제범죄피해조사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범죄피해를 국제적인 공통기준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였다(장준오, 2001).

지난 십여년에 걸친 범죄피해조사의 진행과정을 개관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범죄피해조사의 연혁

- 1990. 1~12: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연구사업 수행
- 1991. 1~12: 『1990년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서울시민 2000명에 대한 전화조사)
- 1994. 1~12: 제1차 『1993년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4세 이상 성인 2000명에 대한 면접조사)
- 1997. 1~12: 제2차 『1996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1999. 1~12: 제3차 『199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1. 1~12: 국제범죄피해조사방식에 의한 『2000년 국제범죄피해조사-한국편』
- 2003. 1~12: 제4차 『2002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6. 1~12: 제5차 『2005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실시
- 2008. 8. 1. : KIC 범죄피해조사 개편 준비 위원회(총 12인) 발족
- 2008. 8~12: 개편방안 실무회의 워크숍(총 7회)
- 2009. 1~ 8: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재설계 및 예비조사
- 2009. 7~ 8: KIC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및 국가통계 승인작업
- 2009. 9~10: 개편 원년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범죄피해조사 자료가 정책적 및 이론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가 가능하면 범죄의 실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실제 범죄현상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방법론적 조사연구와 토론들이 함께 추진되어 왔고, 그에 따라 범죄피해조사(NCVS, BCS 등)의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²⁾

하지만 우리의 경우 특별히 방법론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기획된 조사나 연구들은 별로 없었고, 조사의 질에 대한 평가연구 역시 2000년대 이전까지 거의 전무하였다. 조사 시행 10여년이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실제 범죄피해조사를 실행하였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범죄피해조사가 어느 정도 범죄의 실재에 근접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토대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이순래, 2002; 박철현, 2002).

2) 이에 대해서는 NCVS Interviewing Manual for Field Representatives, <http://www.ojp.usdoj.gov/bjs/pub/pdf/manual.pdf>를 참조하기 바람.

이와 같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평가를 토대로, 본 연구원에서는 범죄피해 조사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8월에는 구체적인 개편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연구원내외 관련전문가들 12인으로 구성된 [범죄피해 조사 개편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009년에는 개편준비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본격적 개편작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통계청와의 승인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는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국가승인통계명칭과 승인번호 ‘제40301호’를 획득하였다.

2. 기존 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기존 범죄피해조사가 지닌 문제점은 크게, (1) 표집방법과 관련된 한계와 (2) 개념 측정과 관련된 오류와 단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 표집방법의 문제

1) 모집단의 규정

범죄피해조사는 표본조사이다. 표본조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바로 모집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조사에서 모집단의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는 관찰단위, 연령범주, 지역범위이다.

1) 먼저, 관찰단위와 관련한 문제이다. 기존 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설정하고, 표집은 가구 수가 아니라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범죄피해조사는 가구단위 범죄와 개인단위 범죄로 양분되어 있다. 즉 분석단위가 가구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가 상존한다. 이처럼, 두 가지 분석단위에 걸맞은 표본설계를 하지 않고, 인구표본에 기초하여 가구 단위까지 포괄하는 것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단위 표본을 가지고 가구단위 분석으로까지 확장할 경우, 단순히 표집오차의 문제보다 좀더 심각한 분석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분석단위가 다른 가구범죄율과 개인범죄율은 결코 합쳐서 분석될 수 없다. 기존 범죄피해조사에서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전체범죄 피해율을 추산한 것은 표집의 한계와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확장시켜 분석상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가령, 가구대상 범죄피해율을 가구내 가구원 경험을 각각으로 추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 전체 범죄피해

율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환산되었다.³⁾

2) 연령범위는 크게 범죄피해조사 대상자의 하한연령과 상한연령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령산정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존범죄피해조사의 경우, 하한연령기준은 1994년의 경우엔 14세 이상, 1997년, 1999년, 2003년, 2006년의 네 차례 모두 15세 이상, 그리고 2000년 조사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각각 일관되지 못하였다. 하한연령의 비일관성보다 좀더 심각한 문제점은 연령산정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령산정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사지침서(매뉴얼)]이 부재하였고, 그 결과 조사실무에서 가장 핵심인 ‘조사대상시점’과 ‘조사기준시점’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막연히 조사대상시점(즉 지난 한해 동안)에 14세 또는 15세, 16세 이상인 사람으로만 규정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기존 조사의 하한연령은 “1년”에 가까운 범주차이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서 시계열적 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사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사대상시점과 조사기준시점을 구분하는 등 일관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3) 지역범위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범죄피해조사는 전국조사를 표방하였지만, 모집단을 제주도도 제외하고 전국으로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의 범죄발생율이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반드시 제주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박순진, 2002).

2) 표본규모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정해진 조사시간과 조사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조사에서 표본의 규모는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내 요소간의 동질성, 분석에서의 허용오차,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 및 변수의 카테고리의 수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범죄피해조사와 같이 실제 생활에서 흔치않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기 위

3) 즉 2006년 조사에서 가구범죄피해율 6.1%(1000가구당 피해율 61.46), 개인범죄피해율 2.4%(1000명당 피해율 23.9), 그리고 전체범죄 피해율은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8.1%(1000명당 피해율 80.98)로 제시하고 있다(김지선 외, 2006:56). 이때의 8.1% 피해율은 가구범죄피해율이 결국 가구원경험율로 환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범죄피해율은 이 때문에 수치가 크게 과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유형 중 가장 발생빈도가 낮은 범죄의 발생율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범죄피해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목표 표본수인 2,000사례는 본 연구원에서 최초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한 연구진들이 서울지역조사를 위해서 오차요인과 분석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표본 수이다(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1992). 그러나 전국조사로 확대된 이후에도 조사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서 2,000케이스가 계속 유지되어왔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세이상의 총인구수는 47,754,781명으로 2,000이라는 표본 수는 15세 이상 총인구의 1/23,877에 해당한다. 이것은 만약 우리사회에서 범죄가 임의적으로 분포한다고 하면 현재의 표본규모를 통해서 최소한 1사례 이상의 범죄피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해에 2만 3천건 이상의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통해 2005년의 범죄실태를 보면, 폭행 19,463건, 상해 31,238건, 강간 11,757건, 강도 5,266건, 절도 191,114건으로 공식통계에 암수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대부분의 범죄가 범죄피해조사를 통해서 포착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율을 추정하거나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추가분석⁴⁾을 행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대폭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김지선 외, 2006:249)⁵⁾.

3) 표집틀과 표본추출방식

일반적으로 표집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개별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해야 하며, 선정된 표본이 모집단의 속성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범죄피해조사는 표집단위를 기본적으로 인구기준으로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인구기준 표집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에 대한 집계를 할 경우 표본이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과다 또는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가구범죄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하였고 체계적인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표본추출방법은 인구규모를 고려한 시·군·구의 일차표집단위와 읍·면·동의

4) 예를 들어, 교차분석에서 각 셀의 기대빈도가 5이상이어야만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5)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인구수가 약 2억 9천 9백 10만명이고, NCVS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4만9천가구, 약 십만명이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약 5,950만명이고, BCS의 표본 수는 4만6천명이다. 그리고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있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의 경우 약 33,000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약 70,000명이다.

이차표집단위를 나눈 다음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차표집단위 내에서 10~11명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일차표집단위의 선정은 확률표집의 일종인 규모비례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여 각 요소들이 표집될 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차표집단위의 선정방식에는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이차표집단위의 선정은 읍·면·동을 행정구역분류표 상의 순서에 따라 열거한 다음 계통 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최종 관찰단위인 가구에 속한 개인이 표집될 확률이 표집단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규모 및 가구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표집 틀을 구성하고, 처음부터 읍면동을 표집단위로 규모비례확률표집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조사표 문항구성의 문제점과 한계

1) 일반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범죄피해 측정의 실패

기존 범죄피해조사의 측정항목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범죄피해를 적절하지 못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순래, 2002:58). 현재 측정되고 있는 범죄유형은 미국의 피해조사항목을 그대로 차용하여,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강간 및 성폭력 등 8가지로 구성된다. 이것은 다시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를 포함하는 가구범죄와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상해, 강간·성폭력을 포함하는 개인범죄로 나누어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범죄유형들이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표적인 범죄피해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⁶⁾

어떤 범죄유형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정보는 미흡하나마 공식통계와 각 범죄유형별로 부분적으로 실시된 피해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의 범죄피해항목들은 우리나라에서

6)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조사의 기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피해자없는 범죄나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범죄, 범죄피해자를 개인으로 구체화할 수 없는 범죄 등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발생하고 있는 주요 범죄들⁷⁾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법범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범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측정에 실패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산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산업화의 발달수준 만큼이나 사기나 횡령·배임 등과 같은 범죄피해는 일반국민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범죄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적어도 재산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범죄의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피해경험 및 범죄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당시에 가장 사회적·정책적 이슈가 되는 범죄유형들의 발생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특별범죄이슈”를 선정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범죄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지표의 개발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한편, 기존 조사의 범죄유형 가운데 자동차절도 및 자동차부품절도를 독립적인 범죄유형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법률체계 및 사법실무에서는 자동차절도나 자동차 부품절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범죄의 유형이 아니라 절도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절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자동차와 그 부품이라는 면에서만 구분된다(박순진, 1994). 또한 우리나라 절도범죄에서 자동차절도가 그다지 크게 반발하는 유형도 아니며, 보험처리를 위해서 신고가 거의 누락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자동차관련 범죄를 독립적인 범주로 다룰 필요성이나 중대성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김지선 외, 2006: 257 재인용).

2)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인식과 법률적 범죄개념과의 불일치

기존 범죄피해조사가 갖고 있는 중대한 인식론적·방법론적 한계 중의 하나는 사회조사를 통하여 국가공식범죄통계 대비 숨은 범죄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목적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 조사표에는 형법적 법률용어, 가령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강도, 절도, 폭행·상해, 강간 등 관련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설문문항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건피해유형을 스스로 법률적 형식으로 판단하여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령 성폭력과 강간이 일상용례에서 매우 복합적으로 동일시되거나 또는 달리 사용되는 것에서 있듯이, 일반적으로 법률적 개념과 사회적 통념(인식)간에는 상당한 범주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교육수준이나 경험에 따라 개

7) 먼저 2005년의 공식범죄발생통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 중 발생건수가 높은 범죄유형별로 나열해 보면, 폭처범위반(223,980건), 상해(31,238건), 폭행(19,463건), 강간(11,757건), 강도(5,266건)의 순이며, 재산범죄는 사기(203,697건), 절도(191,114건), 횡령(25,412건), 손괴(12,344건) 등의 순이다. 강도범죄를 수법별로 보면, 침입강도와 노상강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소매치기·들치기·날치기와 침입절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념인식 또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정방식은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표가 될 수 없다. 즉 현재 범죄측정방법은 우연적·비체계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측정결과 역시 통일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친밀한 관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피해경험을 더더욱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만든다. 형법적인 법률적 용어가 갖는 뉘앙스로 인하여, 각 개인들은 흔히 자신의 피해경험을 법률용어와 연결시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는 일반적으로 여성응답자들이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피해경험을 진실되게 응답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Stanko, 1995:49), 범죄피해조사와 같이 “범죄”라는 용어로 접근할 때, 여성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가족구성원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폭력범죄들은 암묵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항목들은 폭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 여성과 낮은 지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보다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가족 내에서 행해진 범죄보다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Young, 1988).

하지만, 실제 여성의 폭력피해실태 조사결과들은 여성들이 낯선 사람보다는 사적인 공간(가정 등)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남편, 애인, 아버지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다(Dobash and Dobash, 1980; Griffin, 1978; Kelly, 1987; Pain, 1997; Radford, 1987; Stanko, 1985, 1987, 1990; 최인섭·김성언, 1998; 김은경 2001; 여성가족부, 2007). 따라서 공식통계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비가시성의 문제,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개선된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흔히 일반인들이 범죄피해로 인식하지 않는 비가시적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개발 및 응답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3)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회상의 한계 및 기억의 오류 문제

범죄피해조사의 초기부터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응답자의 회상능력에 관한 문제였다. 태도나 의견이 아닌 피해경험이라는 사실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오차는 매우 중요하다.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응답하지 않거나(회상오류) 준거기간이 아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준거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응답하거나(전진시기회상오류) 준거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을

준거기간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응답하지 않음으로써(후진시기회상오차)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실제 발생한 사례를 과소추정하거나 과대추정 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이순래, 2002: 김지선 외, 2006). 실제 1970년대, 미국 인구조사통계국이 전미범죄피해조사에서의 시기회상오차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면접조사에 응한 응답자중 3개월전에 발생한 사건들 중 73%, 6개월 이전 사건은 60%, 11개월전 사건들의 경우엔 49%만이 피해발생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Garafalo & Hindelang, 1997:23).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회상을 자극할 수 있는 설문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영국의 BCS에서는 조사준거기간을 1년으로 잡는 대신에 조사준거기간 내에 응답자에게 있었던 다른 주요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범죄사건의 기억도 함께 환기 시키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보고한 범죄피해율이 더 높아졌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2년에 NCVS에서 조사표와 자료수집방법상의 변화를 시도하여, 응답자의 기억능력과 관련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소위 스크리닝 질문방법을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자극' 방식으로 바꾸어 설계하였는데, 수정된 조사표는 과거방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건 보고율을 이끌어냈다고 보고되고 있다.⁹⁾ 특히 폭력범죄 중에서도 상해가 없거나 단순상해를 입는 혹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폭력의 범죄피해율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운 방법은 낯선 사람들 간의 기수로 끝난 경찰에 보고된 범죄보다는 잘 아는 사람들 간의 미수로 끝난 경찰에 보고되지 않은 범죄율의 추정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많은 회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문항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NCVS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응답 기피 및 과소보고의 문제

기존 범죄피해조사의 설문지는 해당유형의 범죄피해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선별질문(Screening Questionnaire)에 이어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응답자에게 쉽게 피로감과 귀찮은 느낌을 주어

8) Garafalo, J. and M. J. Hindelang, 199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Crime Surve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9) 1992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 피해조사 표본을 두 부분을 나누어 표본의 반에는 이전의 조사표와 조사방법을, 나머지 표본에는 새로운 조사표와 조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조사표와 조사방법으로 인한 범죄율에 있어서의 변화를 측정하였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7).

10) 미국의 NCVS도 개편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을 이용했다고 한다(심영희·조정희, 1990: 298).

응답기피율을 높인다고 한다(심영희·조정희, 1990:298). 즉 되도록 빠른 시간에 응답을 끝내고 싶은 응답자의 입장에서 해당 유형에 대한 피해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조사결과는 피해사실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설문지의 뒤쪽에 배치된 범죄유형일수록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박철현, 2002:70). 이렇게 설문지 구성방식에 기인한 비-표집오차는 범죄피해조사와 같이 지루하게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되는 경우에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정된 조사표 구성방식처럼, 먼저 범죄피해가 있었는지를 선별하는 양식 및 그 피해건수를 측정하는 양식과 각 사건단위별로 행위특성과 양상을 질문하는 양식으로 나누어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지를 분리하는 방법의 특징은 우선, 선별양식에서 전체적인 범죄피해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가 있다고 진술했을 경우에 피해건수나 유형별로 기록하도록 하여, 면접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없다”고 응답할 여지를 거의 없앤다는 장점이 있다(BJS, 1995).

5) 누범피해와 상습피해의 누락

기존 범죄피해조사는 일반적으로 범죄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에 대한 추가적으로 사건발생양상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동일한 범죄피해 혹은 유사한 범죄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할 경우, 누범피해나 상습피해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이다(이순래, 2002:52). 가령, 선별질문에서 해당 범죄유형의 피해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사건관련 보고는 “가장 최근사건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유형별 피해실태에 관한 분석결과는 일정하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범죄의 발생시간(계절) 요소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누범피해나 상습피해와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일반 피해와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범죄 실상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누범피해 및 상습피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형식 및 방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발생된 모든 피해사건은 동일한 비중으로 파악되고 수집될 필요가 있다.

6) 경합범죄 및 결합범죄의 실태파악의 한계

기존 조사표는 형법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 선형적으로 절도, 강도, 폭행 등 개별범죄 유형 단위로 피해경험여부를 질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이것(특정범죄)가 발생하였는가”로 질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할 경우 두 가지 범죄유형이 결합되거나 경합

된 사건들, 가령 강도강간,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형법적 범죄개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문방식과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사건의 발생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무엇이 발생했는가”라는 행위 중심으로 질문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Ⅲ. KCVS의 새로운 구성 원칙과 특성

1. 표집 재설계의 기본 원칙

가. 모집단 규정

새롭게 개편된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기존 표집방법의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첫째, 관찰단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범죄피해조사는 관찰단위를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두 차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표집방법 역시 두 가지 가구단위표본과 인구단위표본으로 계열화하여 접근한다.

둘째, 연령범주와 관련해서, 개편된 범죄피해조사의 모집단은 "조사대상시점에 가까운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구내 모든 가구 및 만 14세이상 국내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설정한다. 하한연령은 범죄피해조사의 특성상 주된 피해연령층을 포섭해야 한다는 내적 목표와 더불어 조사내용의 이해도 및 조사윤리의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조사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14세로 설정하였다. 만 14세로 설정한 이유는 대체로 이 연령층이 중학교에 다니는 대상자들로서, 범죄피해 경험율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상한연령은 기존 범죄피해조사와 마찬가지로 설정하지 않았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범죄피해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연령 산정기준과 원칙을 마련한다. 개편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체계적 통일적 조사실행을 위한 지침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조사대상시점(가령 2008년 한해)’과 ‘조사기준 시점(2009. 9. 1.)’을 구분하고 연령산정은 조사기준시점을 중심으로 계산하도록 일관된 원칙을 세웠다. 금번 조사(개편 원년)는 조사방법의 전면 개편 및 통계청 승인절

차 등으로 인하여 조사일정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사대상시점과 기준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간차이가 다소 시기회상오류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교분석을 위한 일관된 토대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11년의 제2차 조사는 실시시기를 2월초로 앞당겨 조사대상시점과 기준시점의 간격을 좁혀,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여 실행될 것이다.

넷째, 지역범위와 관련하여, 개편된 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명실공히 전국통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포함하여 “도시 및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다만 비용 및 조사기간 등의 문제로 도서지역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나. 표본 규모 및 표집방법

첫째, 이번 조사의 표본규모는 전국단위표본으로서 4,500가구로 설정하고, 표본가구내 만14세이상 가구원 전체(약 9,450명)로 설정한다.

둘째, 표집방법은 미국의 NCVS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분석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실행한다. 일차적으로 표집은 지역별 가구분포를 기준으로 가구표본을 추출하고, 대상가구 내 만 14세이상의 가구원 전체를 조사한다. 가구단위 범치는 각 가구내 19세 이상 성인 중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가구범죄에 대한 사항을 응답하도록 하고, 그 외의 가구원은 개인적으로 당한 범죄피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사된 가구표본 및 가구원 표본은 모집단인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다시금 지역분포, 성별분포,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조정한다.

셋째, 표본들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 총 254,601개의 조사구를 표본추출 틀로 활용, 16개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지역층별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식으로 실행한다. 여기에서 조사구란 통계조사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전체 단위 및 전체 지역을 적당히 구획한 조사의 기초 단위로서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구성된다. 이들 조사구 가운데 KCVS 2009는 특별조사구는 제외하고 일반조사구 가운데에서도 다른 조사구는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보통 조사구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실제로 450개 조사구를 추출 조사구당 10개 가구를 조사하였다.

2. KCVS 조사표 구성의 기본 원칙

기존 조사표의 문제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1) 일반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범죄 피해측정의 실패, 2)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인식과 법률적 범죄개념과의 불일치, 3)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회상의 한계 및 기억의 오류문제, 4) 응답기피 및 과소보고의 문제, 5) 누범피해와 상습피해의 누락, 6) 경합범죄 및 결합범죄의 실태과악의 한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편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 구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 하에서 재설계되었다.

1) 조사대상 범죄유형을 강도, 절도, 주거침입, 폭행·상해, 성폭력 등 기존의 주요한 지표범죄와 더불어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사기범죄와 협박·괴롭힘을 새롭게 추가한다. 한편, 사회적인 정책이슈가 약한 자동차절도 및 자동차부품 절도 등은 기본형 범죄유형에서 제외하고, 절도범죄의 피해품 유형으로서 다루기로 한다.

2)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신종 형사정책적 이슈 및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이슈”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행한다. 이번 2008년 조사의 특별주제는 “피싱 및 신용도용”의 발생실태를 다루기로 한다.

3) 응답기피 및 과소보고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편된 조사표는 범죄피해여부에 대한 선별질문 및 피해건수를 측정하는 양식 등을 담은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2종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기초조사표를 통해서 범죄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해당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범죄 유형이 2회 이상 발생하였지만 응답자가 사건내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1개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원칙을 정하였다.

4) 개편된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범죄 실태를 좀 더 실상에 가깝게 측정하고, 조사상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속(연쇄)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연속(연쇄)범죄”는 특별히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스토킹 등과 같은 범죄 실태를 포착하는 데 주요한 개념이다. 본 조사에서 “연속(연쇄)범죄”는 “동일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비슷한 행위패턴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5회 이상 당한 경우”로 규정한다.

5) 사건의 실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건피해의 기수와 미수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표 2〉 KCVS 조사표 재설계 구성 원칙

| 기존 조사표의 문제점 | 2009년 조사표의 개편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범죄유형의 한계 : 사기범죄나 스토킹 등 오늘날 문제가 되거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표적인 범죄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 범죄적 괴롭힘(스토킹)을 추가 ● 2008년 특별주제로, 보이스 피싱 및 신용도용 검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상의 한계와 기억의 오류 : 응답자의 기억능력과 관련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스크리닝 질문의 재편이 요구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피해조사방식 참조, 스크리닝 질문을 강화 ● 면접과 자기기입식의 병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중심이 아닌 사건성격을 중심으로 한 범죄측정 : 기존 조사표에서는 형법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유형에 대한 법률적 형식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법률적 개념과 사회적 통념(인식) 간에는 상당한 용례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해석정도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범죄측정방법(척도)은 우연적·비체계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특정범죄)가 발생하였는가”로부터 “무엇이 발생하였는가” 행위 중심으로 질문방식의 재편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문방식과 용어 사용 ● 피해유형 측정에 있어서 법률적 범죄개념을 사용하지 않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합범죄 또는 결합범죄 보고의 한계 : 기존 조사표는 절도, 강도, 폭행, 강간 등 개별 범죄유형을 단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강간,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구체적인 실체파악, 나아가 결합범죄 및 경합범죄 보고가 불가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법(침입방법, 공격방법, 장소일시, 목적, 대상 등) + 피해양상(신체/재산/정신) 등 행위양상을 종합하여 사건의 범죄유형 결정 ● 기본범죄유형: 주거침입, 절도, 강도, 손괴,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기수와 미수, 연속범죄(상습피해) 등에 대한 측정지표 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유형별 기수/미수의 측정 ● 연속범죄(상습피해) 측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별 사건조사의 한계 : 가장 최근 사건만을 중심으로 범죄발생양상 및 피해결과를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건 단위별로 사건조사 ● 연속범죄 (2회 이상 유사성) 경우엔 최근 범죄사건으로 사건조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의 일원화 : 개인표본과 가구표본을 동일하게 접근하여, 자료해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의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조사(가구+개인관련) - 가구원조사(개인관련) |

6) 재설계된 조사표는 회상의 한계 및 기억오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NCVS와 같이 “선별질문지(Screening Questionnaire)”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 선별질문방식은

응답자들이 더 넓은 범주의 사건들을 회상하도록 자극하며, 특히 일반적으로 잘 보고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측정방법을 개선한다. 미국 NCVS와 같이, 선별질문방식은 형법적 용어와 개념을 모두 삭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범죄피해 보고율이 낮았던 폭력범죄에 대한 회상율을 높이기 위해서 폭력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들을 더 잘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된 흥기종류나 범죄자 및 행위양상과 같은 “특정 단서”들을 더 많이 제공하고, 강간과 다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좀 더 명확한 단서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들과 응답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활동이나 범죄 장소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범죄의 상당수는 피해자가 그 사건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사건을 피해조사에서 응답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응답을 하도록 하는 지시문을 추가한다.

7) 범죄피해유형의 측정은 “법률용어” 중심이 아니라 사건성격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피해유형 측정에 있어서, 기존 법률적 개념을 가급적 차용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설문문항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답하는 데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¹¹⁾ 따라서 “이것(가령, 강도)이 발생했는가”라는 기존 방식에서, NCVS나 영국 범죄피해조사처럼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가”로 범의침해 행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자 한다.

8)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 선별질문방식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범죄유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범죄피해여부에 관한 선별질문들은 사건자체를 보다 정확하게 회상하도록 자극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며, 만일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발생한 사건 수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한다.

9) 범죄유형은 각 사건조사표를 통하여 범죄수법 및 피해양상 등 사건의 구성요건들을 종합하여 판별한다. 개편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기본형 범죄는, 가구대상 범죄의 경우 ① 주거침입절도, ② 주거침입강도, ③ 주거침입손괴, ④ 단순주거침입,

11) 현행 방식은 미리 범죄종류를 응답자에게 규정하도록 질문하고, 범죄 상황과 결과를 설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응답자 범죄규정과 인식에 의존하는 방식은 모든 응답자들이 범죄개념규정을 공유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전통적으로 범죄로 인지되지 않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스토킹(괴롭힘) 등은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률적 범죄개념을 차용하여 설계하는 것은 응답자의 법률적 개념 이해정도에 따라 해석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비체계적 오류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⑤ 단순손괴사건 등이고, 개인대상 범죄의 경우 ⑥ 절도, ⑦ 강도, ⑧ 상해, ⑨ 단순폭행, ⑩ 강간, ⑪ 강제추행, ⑫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⑬ 단순협박, ⑭ 사기 등 총 14가지 유형이다. 기본형 범죄유형은 기본적으로 심각성의 위계규칙에 따라 규정되며, 각 유형별 추가분석을 통해서 결합범죄 및 경합범죄유형을 판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가구범죄와 대인범죄로 나누어 접근하기 위하여, 조사표는 가구주조사표와 가구원조사표를 구분하여 설계한다. 가구주조사표는 가구내 19세 이상 성인이 가구전체를 대표하여 가구범죄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며, 이후 가구원조사표와 동일하게 개인관련 피해상황을 보고하도록 구성한다.

3. 추가 및 개선된 조사항목

조사표의 문항구성은 범죄피해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조사의 주요 목적은 정확한 피해실태의 파악, 범죄피해자의 특성 파악, 피해방지대책과 범죄예방대책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범죄피해가 왜 발생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검증 등에 있다(이순래, 2002:42). 이와 같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설계된 조사표는 첫째, 사건피해 회상 및 기억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극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둘째로 범죄에 대한 측정방법의 민감도를 좀 더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로는 새로운 이론적·정책적 시사점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피해원인론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조사표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범죄피해이론인 개인속성론, 상황적 범죄예방론, 생활양식론, 일상생활론, 개인성향론, 하위문화이론 등 주요 개념들을 조사표에 반영코자 노력하였다.

개정된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를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주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나뉘며, 그 각각은 다시 범죄피해여부와 피해횟수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조사표와 피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건조사표로 나뉘어, 조사표는 모두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한편, 기존에 측정되었던 (1) 범죄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2) 배경변수, (3) 집합효율성 및 범죄예방활동, (4) 범죄에 대한 인식, (5)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 등에 관련된 문항들은 정책적·이론적 지표로서 그 타당성 및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정·보완 재설계되었다. 또한 개편 조사표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강화하였다. 기존 물질적 손실비용을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손해배상여부를 보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피해에 있어서도 치료비용과 일수, 노동손실일수 등을 측정하였고 나아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서도 치료비용 및 손실일수, 또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간손실 등 유형·무형의 사회적 파괴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다음 <표 3>은 기존 조사표와 개편된 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짚은 박스로 표시된 조사항목들은 개편 조사표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재설계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재설계된 조사표에 추가적으로 확충된 주요 측정항목은 “지역사회의 집합효율성,”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건경험전후의 두려움/정서/행동변화,” “피해자-가해자간의 상호작용 효과”, “인터넷을 통한 일상활동” 및 “개인의 일탈성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항목들은 향후 범죄피해원인론이나 범죄학이론 검증에 주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3> 기존 조사표와 재설계된 조사표 조사항목간의 비교

| 기존 조사표의 조사항목 | 재설계된 조사표의 조사항목 |
|--|---|
| A. 피해여부선별질문 | |
| 1. 대가구범죄피해 1) 자동차 절도 2) 자동차 부품절도 3) 주거침입절도 4) 주거침입강도 2. 개인범죄피해 1) 대인절도 2) 대인강도 3) 폭행 및 상해 4) 강간 및 성희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로 인한 금품 및 재산상의 피해여부 ● 도난여부(도난물품 및 횡수) ● 주거침입여부(및 횡수)* 가구주만 해당 ● 손괴피해여부(및 횡수)* 가구주만 해당 ● 도난/폭행/위협당한 장소여부(및 횡수) ● 폭행/위협당한 방법여부(및 횡수) ● 괴롭힘(스토킹) 피해경험여부(및 횡수) ● 아는 사람에 의한 도난/폭행/위협여부(횡수) ●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가해자유형 및 횡수) <p style="margin-top: 10px;"><08년도 특별조사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 피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경험 여부 - 피싱 방법 및 경험횡수 - 경로매체 - 송금 및 개인정보제공 횡수 - 재산상 손실 피해액 - 손해발생하지 않은 이유 ● 신용도용(identity the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경험여부 - 도용방법 및 횡수 - 피해사실 인지경로 |

| B. 범죄피해에 관한 세부사항 질문 | |
|---|--|
| 1. 피해발생시간, 장소 2. 물질적 손실의 정도 3. 신체적 피해정도 4. 경찰신고처리현황 5. 피해자대응 및 반응 6. 가해자특성 7. 피해자부조기관의 도움 및 서비스여부 | 1. 피해발생시간, 장소 2. 물질적 손실의 정도 3. 신체적 피해정도 4. 경찰신고처리현황 5. 피해자대응 및 반응 6. 가해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항목(현주소지발생여부, 연속범죄여부) ● 사기피해여부 및 피해내용 ● 주거침입여부 ● 범행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여부 - 신체공격여부별 사건발생 내용 - 신체공격전 가해자 위협여부 ● 상처 치료시 치료장소/일수/비용/시간손실 ● 가해자로부터 상해보상여부 및 정도 ● 사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 재산피해 회수여부 ● 손피피해 현금가치 및 배상여부 ● 정신적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유형 - 상담치료여부/기간/비용 ●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 사건처리로 인한 시간손실여부 및 손실일수 ● 사건피해경험이후 두려움/행동/정서 변화 |
| C. 배경변수 | |
| 1. 가구특성(주택유형, 거주기간, 가구원수, 가구전체소득, 자동차소유여부) 2. 응답자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소득, 가구내지위, 계층귀속) | 1. 가구 특성(주택유형, 거주기간, 가구원수,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2.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소득, 가구내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구 특성, 세대구성, 5년내 이사횟수 ● 응답자 장애유무/유형, 외국인여부/출신국가 |
| D. 집합효율성 및 범죄예방활동 | |
| 1. 주변환경(사회적 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사회적 통합정도 2. 범죄예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행위 - 피해의 구조에 대한 기대 - 경찰의 방법활동의 평가 - 일반인의 범죄예방조치 | 1. 주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 이웃관계과의 관계 - 이웃과의 접촉교제정도 - 동네환경과 무질서 2. 집합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의 범죄예방활동 - 동네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3. 범죄예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의 방법조치 및 범죄예방활동 |

| | |
|---|--|
| E. 범죄에 대한 인식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추세에 대한 평가(전국, 지역사회) 2.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3. 범죄피해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범죄 - 재산범죄 - 폭력범죄 - 성폭력범죄 4. 범죄유형별(4가지) 두려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양적 변화추세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측면 - 인지적 측면 - 행태적 측면 3. 관계대상별 범죄피해 가능성(이타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 - 가족 - 아는 사람 4. 범죄유형별(9가지) 두려움 |
| F.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가구 및 개인)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교통수단 2. 늦은 귀가빈도 3. 외출시 옷차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교통수단 2. 늦은 귀가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을 비우는 시간 정도 ● 인터넷을 통한 일상활동 및 빈도 ● 일상생활 법준수 정도(일탈수준) |

4. 데이터 구조와 특성

개편된 범죄피해조사의 데이터는 세 가지 종류의 원시자료가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형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첫 번째 데이터는 가구계층 data로서 (가구를 통한) 가구관련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 가구관련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행정구역)
- 조사구특성
- 주택유형
- 세대구성
- 거주안정성(거주기간, 영업활동여부 및 표식여부, 5년내 이사횟수)
- 주택소유여부
- 가구전체소득
- 집을 비우는 시간정도
-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조치나 활동정도

두 번째 데이터는 개인계층 data로서 (가구주 및 가구원을 통한) 개인의 피해여부 선별질문 등 기초조사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학력, 장애여부, 외국인여부 등)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합효율성 및 범죄예방활동
- 범죄피해여부 회상질문
- 특별조사이슈 : 보이스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여부 및 피해내용
- 일상활동(외출교통수단, 늦은 귀가)
- 인터넷을 통한 일상활동 및 사용빈도
- 일상생활 중 법준수 정도(일탈수준)

셋째, 사건계층 data는 (가구주 및 가구원을 통하여) 각 개인 또는 가구가 겪은 범죄 피해사건 관련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점검항목(보고사건유형확인/ 현 주소지발생여부/ 연속범죄 판단여부)
- 사건발생일시장소
- 사기피해여부 및 피해내용(유형, 피해양상, 사기수법, 재물교부양식 등)
- 주거침입여부 및 내용(현장이 있었는가/누가 있었는가)
- 무기·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여부
- 신체적 공격여부별 사건내용
- 신체피해(유형, 치료장소, 비용, 노동손실일수, 피해보상여부 등)
- 피해자대응 및 반응(현장이 타인존재여부/피해자음주여부/보호대응행동)
- 가해자특성(인지경로, 가해자유형, 인원, 성별, 연령대, 음주여부, 관계)
- 재산피해
- 정신적 피해
- 사건경험이후 재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변화
- 사건경험이후 범죄피해 두려움 변화
- 사건경험 전후 정서변화
- 경찰신고처리현황

세 가지 DATA의 개별고유인식번호(ID)는 각 계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번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1) 가구계층 data의 각 사례별 고유번호는 “조사구번호+거처

번호+가구번호”가 가구계층 ID가 된다. (2) 개인계층 data의 고유번호는 “가구계층ID+가구원번호(이때 가구주는 모두 1번으로 통일됨)”가 개인계층 ID가 된다. 마지막 (3) 사건계층 data의 고유번호는 “개인계층ID+사건번호”가 사건계층ID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재설계된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유형은 각 사건조사표에 기입된 범죄수법 및 피해양상 등 사건의 구성요건들을 종합하여 판별된다.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가구대상범죄의 경우 ① 주거침입절도, ② 주거침입강도, ③ 주거침입손괴, ④ 단순주거침입, ⑤ 단순손괴사건을 독립단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개인대상 범죄의 경우 ⑥ 절도, ⑦ 강도, ⑧ 상해, ⑨ 단순폭행, ⑩ 강간, ⑪ 강제추행, ⑫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⑬ 단순협박, ⑭ 사기 등을 기본형 범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5. 2009년 KCVS 실사 개관 및 주요 특징

1) 조사 개관

□ 총 조사표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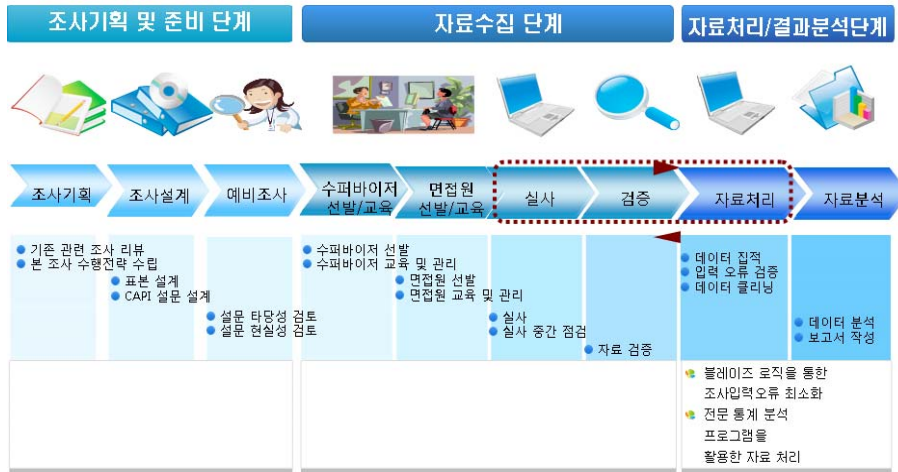
- 총 성공 가구 수: 4,710가구
- 총 성공 개인 수: 10,671명
- 총 투입 면접원 수 : 각 지역별 통계사무소 공무원 등 총 216명

□ 조사 기간

- 예비조사 : 2009년 7월 6일 ~ 10일(5일간)
- 사전 설명회 및 조사원 교육 : 2009년 8월 26일 ~ 9월 9일(5일간)
- 본 조사 : 2009년 9월 14일 ~ 23일(10일간)
- 본 조사 보완조사 및 오류검토 : 2009년 9월 30일~ 10월 30일

□ 수행체계

- [국가승인통계] 지위 획득에 따라, 통계청 표본설계과 및 조사대행과를 통해 실사
- [범죄피해조사입력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발, 실시간 조사관리



〈그림 1〉 범죄피해조사 흐름도

2) 주요 특징

개편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특징을 기존 피해조사와 비교,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기존범죄피해조사와 재설계된 KCVS 특징 비교

| 과거범죄피해조사와 재설계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의 비교 | | |
|-----------------------------------|-----------------------------------|--|
| 항목 | 과거 범죄피해조사 | 개편된 범죄피해조사 |
| 조사성격 | 미승인통계 | 국가승인통계 |
| 모집단 범위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시도의 15세이상의 남녀 | 모든 가구 및 만 14세이상(조사기준 시점)의 가구원 (※시설(교도소, 요양시설 등)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 표집단위 표집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15세이상 인구 수를 토대로 다단계확률표집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의 가구단위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지역층화확률표집) |
| 표본규모 | 목표표본 수 2,000 명 | 목표표본 수 4,500 가구 및 그 가구원 9,450 명 |

| | | |
|----------------|---|---|
| 자료수집방법 |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의 병행 |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의 병행 |
| 조사대상기간 | 일년 | 2008. 1. 1.~2008. 12. 31. (일년) |
| 조사기준 시점 | 명확한 규정없음 | 2009. 9. 1.(※ 개편작업으로 다소 늦어짐) |
| 실사기관 | KIC 혹은 외부조사업체 | 통계청 조사대행과 |
| 무응답율 |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접촉가구수= 총 6,480가구 가구대체율=27.3% 불응가구율=10.6% 무응답율 =1.01% |
| 시기회상 오류감소방안 | 별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음. 다만 조사시점을 대상기간과 좁히려는 노력 | 선별질문에 구체적인 질문과 단서 제공 회상과 기억을 자극하는 방법을 도입, 조사원 교육훈련 강화 |
| 표본대표성 확보방안 | 별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음.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분포를 고려, 표본에 대한 사후층화가중치부여 |
| 데이터성격 | 단수준 분석자료 | 위계적 구조 및 다수준 분석자료 |

참 고 문 헌

- 기광도 (2002), “한국범죄피해조사의 평가 및 개선방안 : 개괄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10권2호: 5-19.
- 김은경 (2001), 가정폭력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외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1994), “범죄피해조사의 몇가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2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2002), “범죄피해조사의 표집에 대한 재검토”, 피해자학연구, 10권2호: 21-38.
- 박철현 (2002), “범죄피해조사개선방안-자료수집방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0권2호: 65-80.
- 심영희 · 김준호 ·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김준호 · 최인섭 · 조정희 · 박정선 (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조정희 (1990),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용역보고서.
- 이순래 (2002),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사표의 문항구성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0권2호: 39-63.
- 장준오 (2001), 세계범죄피해조사-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성언 (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6),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 Statistical Tabl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 Dobash and Dobash (1980), Violence Against Wives : A Case Against Patriarchy. Free Press : New York.
- Garafalo, J. and M. J. Hindelang, 199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Crime Surve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 Griffin (1978), Rape : The Power of Consciousness. New York : Harper and Row.
- Kelly, Liz (1987),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pp 46-60 in Women, Violence and

- Social Control. 1987. edited by Hanmer, Jalna and Maynard, Mary. London : Macmillan.
-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1 Basic Screen Questionnaire, http://www.ojp.usdoj.gov/bjs/pub/pdf/quest_archive/ncvs1.pdf
-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1 Basic Screen Questionnaire, <http://www.ojp.usdoj.gov/bjs/pub/pdf/ncvs104.pdf>
-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2 Crime Incident Report; <http://www.ojp.usdoj.gov/bjs/pub/pdf/ncvs204.pdf>
- NCVS Interviewing Manual for Field Representatives, <http://www.ojp.usdoj.gov/bjs/pub/pdf/manual.pdf>
- Pain (1997), "Social Geographies of Women's Fear of Crime."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2 : 231-44.
- Radford (1987), "Policing Male Violence-Policing Women." pp 30-45 in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1987. edited by Hanmer, Jalna and Maynard, Mary. London : Macmillan.
- Stanko, Elizabeth (1987), "Typical Violence, Normal Precaution : Men, Women and Interpersonal Violence in England, Wales, Scotland and the USA." pp 124-34 in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edited by Hanmer J. and Maynard M. London : Macmillan.
- Stanko, Elizabeth (1995), "Women, Crime and Fea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9 : 46-58.
- Stanko, Elizabeth (2000), "Victims R Us'." pp 13-30. in *Crime, Risk and Insecurity*. 2000. edited by Tim Hope and Richard Spark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Young, J.(1988), "Risk of Crime and Fear of Crime: A Realist Critique of Survey-based Assumptions", in *Victims of crime : A New Deal?*, Maguire M. and J.M. Keynes(eds), Open Univ.Press.

제 1 부

사회 :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센터장)

<발표 1>

-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2>

-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탁종연(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신동준(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진우(경찰청 수사과 경감)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 추정 -

황 지 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 추정 -

황 지 태*

I. 서론

범죄학과 범죄사회학에서 피해 혹은 피해자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어 왔던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parks et al., 1977). 달리 말하자면,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주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어 처리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발견되지 않은 '숨은 범죄(hidden crime)'는 도외시되는 현상¹⁾을 인식(Grabosky, 1989)하게 되면서 피해·피해자 개념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조사(victim survey)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원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정확한 범죄율 혹은 범죄피해율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

그러나 범죄피해조사의 그와 같은 원래의 주요한 목적은 이후 범죄피해조사가 활성화된 이후에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해왔지 않나 싶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실험적인 범죄피해조사에서 공식 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직접적으로 '숨은 범죄'를 파악해내고자 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어떤 범죄들은 발각되지 않는다. 2. 어떤 범죄들은 발각되어도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다. 3. 어떤 범죄들은 경찰에 신고 되어도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는다. 4. 어떤 범죄들은 경찰에 의해 접수되어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5. 어떤 범죄들은 나라마다 법적인 정의(legal definition)가 다르다. 6. 범죄에 대한 현장 보고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 과정의 오류는 다반사이다(Sutherland, Cressey & Luckenbill, 1992 [Sutherland & Cressey, 1947]).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헌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이다(Savitz, 1982; O'Brien, 1985; Hagan, 1988; Adler, Mueller & Laufer, 1991; 김준호·이동원, 1991).

시도가 있었지만(심영희, 1990; 심영희 외, 1990), 그 뒤로 좀 더 정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범죄피해조사(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1992; 최인섭·박순진, 1995; 최인섭·기광도, 1998; 박순진·최영신, 1999; 장준오, 2000;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2006)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왜 그랬을까? 범죄피해조사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가 범죄암수추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숨은 범죄의 양을 추정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도(즉, 피해조사가 완벽에 가깝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작업인데다가 이들 범죄피해조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가령, 적은 표본수의 문제, 표집의 문제, 범죄피해 측정의 문제 등) 인해 현실적으로도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공식범죄통계자료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범죄피해조사는 범죄암수추정에 활용되기보다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파악(가령, Karmen, 1996)하거나 범죄피해발생이론을 구성·검증(가령, Cohen & Felson, 1979; 이성식, 1998)하는데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한다.

범죄피해조사가 갖는 기본적인 문제점들과 조사상의 오류들, 그리고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과 비교하는 작업이 갖는 기본적인 난점들이 범죄암수추정이라는 범죄피해조사의 본래 목적을 일정 정도 —혹은 상당한 정도로— 희석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조사 본연의 주요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는 그 동안의 범죄피해조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특히, 표본수의 대폭적인 확대)한 것이어서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해보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범죄피해조사 경험 축적 과정에서 예전보다 좀 더 세련된 범죄암수

2) 물론 간접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하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식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암수가 상당히 많다는 추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케 했다. 또한 엄밀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공식범죄통계의 범죄율 추세와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 추세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다(박순진, 2003; 최인섭·황지태, 2004, 황지태, 2009a, 황지태, 2009b). 하지만, 이들 연구들에서 1990년에 수행되었던 공식범죄통계와 피해조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 혹은 적극적인 범죄암수추정 시도(심영희, 1990)는 거의 없었고, 있었다하더라도 매우 국지적인 차원에 불과하였다.

추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들이 쌓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범죄암수추정을 새롭게 시도해 볼만 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II. 피해조사와 공식통계 간 비교의 난점과 선행 연구 사례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공식범죄통계와 비교하여 범죄암수를 추정하는 작업이 좀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두 자료를 비교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되도록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피해 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선행 연구들의 축적(Van Dijk & Steinmetz, 1980; Skogan, 1981; Sparks, 1981; O'Brien, 1985; Garafalo, 1990; Karmen, 1996; Garafalo & Hindelang, 1997; 심영희, 1990; 심영희·조정희, 1990; 심영희 외, 1990; 박순진, 1994; 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박철현, 2002; 이순래, 2002)은 두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데 공헌해 왔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특히 범죄암수추정을 시도한 선행 연구(심영희, 1990)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 필요성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1. 비교의 난점과 우회·극복 방안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일정 정도 불가피한 난점'과 '조건에 따른 난점'으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가피한 난점'은 기본적으로 범죄율과 피해율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범죄피해조사방법의 근원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난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조건에 따른 난점'은 여러 가지 조건(조사방법의 미숙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난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별할 경우, 후자의 경우는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는 그 난점을 어느 정도까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엔 그와 같은 난점들을 어느 정도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안 정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기는 할 것이다.

1) 일정 정도 불가피한 난점과 우회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불가피한 문제는 범죄율과 피해율을 부득이하게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질 경우, 범죄율(crime rate)과 범죄피해율(victimization rate)을 서로 다른 개념이다. 범죄율이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범죄발생율을 가리키는 것임에 비해, 범죄피해율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한 국가나 사회의 인구 중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의 가해자가 저지른 한 가지 범죄에 의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 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문제는 ‘은행강도사건’의 예를 들어 지적해 볼 수 있다.

“ (13) 1
 17 , 2 5
 , 4 7 , 10 2 4.6
 . (13) 6 , 1
 3 , 10 () 1 . 3.07
 .”(, 2002 : 197-198, 1996 2001)

위 실제 사례들 중에서 은행강도사건 발생당시 은행직원과 고객을 합친 수가 최대인 경우는 그 수가 27명이었다. 만약 그 한 사건만 가지고 공식범죄통계와 가상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공식범죄통계에서는 1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최대 27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오로지 이 한 사건만 가지고 비교하면, 범죄피해율은 공식범죄율의 27배나 된다. 따라서 오로지 이 자료만을 통해 은행강도사건의 범죄암수를 추정할 경우에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전체 강도범죄 사건 중에서는 매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사례수가 많이 추가될수록 평균 피해자수는 사건 대비 피해자수가 1:1에 좀 더 근접하는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에 범죄율과 범죄피해율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김준호·심영희·조정희, 1991)은 범죄발생 사례수 증가에 따른 그와 같은 수렴(사건 대비 피해자수가 1:1에 근접하는 경향성)을 가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입강도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범죄암수추정을 할 때엔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른 범죄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침입강도와 같은 특수유형(즉 사건 대비 피해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범죄암수추정의 근본적 난점은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며, 그에 대한 완벽한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이 문제를 일정 정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조사에서 피해의 단위를 '피해자 단위'로 집계하지 않고 '피해장소 단위'로 집계하는 방법은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 경우 발생 사건수와 피해 사건수가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특히 '주거침입강절도범죄'의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만약 혹시라도 주거침입강절도범죄의 평균 피해자수가 2명 이상이라고 가상해 볼 때 범죄피해조사에서 주거침입강절도범죄에 대해 '피해자 단위'로 범죄피해를 집계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식범죄 통계에 비해 범죄피해율이 과장되게 집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침입강절도범죄를 '가구 단위'로 집계한다면 피해조사상의 과대집계 오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보통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가구범죄'와 '대인범죄'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1991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1992) 이래로 '가구범죄'와 '대인범죄'를 구별하여 측정해 오기는 하였으나, 실제 표집과정에서는 '가구범죄율' 계산의 기초가 되는 표집방법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³⁾(박순진, 2002). 본 조사에서 기본 분석자료로 삼고 있는 가장 최근의 범죄피해조사(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에서는 과거 범죄피해조사에 대해 지적된 가구관련 표집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주거침입강도와 같은 가구범죄에 대한 범죄암수추정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거침입강절도범죄 이외의 기타 침입강절도범죄, 가령 앞서 제시했던 은행침입강절도범죄 같은 경우엔 여전히 범죄율과 범죄피해율 사이의 간극을 메울 방법이 극히 난망하다. 가구 단위로 표집을 수행하고 가구 단위로 범죄피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각각의 은행, 상점, 공장, 사무실 등의 단위로 표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주거침입강절도범죄 이외의 침입강절

3) 지역별로 볼 때 도시와 농촌의 인구분포와 가구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연구들(1993-2005)에서는 사실상 인구분포만을 기준으로 표집을 수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박순진, 2002 : 26-27). 그럴 경우, 가구범죄피해율은 과다 또는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도범죄는 거의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범죄암수추정 역시 사실상 포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불가피한 난점은 범죄피해조사에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 및 종류들이 범죄피해 조사의 근본적인 특성상 부득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단적인 예로,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⁴⁾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더라도, 범죄피해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피해가 간접적이어서 가시적인 피해가 개인적으로 감지되기 어려운 범죄들, 가령 환경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또는 사기성 광고나 가격 담합과 같은 조직범죄들 역시 범죄피해조사로는 파악해내기가 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범죄율과 범죄피해율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범죄피해조사의 기본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제약은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전체 범죄’에 대한 암수를 추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처음부터 그 대상 범죄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혹시라도 측정 가능한 범죄피해율을 통해 전체 범죄의 암수를 — 일종의 비례식을 이용해 —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 없는 범죄’와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는 그 각각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⁵⁾가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매우 심각하게 왜곡된 추정이 될 공산이 커진다. 결국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 유형들에 국한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조건에 따른 난점과 대응·극복

한편, 범죄피해조사의 기본적 특성상 발생하는 근본적인 난점 이외에도 범죄피해조사

4) ‘피해자 없는 범죄’란 도박이나 마약, 매매춘, 낙태, 포르노 영업 등 피해자가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이순래, 2002 : 41).

5)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를 통한 인지의 비중이 높은 반면,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 사법기관의 ‘직접 인지’ 혹은 ‘드물게 발생하는 제3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범죄암수 비중이 혹시라도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위험한 상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방법상의 미숙함, 공식범죄통계 집계 관행상의 문제 등이 범죄암수추정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엔 조사방법의 정교화 내지 공식범죄통계 집계 규정 및 관행의 개선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건적인 문제점’이라고 할만하다.

먼저 범죄피해조사방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고 그 방법개선에 의해 감소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면, ①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불일치 문제, ② 조사응답자의 범죄피해경험 회상오류의 문제, ③ 조사표본수의 문제, ④ 부적절한 표집방법의 문제 등을 대표적인 문제들로 꼽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뒤의 두 가지는 그나마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비해, 앞의 두 가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한 측면⁶⁾마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가지 역시 여러 가지 정교한 조사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나마 상당한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건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불일치’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왔던 범죄피해조사(1993년-2005년)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종종 제기되었던 문제이다(기광도, 2002; 박철현, 2002; 이순래, 2002). 가장 단적인 예로 제시되었던 것이 범죄피해조사상의 ‘대인강도범죄피해’이다. 2005년도까지의 범죄피해조사에서 대인강도범죄피해는 “작년에 귀하는 집 밖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런데, 이 문항의 내용은 형법상의 강도범죄 뿐만 아니라 공갈범죄에도 포함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 동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대인강도의 범주에 사실상 공갈범죄와 강도범죄가 모두 포함되었을 것이란 추정을 하기도 하였다(기광도, 2002 : 14). 실제로 그와 같은 추정이 옳다면, 그동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된 대인강도 피해율은 과대 산정된 것인 셈이며, 그에 따라 혹시라도 이를 가지고 대인

6) 범죄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일반인의 인식 사이의 차이는 법률적 정의와 구성요건이 복잡한 유형의 범죄일수록 커질 것이고, 그 경우 그 간격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어찌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관습적(conventional)으로 사전에 인지한 범죄(가령, 절도범죄 등)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그 간격이 크지 않고, 피해조사 문항의 정교한 구성을 통해 그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조사응답자의 범죄피해경험 회상의 오류 경험 역시 그 오류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억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할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회상 촉진기법을 동원한 설문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감소가 가능한 오류라는 점에서 ‘조건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강도범죄의 암수추정을 했다면 실제의 숨은 범죄 비율보다 더 많은 숨은 범죄 비율이 계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피해경험 설문 전략 개선에 따라 범죄암수추정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범죄피해조사(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에서는 과거와 같이 단일 질문에 의해 범죄피해경험을 측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조합하여 특정 범죄의 피해경험 빈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 행위가 특정 범죄의 법률적 구성요성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여지(혹은 그 요건에 적합한 행위를 조합해낼 수 있는 가능성⁷⁾)가 커졌다고 판단된다.

범죄피해 경험 회상오류는 조사응답자가 범죄피해경험을 망각(forgetting)하거나 부정확하게 잘못 기억(시기회상오차, telescoping)하는 오류를 뜻하는 것(Garafalo & Hindelang, 1997; 이순래, 2002)으로 이 오류에 따라서도 범죄피해를 산출이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망각의 경우 보통 과거 1년 단위로 범죄피해경험을 물었을 때, 비교적 최근에 가까운 경험은 잘 기억하지만 과거로 갈수록 잘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기회상오차(불안전한 회상)의 경우는 피해경험이 기억은 나는데, 그 정확한 시점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하는 것이다. 특히 1년 전의 경험을 2년 전의 경험으로 잘못 기억하거나 2년 전의 경험을 1년 전의 경험으로 잘못 기억할 경우, 보통 1년 회상 단위로 질문이 주어지는 범죄피해조사의 범죄피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어 왔던 대안으로는 범죄피해경험 회상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거나(박철현, 2002 : 79), 설문지 내에 회상을 돕는 장치를 마련(가령, 주요한 사회적 사실들을 제시하여 기억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순래, 2002 : 61)하는 것 등이었다. 가장 최근의 범죄피해조사(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에서는 회상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지도 않았고 준거기간에 발생한 주요 사회적 사실들을 부대적으로 명기하거나 하지도 않았으나, 대신 피해경험 회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부대적 질문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

7) 이러한 조합의 장점은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에서 '강도강간'이 '강간'으로 집계되는 구조를 가졌다는 단점(이순래, 2002 : 58, 60)을 보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에서 '강도강간'은 '강도'로 분류된다. 즉 예전 피해조사의 경우엔, 공식범죄통계에서는 강도이지만 피해조사에서는 강간이 되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혹은 그 경우 강도와 강간을 모두 한 건씩 보고하여 마치 2개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처럼 응답될 수도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조사방법으로는 강도와 강간이 동시적인 경우 1개의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강간으로 재분류하거나 강도로 재분류하거나 혹은 강도강간이라는 독립적인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 그 어느 것도 가능해졌다.

회상과 관련된 오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적어도 기존의 조사들의 경우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한편, 조사표본수의 문제와 표집방법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길게 언급할 것도 없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조사표본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표집방법은 정교하고 정확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표본수의 경우, 과거 범죄피해조사에서의 평균적인 표본수(대략 2,000명 내외)가 일반적인 의식조사 연구에서의 표본수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박순진, 2002 : 27-28), 범죄피해경험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표본수였던 것이 분명하다⁸⁾(기광도, 2002; 박순진, 2002). 표집방법의 경우,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그리고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고, 가령 대도시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젊은층 등 특정 연령대에 편중될 경우⁹⁾ 범죄피해율은 과대 혹은 과소 산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체 가구수를 근거로 한 표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구범죄추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 자료로 사용하는 가장 최근의 범죄피해조사(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에서는 이전 조사들에 비해 표본수도 대폭 증가하였고(4,710가구, 10,671명), 표집방법도 전체 가구수 분포 등을 고려하는 등 이전보다 상당히 정교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역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조사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공식범죄통계의 집계 규정 및 관행 역시 범죄암수추정에 있어 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는 범죄피해조사가 설령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난점인데, 그것은 인지된 범죄가 공식범죄통계로 기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량의 정확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8) 왜냐하면, 범죄피해 경험은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볼 때 희귀한 사례에 속하고, 그로 인해 웬만큼 표본수가 크지 않고서는 피해경험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 폭력을 동반한 전형적인 강간범죄'나 '주거침입강도범죄' 같은 유형들은 어지간한 표본수로는 표본에서 아예 포착되지도 않거나 혹은 포착되더라도 단 몇 건만이 포착될 개연성이 높다. 극한적인 과소사례의 경우, 회상오차에 의해 잘못 집계된 사례가 단 한 사례만 추가되거나 빠져도 계산되는 범죄피해율이 큰 폭으로 요동을 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수는 —특히 그 목적이 특정범죄의 범죄암수 추정일 때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일반적으로 도시의 범죄피해율이 농촌의 범죄피해율보다 높고, 젊은층의 범죄피해율이 노년층의 범죄피해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이 도시에 편중되는 비중이 높거나 젊은층에 편중되는 비중이 높을 경우 범죄피해율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 있는 것은 경합사건의 집계와 반복범죄의 집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 집계 규정상, 경합사건은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실제적 경합을 불문하고 중한 죄 또는 주된 범죄 1건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은경·박정선·정병하·탁종연·황정인, 2009 : 23). 경합사건 중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범죄가 2개 이상, 그리고 서로 다른 내용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명 이상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경합이 되면 나머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만 남게 된다. 이 경우, 공식범죄통계상 집계된 범죄는 1건이지만, 범죄피해조사상 나타나는 피해자 혹은 범죄피해건수는 2건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일 가해자의 여러 건의 반복범죄의 경우에도 가장 중한 1건만 정식으로 집계되는 것(앞의 문헌 같은 쪽)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며, 최종 범죄의 수단이 되는 '도구적 범죄'의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누락되고 있다(앞의 문헌 : 25)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컨대 현재 기준에 따르면 특정한 범죄들은 공식범죄통계에서 체계적으로 왜곡·축소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앞의 문헌 같은 쪽). 이 점을 감안한다면, 설령 범죄피해조사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 집계상의 이러한 규정과 관행들만으로도 범죄암수추정은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난점은 결국 장기적으로 공식범죄통계 집계 규정과 관행을 개선·합리화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당장의 범죄암수추정 시도를 함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알고 나서 범죄암수추정을 하는 것과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암수추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최소한 이 문제로 인해, 최종 추정된 범죄암수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다소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단, 공식범죄통계상 특정범죄의 체계적 왜곡·축소의 정도와 그러한 범죄유형의 정확한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은 그러한 감안의 '정도'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기는 할 것이다.

2. 범죄암수추정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조사자료 혹은 범죄피해조사 성격의 자료를 가지고 이를 공식범죄통계와 대비하여 범죄암수를 '비교적 진지하게' 추정해본 논문은—필자가 알기로는—단 한 편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20년 전의 일이기도 하다. 그 논문(심영희, 1990)의 원자료는 1989년에 실시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심영희 외, 1990)

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그 이후의 범죄피해조사가 1989년에 실시한 조사보다 훨씬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암수를 진지하게 추정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범죄피해조사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그로 인한 범죄암수추정의 난점을 이후의 연구자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사실과 맞물리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어쩌면 이 20년 전의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그러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라는 조건 속에서 '과감하게 이루어진 작업'일 개연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실로 20년 만에 진지한 범죄암수추정을 해보는 현재의 시점에서 옛 추정자료를 되돌아보는 것은 적어도 과거보다는 진화된 범죄암수추정을 하는 데에 이를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시점에서 전문적으로 범죄학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 선행 연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긴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 연구가 없었다면, 이후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조사의 발전 역시 없었을 것이며 본고에서와 같은 시도 역시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진리는 오류를 토대로 발전하고 오류 없이는 진리도 없다. 어떤 연구에 있어 '시도' 자체가 없다면, 오류의 여지도 없고 오류의 여지가 없다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본고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20년 전의 범죄암수추정 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어내고자 한다.

다음 <참고표 1>은 1988년도 대상 '성폭력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같은 해 공식범죄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범죄암수를 추정하고 이를 요약한 것이다(심영희, 1990 : 160). 참고로, 이 표의 토대가 되는 조사는 1989년 9월에 실시된 것이며, 조사대상 모집단은 서울 지역 거주 성인여성이며, 총표본수는 2,290명, 최종 분석 표본수는 2,264명이다(앞의 문헌 : 151-152).

〈참고표 1〉 선행연구에서의 범죄암수추정 :
1988년 공식통계와 피해조사결과에 나타난 범죄율 비교

| 범죄 유형 | 공식통계(1988년) | | 조사결과* | | 숨은범죄 대 공식범죄 | 추산 신고율(%) |
|-------|-------------|----------------|---------------------|---------------------|-------------|-----------|
| | 발생 건수 | 인구10만 명 당 발생건수 | 응답자 2,264명 중 범죄피해자수 | 인구10만 명 당 피해자수 | | |
| 절 도 | 93,094 | 218.6 | 354 | 15,636.0 | 71.5 | 1.4 |
| 강 도 | 3,446 | 8.1 | 49 | 2,164.3 | 267.2 | 0.4 |
| 강 간 | 4,658 | 10.9 | 22 | 485.9 ¹⁾ | 44.6 | 2.2 |
| 강도강간 | 428 | 1.0 | 9 | 198.8 ²⁾ | 198.8 | 0.5 |

* 1989년 9월에 실시된 조사로, 1989년도의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한 것임(심영희 외, 1990).

1) $22 \div (2,264 \times 2) \times 100,000$. 2) $9 \div (2,264 \times 2) \times 100,000$.

※ 출처 : 심영희, 1990,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 1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표를 보면, 한 눈에 봐도 상당한 범죄암수가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절도범죄의 피해율은 공식범죄통계상의 절도범죄율의 71.5배, 강도범죄의 경우 267.2배, 강간범죄는 44.6배, 강도강간은 198.8배이다. 공식범죄통계에 포착된 절도범죄는 전체 범죄의 1.4%, 강도는 0.4%, 강간은 2.2%, 강도강간은 0.5%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사방법과 설문문항 구성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이 표만 자세히 곱씹어 들여다보아도 이 표에 나타난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절도와 강도의 숨은 범죄비율이 상식과 배치되고 있다. 상식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경우에도, 절도범죄의 암수가 강도범죄의 암수보다 적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추산신고율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신고율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는 많이 신고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덜 신고된다. 그런데, 이 표에서는 절도범죄의 추산신고율이 강도범죄의 추산신고율의 3배를 넘어선다. 다음으로 조사상의 강간범죄 발생건수와 강도강간범죄 발생건수 역시 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강도강간이 9건이면, 강도강간을 제외한 순수한 강간범죄는 13건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22건의 강간범죄 중 9건이 강도강간일 수 있는 현실적 개연성이 있을까? 세상의 그 어떤 나라라도 이런 비율의 강간-강도강간의 비율로 범죄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고 판단한다. 강도범죄와 강도강간을 대비해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짐은 물론이다. 전체 강도사건

(49건) 중에 5분의 1이 강도강간 사건(9건)이라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표의 구성을 가능케 한 기본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당시 조사의 응답자 설문지에서 범죄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불안정성을 들어볼 수 있다. 즉 당시 설문에서는 특정 범죄의 구체적 행위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범죄 피해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라고 질문 한 뒤 간단하게 “절도_건, 강도_건, 강간미수_건, 강간_건, 강도강간_건”이라는 형식으로 측정(심영희 외, 1990 : 280)한 것이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앞서 지적한 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중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불일치’의 문제를 가장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설문지에서는 절도와 강도의 경우, 침입성 가구범죄와 대인범죄를 구별하지 않았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침입강절도는 사건수와 피해자수(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만한 사람의 수)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범죄이다¹⁰⁾. 따라서 당시 조사에서처럼 절도와 강도를 모두 개인 단위로 측정할 경우 가구범죄의 과대산정 가능성으로 인해 전체 범죄피해율이 과대산정될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의 표집 혹은 표본추출(sampling)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할 만하다.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 속한다. 더 큰 문제는 표본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의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이라는 사실¹¹⁾이다. 확률표집에 가까운 엄격한 표집을 하더라도 적은 표본으로 범죄암수를 추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확률표집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임의적 표본을 가지고 정확한 범죄암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난센스에 가깝다. 당시 표본이 얼마나 편중된 표본인지는 이 표본의 연령분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19세 여대생을 포함한 20대와 30대 여성의 비율의 합계가 86%에 달하였다(심영희, 1990 : 154의 표 참조). 당시 우리나라 전체 연령별 인구분포에서 20-30대가 86%였을 리는 만무하다. 이와 같은 표본의 극히 편중된 연령분포를 가지고 조사피해율을 공식법

10) 가령 한 가구당 설문지에 응답 가능한 평균 가구원수가 2명일 경우, 개인 단위로 가구범죄 피해조사를 실시하면 1사건에 평균 2명씩의 피해 경험 응답자가 나오는 셈이 된다.

11) 2,290명의 총표본 중에는 서울시내 종합대학 여대생이 500명, 서울시내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 226명, ‘복지아파트’라는 곳에 거주하는 생산직 근로여성 225명, YWCA 교양강좌에 참여한 파출부 51명,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 입원된 윤락여성 158명이 포함된다(심영희, 1990 : 151-152).

죄통계와 비교하면, 피해율이 확실하게 과대산정될 수밖에 없다. 보통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강간범죄의 경우엔 다른 범죄보다도 특별히 ‘젊은’ 여성(20-30대)의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위 표에 나타난 강간범죄피해율과 강도강간범죄피해율은 더 과대산정된 값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당시 조사상 표집 오류의 결정판은 표본 내 윤락여성의 비율이다. 최초 표본 2,290명 중에 158명(7%)이 윤락여성이었다. 이는 강간범죄와 강도강간범죄피해율의 극과대 산출 가능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락여성의 강간 및 강도강간범죄피해 가능성(혹은 그 피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일반여성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범죄암수추정 선행 연구 사례는 그것의 심각한 오류를 통해 역으로 범죄암수추정이란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위한 유용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특히 피해경험 측정방법과 표집의 방법, 그리고 피해조사에서의 범죄유형과 공식범죄통계 내의 범죄유형 사이의 맞대응(범주적 일치) 여부는 범죄암수추정의 정확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연구의 자료와 비교분석의 방법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이 범죄피해조사상의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 비교를 통해 범죄암수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당연히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공식범죄통계 자료 두 가지이다. 이 중 범죄피해조사 자료는 가장 최근의 범죄피해조사자료인—2008년도 경험을 대상으로—2009년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 자료(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이다. 범죄피해조사자료를 2008년도 피해경험에 대한 측정 조사자료로 선택할 경우, 그에 대한 비교 대상이 되는 공식범죄통계자료는 당연히 2008년도 범죄발생통계가 기록된 자료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2008년도 범죄통계가 수록되어 있는 『2009범죄분석』(대검찰청, 2009)을 비교자료로 사용하였다.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자료는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점들, 특히 그 동안의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모두 완벽하게 극복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몇몇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나라 범죄피해조사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만하다.

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 중의 하나는 표본수의 커다란 증가이다. 이 조사의 표본수는 4,710가구(총 성공가구수), 10,671명(총 성공개인수)이다. 평균적으로 2,000명 수준이었던 과거 표본사례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표본의 증가에 의해 희귀 발생 범죄유형(가령, 전형적인 강간범죄)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범죄피해율 추정치의 불안정성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고 할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선은 표집단위 문제의 해결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1993년-2005년)에서는 관찰단위가 서로 다른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를 형식적으로 구별하기는 하였으나, 가구범죄까지도 인구비례로 표집하여 가구범죄피해율의 왜곡 가능성이 컸었다(박순진, 2002 : 26). 이에 비해 본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관찰단위를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두 차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표집방법 역시 두 가지 가구단위 표본과 인구단위 표본으로 계열화하여 접근하였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74). 이를 통해 가구범죄 피해율의 왜곡 가능성은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범죄피해 경험 포착 방법 역시 대대적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구체적 행위나 피해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별하여 특정 유형의 범죄피해를 최종 판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 방법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불일치’의 문제를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범죄의 법률적 구성 요건에 맞는 행위요소들만 골라 조합하여 법률적 정의에 최대한 근접하는 범죄피해경험만을 따로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그 밖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¹²⁾.

2. 비교분석(범죄암수추정)의 방법

다음으로는 2008년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2008년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비교 방법과 비교의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비교의 원칙은 “가급적 동일 유형의 범죄가 서로 맞대응(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도 꾸준히 제기 했던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12)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I)』의 pp74-150 참조.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 혹은 불일치'의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한 '주거침입절도범죄'는 공식범죄통계상에 나타난 절도범죄 중에서 오로지 '주거침입절도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들만 뽑아서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범죄유형을 합쳐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범죄유형을 분할하여 비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는 범죄피해조사에서 알게 모르게 누락된 유형의 범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조사상의 '주거침입절도'와 '대인절도'를 합칠 경우, 그것이 곧바로 공식범죄통계상의 전체 절도범죄와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¹³⁾. 아무튼 이 비교의 원칙으로 인해, 범죄피해조사상의 범죄유형 및 특정 범죄유형의 범위를 재조정하기도 할 것이지만, 공식범죄통계치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범죄피해조사상의 해당 범죄의 범주와 되도록 유사해질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도 할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공식범죄통계에서 특정 범죄유형들이 분류되어 있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각 범죄유형별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또한 '비교 대상 범죄의 맞대응' 원칙에 따라,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자료 사이의 비교가 특별히 어렵게 되는 있는 범죄유형들의 경우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광의의 폭행', '협박·괴롭힘'은 일반인들 사이에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범위가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¹⁴⁾ 피해조사에서의 '일반(비교적 가벼운) 폭행'과 '협박·괴롭힘'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점에서는 '사기범죄'도 비교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기의 경우, 특별할 정도로 법률상 정의와 일반적 인식 사이의 괴리가 크다. 비록 2008년 범죄피해조사에서 사기범죄 측정에 큰 공을 들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에서 측정된 사기범죄는 공식범죄통계상의 사기범죄의 범주와 크게 불일치¹⁵⁾할 개연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기범죄 역시 비교에서 일단

13) 피해조사에서는 '주거침입절도가 아닌 침입절도'가 대인절도로 포함되거나 아예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인절도의 경우 온갖 잡다한 유형의 절도범죄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14)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행위, 교사가 자녀를 때리는 행위, 친구가 자녀를 때리는 행위는 물론, 그 때리는 정도에 따라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편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협박이나 괴롭힘의 경우엔 그 편차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15)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부도이다. 기업이 부도를 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공식범죄통계에서 인천 같은 도시는 광주 같은 도시보다 특별히 사기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천에 특별히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신, 인천에는 중소기업이 특별히 많다. 참고로,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부도기업수는 대략 3,500개업소이다(한국은행통계). 그리고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인천에 '사기범죄'가 많은 이유이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기범죄는 잘 포착되지 않게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제외¹⁶⁾할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유로,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보고서에 측정되어 제시된 범죄, 즉 주거침입강절도, 단순주거침입, 대인절도, 대인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의 범죄유형들 중에서 협박·괴롭힘,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는 제외하고, 폭행·상해의 경우엔 ‘일반 폭행’은 제외하고 ‘신체적 피해가 분명한 상해범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단순주거침입’의 경우에도, 공식범죄통계상의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는 탓에 제외하였다. 결국 본고에서 범죄피해조사 결과와 공식범죄통계를 정식으로 비교하여 그 범죄암수를 추정해보고자 하는 범죄는 ‘주거침입강도’, ‘대인강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성폭력’, ‘신체적 피해가 분명한 상해범죄’의 총 여섯 가지 범주이다.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과 범죄피해조사상의 범죄피해율을 계산할 때에는 가급적 비교의 기본 단위를 통일하여 비교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주거침입강도나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경우엔 철저히 ‘가구 단위’로 범죄율 혹은 범죄피해율을 계산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표본의 전체 가구수를 분모로 사용하였고, 공식범죄통계의 경우엔 2008년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분모로 사용하여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대인절도, 대인강도, 신체적 피해가 분명한 상해범죄의 경우엔 ‘인구 단위’로 범죄율 혹은 범죄피해율을 계산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표본의 전체 인원수를 분모로 사용하였고, 공식범죄통계의 경우엔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인 48,606,787명을 분모로 사용하여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성폭력’의 경우엔, 대인절도나 대인강도와 같은 방법으

16) 차후에라도 범죄피해조사상 사기개념이 공식범죄통계상 사기범죄와 면밀하게 대응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그 비교를 엄밀한 방법으로 수행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이라도 사기범죄의 범죄암수를 간단하게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비교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논리적으로 부적합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게 문제이다.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사기범죄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314.7건(10,671명 중 247건) 또는 인구 10만 명 당 1986.7명(212명)으로 계산된다. 같은 해 공식통계에서의 사기범죄는 205,140건이고 이는 인구 10만 명 당 422건으로 계산된다. 이럴 경우, 사기범죄의 ‘추정범죄처리율(발각되는 비율)’은 18.2%, 또는 21.3%이다. 여기까지는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상 사기범죄의 신고율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정치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피해자신고율은 8.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식범죄통계상 사기범죄에는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하지 못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상당한 정도로 더 존재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단, 원보고서의 총피해건수(433건, 10만 명 당 4057.7건)을 이용해 비교할 경우엔(사기범죄의 경우엔 뒤의 각주에서 언급할 총피해건수의 문제가 덜 심각하기는 하다), 추정범죄처리율이 10.3%로 계산되면서 신고율과 조금 비슷해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때는 433건이 아닌 247건을 분모로 하여 계산된 신고율 8.6%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크게 삭감되기 때문에 신고율과 추정범죄처리율이 근접해졌다는 판단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로 비교하기도 하였지만, 주된 비교는 여성인구와 여성피해자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즉 분자는 오로지 여성 성폭력 피해자 혹은 피해건수만을 이용하고, 분모는 여성인구를 이용하는 비교방법이다. 이 경우,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표본의 여성 인원수를 분모로 사용하였고, 공식범죄통계의 경우엔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중 여성 인구인 24,190,904명을 분모로 사용하여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한편, 2008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구가중치와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고에서 여러 가지 이유¹⁷⁾로 인해 범죄피해율을 계산할 때에는 이러한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표본수 중 피해사례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단, 범죄피해조사상의 피해자 신고율을 계산할 때에는 가중치가 부여된 신고율 주로 이용하였다¹⁸⁾. 덧붙여, 범죄건수와 범죄피해인원을 비교할 때에는 각각에 대응하는 기준에 맞게 서로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범죄피해조사의 범죄건수 기준 피해율은 공식범죄통계의 범죄건수 기준 발생율과 비교하고,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자수 기준 피해율은 공식범죄통계의 범죄피해자수 기준 발생율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단, 이럴 경우, 공식범죄통계에서 부득이하게 복잡한 재계산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신고접수율 추정이나 종합적인 비교를 할 때에는 두 개의 피해율 혹은 범죄율 중 그 계산 과정에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을 것이라 판단되는 수치를 주로 이용하였다. 단, 여기서 범죄건수는 ‘원보고서’(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154) 내에 있는 ‘총 피해건수’가 아니라¹⁹⁾ ‘사건보고수’임을 미리 밝혀둔다. 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산 과정들은 각 개별

17) 첫째, 본고에서는 공식범죄통계의 범죄율을 계산할 때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를 사용하였는데,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의 경우 2005년도 전체 인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참고로, 양자 사이에는 꽤 차이가 있다. 둘째, 원보고서(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에 제시된 피해율 가중치값은 특히 피해건수에 있어 조금 잘못된 분모(그러나, 아주 큰 차이는 아님)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계산이 다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중치값을 옳게 재계산할 수 있으나, 과정이 복잡해서 편의상 표본에서의 피해율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셋째, 가중치를 부여한 피해율과 그렇지 않은 피해율 값의 차이가 별로 그다지 크지 않다. 넷째, 피해유형에 따라 가중치 피해율이 표본 피해율보다 약간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가급적 범죄피해조사의 최소피해율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접수된 사건의 경우에도 공식범죄통계가 약간 축소되어 있는 탓에 최소피해율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이고, 최소값을 써야 범죄암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나오는 것도 이유이다. 참고로, 범죄암수는 최소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활용하기에 좋을 것이다. ‘최소 몇 배 이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범죄피해율과는 달리 신고율의 경우, 가중치값과 표본비율값의 차이가 꽤 크다. 이 중 가중치값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더 가까울 것이라 판단한다. 지역분포, 연령·성별분포 등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19) ‘원보고서’ 내의 ‘총 피해건수’를 비교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이 계산치들은 명백하게 틀린 계산치들이다. 먼저 이 계산치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범죄를

범죄유형들의 범죄암수를 계산할 때, —그 어떤 연구자가 재계산하더라도 완벽한 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계산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보고하고자 하였다.

3. 추정범죄암수의 타당성(현실 적합성) 검토의 방법

끝으로, 본고에서는 각 범죄유형들의 범죄암수추정과 더불어 그와 같은 추정범죄암수들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작업을 덧붙이고자 한다.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방법은 범죄피해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신고율을 통해 범죄암수와 신고율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범죄가 오로지 피해자신고에 의해서만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고, 피해자의 신고가 ‘모두’ 공식범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엔, 범죄피해조사의 피해율에다 피해자신고율을 곱하면 해당 범죄의 공식범죄통계상 범죄율과 ‘원론적으로는’ 같거나 유사해질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앞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산 방법은 범죄피해조사를 통한 범죄암수추정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일 뿐이다. 왜냐하면, 많은 범죄들은 피해자신고에 의거하지 않고도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제3자 신고, 경찰의 직접인지 등) 피해자 신고에 의한 적발 비율이 각 범죄유형에 따라 크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신고된 범죄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모두 공식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신고는 되었으나 접수는 되지 않는 사건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존재하며, 그 비율은 각 범죄유형별로 모두 다르다. 참고로, 영국범죄피해조사에서의 신고율과 신고기록율에 관해 다음 <참고표 2>를 보면(Sanderson, 1994), 그러한 실상을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관별하기 위해 주어지는 질문보다 먼저 나온다는 게 문제다. 가령, 주거침입절도가 관별되기 전에 이 수치가 먼저 나온다. 따라서 주거침입절도의 총 피해건수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며, 거기에는 다른 종류의 절도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둘째, 설령 ‘총 피해건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범죄통계와 비교할 때에는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총 피해건수’ 측정의 본래 목적은 일종의 ‘반복범죄’를 파악하기 위한인데, 앞서도 잠깐 지적했듯이 그와 같은 ‘반복범죄’들은 현재의 관행상 공식범죄통계에서 어차피 1건으로 기록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피해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피해자수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사건보고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할 수 있다. 셋째, 앞의 각 주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최소 피해율 비교의 원칙’ 때문이다. 피해율을 최소값으로 써야 범죄암수가 최소값으로 계산되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범죄암수가 ‘최소 몇 배 이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표 2〉 199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범죄신고율과 범죄기록률

단위: %

| 범죄 종류 | 신고율 | 기록률 |
|---------|-----|-----|
| 기물과괴 | 28 | 56 |
| 침입절도 | 73 | 63 |
| 재산손실 없음 | 53 | 41 |
| 재산손실 있음 | 92 | 74 |
| 자동차침입절도 | 53 | 61 |
| 자동차절도 | 99 | 94 |
| 강도 | 49 | 48 |

※ 원자료출처 : 영국범죄피해조사, 1992. Sanderson [1994] 2001, 김형만 · 이동원 역: 64.

위 표에서 영국의 경우엔, 그나마 범죄신고율도 꽤 높고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접수율(신고를 공식범죄로 기록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음 〈참고표 3〉은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범죄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탁종연, 2006), 이를 보면 경찰의 신고접수율이 영국보다 크게 낮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경찰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참고표 3〉과 〈참고표 2〉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신고접수율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는 신고접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신고접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성은 각 범죄유형들에 대한 범죄암수추정이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참고표 2〉의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신고된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해 주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율과 기록률을 곱하여 불완전하게나마 범죄암수추정의 사후검증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에다가 (신고율×신고접수율)을 곱하면,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과 어느 정도까지는 유사해질 수 있고, 그 유사성의 정도 여부로 대략적인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표 3〉 경찰의 범죄유형별 정식보고율(2006년 국내 조사자료)

단위: %

| 정식보고율 | 범죄유형 | | | | |
|--------|-----------------|-----------------|-----------------|-----------------|-----------------|
| | 강도 | 강간 | 기타성범죄 | 폭력/상해 | 절도 |
| 90%이상 | 60.2 | 53.5 | 46.1 | 44.1 | 31.6 |
| 75-89% | 20.2 | 16.9 | 17.7 | 26.9 | 27.5 |
| 50-74% | 10.2 | 16.0 | 22.6 | 20.4 | 24.6 |
| 25-49% | 4.5 | 7.0 | 7.4 | 6.1 | 11.9 |
| 25% 미만 | 4.5 | 6.6 | 6.2 | 2.4 | 4.5 |
| 총계 | 100% (N=244) | 100% (N=243) | 100% (N=243) | 100% (N=245) | 100% (N=244) |

※ 자료출처 : 탁종연, 2006 : 70.

하지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범죄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된 신고접수율이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행히 2008년 범죄피해조사의 설문 문항 중에는 신고접수 여부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할 만한 문항²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다소 간접적인 검증을 수행해 보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정확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몇몇 추가적인 자료를 이용해 (특정범죄의 고소사건비율, 신고에 의한 인지비율, 검거율 등 이용), 범죄암수추정의 현실 적합성 내지 타당성 검토를 보충하여 추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 원보고서(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의 설문지에 “경찰은 당신에게 신고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까?”라는 문항이 있다(앞의 문헌 : 525).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예’인 경우가 곧바로 ‘신고된 사건의 공식 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에 근접하는 어떤 것일 개연성은 있다.

IV. 주요 범죄유형들의 공식통계상 발생률과 범죄피해조사 피해율

1. 절도범죄

1) 주거침입절도

2008년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 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미수포함)과 ‘재산탈취피해’(미수포함), 그리고 ‘재산탈취의 은밀성’(무언가를 몰래 가져간 경우)의 판별조건 조합에 따라 그 피해 해당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108). 주거침입절도범죄 피해율은 조사대상이 되는 ‘전체 가구의 수’를 분모로 한 해당범죄의 피해가구수 혹은 피해건수²¹⁾ 비율로 나타난다. 피해가구수를 기준으로 피해율을 계산할 경우엔, 전체 4,710가구 중 주거침입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수는 114가구로 범죄피해 백분율은 2.42%가 되며 10만 가구 당 피해자수로 환산하면 10만 가구 당 2420.4가구로 나타난다.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전체 4,710가구 중에서 124건의 주거침입절도범죄피해가 보고된 결과로 백분율은 2.63%, 10만 가구 당 2632.7건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나타난 피해조사 결과를 2008년도 공식범죄통계상에 나타난 주거침입절도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법률적 정의에 ‘주거침입절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통계상 제시되는 범죄유형과 항목에도 ‘주거침입절도’라는 범주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범죄분석』에는 “절도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대검찰청, 2009 : 157)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공식통계상 기록된 2008년도 주거침입절도 발생건수를 대략 계산해 낼 수 있으며, 그 계산 결과는 38,408건이다. 이 수치는 2008년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분모로 할 때, 10만 가구 당 230.4건의 주거침입절도범죄가 공식범죄로 기록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공식통계상 발생률을 피해건수가 아닌 피해단위(피해자, 피해가구)로 계산해보는 것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위험성 높은 추정작업이기는 하나 그 대략적 계산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식통계상 전체 절도범죄와 주거침입절도범죄 사이의 비율을 알고, 공식통계에 제시된 전체 절도범죄 피해자수치에 이 비율을

21) 원보고서(앞의 문헌)에서 제시한 ‘사건보고수’에 해당된다. 이하에 제시된 범죄피해조사 피해건수 역시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용하면 비례식을 통해 2008년도 10만 가구 당 대략 220.6가구²²⁾가 주거침입절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비교표 1-A〉 2008년도 주거침입절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건수기준 | 2632.7건 ¹⁾ | 230.4건 ²⁾ | 11.4배 | 8.6% |
| 피해가구기준 | 2420.4가구 ³⁾ | 220.6가구 ⁴⁾ | 10.9배 | 9.1% |
| 1가구 당 평균 피해건수 | 1.09 | 1.04 | |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주거침입절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주거침입절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124 \div 4,710) \times 100,000$.

2) $(38,408 \div 16,673,162) \times 100,000$, 16,673,162는 2008년도 추계가구수.

3) $(114 \div 4,710) \times 100,000$.

4) $(36,776 \div 16,673,162) \times 100,000$, 36,776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비교표 1-A〉는 2008년도 주거침입절도의 공식범죄율과 조사피해율을 비교하기 용이한 형태의 표로 작성해 본 것이다.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조사된 주거침입절도 범죄피해율은 공식기록된 범죄율보다 11.4배가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 자료들에 의하면, 공식기록된 범죄사건은 숨은 범죄를 포함한 주거침입절도범죄 전체에서 8.6%의 비중이라고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추정범죄처리율’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제시했던 심영희의 논문(심영희, 1990 : 160)에서는 본고에서 추정범죄처리율이라고 한 것을 ‘추산 신고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추산 신고율이란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범죄가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에서 ‘신고된 범죄들의 집합’라는 가정을 전제해야지만 성립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공식 기록된 범죄에는 ‘신고 없이 경찰에 의해 직접 인지된 범죄’가 포함되고, 피해자나 제3자가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공식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추산 신고율이란 개념을 확대 해석하

22) 비례식(2008년 전체절도범죄건수 223,259 : 2008년 주거침입절도범죄건수 38,408 = 2008년 전체절도범죄피해자수 213,772 : X)을 이용한 것이다(대검찰청, 2009 : 157, 170 자료 근거 산출). X는 36,776명으로 계산될 것이다. 보통 주거침입절도범죄가 발생하면 공식통계에 기록되는 그 피해자수는 그 가족의 구성원수 전체가 아니라 가구주 등 대표자 1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절도범죄의 경우엔 피해자수와 가구수가 사실상 같은 수치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36,776명은 36,776가구로 간주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수치를 가지고 2008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기준으로 10만 가구당 공식피해가구수를 계산하면 220.6가구가 된다.

여 ‘신고’를 ‘사법기관의 범죄 인지처리’와 동의어로 간주할 경우엔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추산 신고율 개념에서의 신고율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신고율(사실상 피해자 신고율)과 동일시할 경우엔 추산 신고율이 피해조사상의 신고율과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 <비교표 1-B>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주거침입절도 피해 사례 124건 중 38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신고율이 30.6%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가중치를 부여하고 난 다음 다시 계산하면, 33.8%가 된다. 만약 범죄피해조사가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를 모두 포착해 낸 것이고, 공식통계상 주거침입절도가 오로지 모두 범죄피해자 신고에 의해서만 인지된 것이며, 신고된 범죄가 모두 경찰에 의해 공식적인 통계로 집계된 것이라는 세 가지의 가정이 완벽하게 충족될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신고율과 추정범죄처리율이 같거나 비슷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교표 1-B>에서 보다시피, 양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는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그 모든 신고가 곧바로 공식통계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탁종연의 연구결과(탁종연, 2006)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고된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특히 경미한 사건이나 범인 체포가 난망한 사건 등)들은 경찰에 의해 공식통계로 정식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다. 따라서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상의 범죄피해자 신고율 사이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누락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교표 1-B> 2008년도 주거침입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
(사건 기준) 비교**

단위 : %

| 신고율 가중치부여 | 추정범죄처리율 | 피해조사신고율 | 추정신고접수율* |
|--------------|---------|--------------------|----------|
| 비가중치 | 8.6 | 30.6 ¹⁾ | 28.1 |
| 가구가중치부여 | | 33.8 ²⁾ | 25.4 |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 ×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주거침입절도 피해사례 124건 중 38건(30.6%)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그 점을 유념하면서 동시에 주거침입절도범죄가 오로지 범죄피해자 신고에 의해서만

인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고한 주거침입절도 범죄 중 25.4%(가구가중치 피해자신고율 이용시)만이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된다고 추정해 낼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여전히 그 계산이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범죄의 일정 부분은 피해자 신고가 아닌 다른 경우, 즉 제3자 신고, 현행범체포나 그 밖의 경찰의 직접 인지(탐문수사, 여죄인지 등)에 의해서도 공식통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의 <비교표 7>에서 다루겠음).

2) 대인절도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상의 대인절도 피해율과 공식범죄통계상의 대인절도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은 주거침입절도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침입절도는 비교적 그 판별이 간단하여, 일반인의 판단과 법률적 정의 사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데 비해, 그 외 나머지 유형의 절도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각할 경우, 공식통계상 전체 절도범죄에서 침입절도범죄를 제외하면 대인절도범죄가 될 것 같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침입절도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절도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²³⁾,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애매한 사건들²⁴⁾이 대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다. 『범죄분석』에 제시되어 있는 절도범죄의 수범은 크게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 절도’, ‘기타’의 유형으로 구별되어 그 각각의 건수가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는 바로 ‘기타’ 유형의 절도 범죄이다. 다시 말해,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범죄분석」에 나타난 통계수치만 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08년도의 경우, 그 비중은 51.1%(223,259건 중 129,810건)에 달한다.

2008년도 이전에 실시되었던 범죄피해조사들에서는 대인절도범죄가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 이른바 치기범죄에 국한되어 그 점에서는 공식통계와의 비교가 상대적

23) 단적인 예로, 산업기술유출 관련 사건에 절도 범죄가 경합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각종 기업범죄에서 절도 범죄가 경합되어 기소된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24) 일례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누군가 이를 습득하여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지만, 그 사람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자동현금출납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절도 혹은 절도미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특히 절도미수의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이를 절도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으로 용이하였지만,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적어도 절도행위의 내용상으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더 어려워졌다. 즉 여기에서 대인 절도는 ‘주거침입’(미수포함)이 아니면서²⁵⁾ ‘재산탈취피해’(미수포함)를 당하고 ‘재산탈취의 은밀성’(무언가를 몰래 가져간 경우)이 수반되었을 때 그 피해 해당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109). 따라서 여기에는 자동차절도나 자동차부품절도가 포함될 수도 있음은 물론, 그 밖의 잡다한 절도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엔 주거침입절도가 아닌 침입절도범죄까지 포함될 가능성²⁶⁾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대인절도 범주는 공식통계상 절도 범주 중 어느 하위 유형 범위까지 비교하기에 적합한 것일까? ‘기타’ 범주가 포함될 것인가? 만약 혹시라도 포함된다면, 그 전부가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포함될 것인가? 만약 일부만 포함된다면, 더 이상의 엄밀한 추정의 길은 막힌다. ‘기타’ 범주를 더 작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단지 ‘차량이용절도’ 및 ‘속임수절도’, 그리고 ‘치기범죄들’만을 대인범죄로 간주하는 방법과 거기에서 ‘기타범죄’를 합산한 수치를 대인범죄로 간주하는 두 가지²⁷⁾의 추정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추정을 해보았다. 추정 결과, ‘치기범죄’(차량이용절도와 속임수절도 포함)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나마 더 현실적인 추정에 가까울 것이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기타’를 포함할 경우, 현실-논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타’를 포함할 경우, 대인범죄의 숨은 범죄비율은 대인강도의 숨은 범죄비율보다 훨씬 적어진다. 또한 그럴 경우, 그 대인절도범죄 적발률(혹은 범죄처리율)은 주거침입절도는 물론 주거침입강도범죄의 적발률과 비슷해지거나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 이는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결국 부득불 ‘침입절도’와 ‘기타 절도’를 제외한 수치를 대인범죄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²⁸⁾. 다음에서 수행하는 비교 작업은 이를

25) 혹은 ‘발생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발생지역’을 잘 모를 경우, 그것은 적어도 범죄발생장소가 ‘자기집’은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26) 보고된 주거침입절도범죄 124건은 모두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대한 침입절도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고보고서의 판별식에 따르면 기타 침입절도가 대인범죄로 분류될 가능성마저도 ‘원론적으로는’ 존재하게 된다.

27) 주거침입절도가 아닌 다른 유형의 침입절도를 포함하는 것은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고자 한다.

28) 조금 다른 차원에서도 그 방법이 상대적으로 좀 더 현실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더 있다. 먼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절도 중 침입절도가 아닌 나머지 대인절도는 거의 대부분은 치기절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자건거절도 등이 공식통계

전제로 한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비교표 2-A〉를 보면, 우선 2008년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의 피해율은 피해자수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2876.9명(10,671명 중 307명), 피해건수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3139.3건(10,671명 중 335건)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가정했던 방식으로 공식통계상 대인범죄 발생률을 계산하면, 피해건수 기준으로 2008년도 인구 10만 명 당 40.8건(48,606,787명 중 19,847건²⁹⁾), 피해자수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39.1명(48,606,787명 중 19,004명³⁰⁾)임을 볼 수 있다. 두 자료를 피해건수 기준으로 비교해 볼 경우, 조사된 대인절도 범죄피해율은 공식기록된 대인절도 범죄율보다 76.9배가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 자료들에 의하면, 공식기록된 범죄사건은 숨은 범죄를 포함한 대인절도범죄 전체에서 1.3%의 비중이라고 추정된다.

〈비교표 2-A〉 2008년도 대인절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건수기준 | 3139.3건 ¹⁾ | 40.8건 ²⁾ | 76.9배 | 1.3% |
| 피해자수기준 | 2876.9명 ³⁾ | 39.1명 ⁴⁾ | 73.6배 | 1.4% |
|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 1.09 | 1.04 | |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대인절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대인절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335 \div 10,671) \times 100,000$.

2) $(19,847 \div 48,606,787) \times 100,000$, 48,606,787은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3) $(307 \div 10,671) \times 100,000$.

4) $(19,004 \div 48,606,787) \times 100,000$, 19,004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다음 〈비교표 2-B〉를 볼 경우,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대인절도 피해 사례 335건 중 42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신고율이 12.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고 난 다음 다시 계산하면, 11.7%가 된다. 이에 비해 대인절도의

에서 ‘들치기’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대인절도 피해율은 그 이전의 피해조사에서의 대인절도(명확하게 치기범죄로 한정된 경우였음) 피해율보다도 훨씬 낮아졌다는 점(대인절도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면 대인절도 피해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한 것임) 역시 고려하였다.

29) 소매치기 2,380건, 날치기 3,391건, 들치기 11,079건, 차량이용절도 1건, 속임수절도 2,996건의 합산치이다.

30) 비례식(2008년 전체절도범죄건수 223,259 : 2008년 대인절도범죄건수 19,847 = 2008년 전체절도범죄피해자수 213,772 : X)을 이용한 것이다(대검찰청, 2009 : 157, 170 자료 근거 산출). X는 19,004명으로 계산될 것이다.

추정범죄처리율은 1.3%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인절도범죄가 오로지 범죄피해자 신고에 의해서만 인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고한 대인절도 범죄 중 11.1%(가구원가중치 피해자신고율 이용시)만이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된다고 추정해 낼 수 있게 된다.

〈비교표 2-B〉 2008년도 대인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사건 기준) 비교

단위 : %

| 신고율 가중치부여 | 추정범죄처리율 | 피해조사신고율 | 추정신고접수율* |
|-----------|---------|--------------------|----------|
| 비가중치 | 1.3 | 12.5 ¹⁾ | 10.4 |
| 가구원가중치부여 | | 11.7 ²⁾ | 11.1 |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 ×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대인절도 피해사례 335건 중 42건(12.5%)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단, 이상에서 살펴본 대인절도범죄의 범죄 암수 추정 과정에서 공식통계상의 ‘기타’ 절도범죄를 누락시킨 효과 때문에 대인절도범죄의 암수가 과장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하지만, 뒤에 보게 될 대인강도범죄의 추정 암수를 보게 되면, 그다지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 강도범죄

1) 주거침입강도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주거침입강도는 ‘주거침입’(미수포함)과 ‘재산탈취피해’(미수포함), 그리고 ‘재산탈취의 강제성 또는 폭력성’(강제성 또는 폭행 여부)의 판별조건 조합에 따라 그 피해 해당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다(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 108). 주거침입강도범죄 피해율은 주거침입절도범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이 되는 ‘전체 가구의 수’를 분모로 한 해당범죄의 피해가구수 혹은 피해건수 비율로 나타낸다. 이번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주거침입강도 피해가구수와 주거침입강도 피해건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범죄의 특성상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조사 사례가 4,710가구 중 단 3건(3가구) 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2008년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기준으로 10만 가구 당 63.7건이자 63.7가구로 환산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상에 나타난 사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산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한편, 이에 대응하는 공식범죄통계상의 주거침입강도범죄 발생치는 부득이하게 좀 더 불안정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안타깝게도, 절도범죄와는 달리 강도범죄에서는 범죄발생장소와 수법이 교차되어 나타난 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강도범죄의 수법을 나타낸 표(대검찰청, 2009 : 156)만 볼 경우, 2008년 전체 강도발생건수인 4,827건 중에서 침입강도는 1,687건이다. 하지만,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한 주거침입강도는 예외 없이 그야말로 주거침입강도만을 포함한 것이고, 기타 유형의 침입강도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분석』에 제시된 ‘침입강도’ 유형과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주거침입강도’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침입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더 더욱 위험한 일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대안적 차원에서 범죄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2008년도의 공식통계상 주거침입강도 발생건수를 계산해 보았는데, 이는 ‘아파트·연립·다세대’가 394건, ‘단독주택’이 645건으로 총 1,039건이다. 하지만, 이것도 침입강도 범죄의 정확한 범위는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발생장소가 반드시 침입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보다 약간 더 작은 수치가 아닐까 싶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어떤 수치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기에 필자는 부득불 1,039건을 공식통계상의 주거침입강도 발생건수로 간주하였다. 아무튼 이(1,039건)는 2008년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기준으로 10만 가구 당 6.2건으로 환산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확한 수치이겠지만, 공식통계상의 10만 가구 당 주거침입강도 피해가구수를 추정해 보자면, 10만 가구 당 6.1가구라는 계산이 나온다³¹⁾.

〈비교표 3-A〉에서 볼 수 있듯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주거침입강도 피해율은 —피해건수 기준으로— 같은 해 공식범죄통계상의 주거

31) 비례식(2008년 전체강도범죄건수 4,827 : 2008년 주거침입강도범죄건수 1,039 = 2008년 전체강도범죄피해자수 4,708 : X)을 이용한 것이다(대검찰청, 2009 : 170, 220 자료 근거 산출). X는 1,013명으로 계산될 것이다. 보통 주거침입강도범죄가 발생하면 공식통계에 기록되는 그 피해자수는 그 가족의 구성원수 전체가 아니라 가구주 등 대표자 1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강도범죄의 경우엔 피해자수와 가구수가 사실상 같은 수치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013명은 1,013가구로 간주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수치를 가지고 2008년 추계가구수인 16,673,162가구를 기준으로 10만 가구당 공식피해가구수를 계산하면 6.1가구가 된다.

침입강도 발생률(기록률)보다 10.3배가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추정범죄처리율은 9.7%로 계산되는데, 이는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주거침입강도사건 중에서 9.7%만이 공식 범죄통계에 기록된다는 뜻이다.

〈비교표 3-A〉 2008년도 주거침입강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건수기준 | 63.7건 ¹⁾ | 6.2건 ²⁾ | 10.3배 | 9.7% |
| 피해가구기준 | 63.7가구 ³⁾ | 6.1가구 ⁴⁾ | 10.4배 | 9.6% |
| 1가구 당 평균 피해건수 | 1.00 | 1.02 | |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주거침입강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주거침입강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3 \div 4,710) \times 100,000$.

2) $(1,039 \div 16,673,162) \times 100,000$, 16,673,162는 2008년도 추계가구수.

3) $(3 \div 4,710) \times 100,000$.

4) $(1,013 \div 16,673,162) \times 100,000$, 1,013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다음 〈비교표 3-B〉를 볼 경우,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주거침입강도 피해 사례 3건 중 2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신고율이 66.7%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가중치를 부여하고 난 다음 다시 계산하면, 67.8%가 된다. 그러나 신고율 계산치의 분모가 되는 사건의 수가 워낙 적은 탓에 이와 같은 신고율은 크게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만하다. 단 한 건의 신고건수만 늘거나 줄어도 그 값이 크게 변동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표 3-B〉 2008년도 주거침입강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 (사건 기준) 비교

단위 : %

| 신고율 가중치부여 | 추정범죄처리율 | 피해조사신고율 | 추정신고접수율* |
|--------------|---------|----------------------|--------------------|
| 비가중치 | 9.7 | 66.7 ^{1)주의} | 14.5 ^{주의} |
| 가구가중치부여 | | 67.8 ^{2)주의} | 14.3 ^{주의} |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 × 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주거침입강도 피해사례 3건 중 2건(66.7%)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 주의 : 극소사례에서 계산된 피해율 혹은 그 피해율에 근거한 계산치이므로 매우 불안정할 수도 있음.

그에 따라 이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추정신고접수율을 역시 매우 불안정한 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강도범죄의 피해자신고율이 상식적으로도 높을 것이란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절도범죄의 피해자신고율(33.8%)보다 높을 것이란 추측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67.8%(가중치)라는 수치가 아주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보기도 어렵기는 하다.

아무튼 비록 불안정한 수치이기는 하나, 이 수치와 추정범죄처리율을 이용하여 추정 신고접수율을 계산해보면, 14.3%가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인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1.3%)보다야 높기는 하지만, 주거침입절도의 추정범죄처리율(25.4%)보다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 뒤에서 살펴볼 대인강도의 추정범죄처리율(15.9%)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심각한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주거침입강도의 신고접수처리율이 침입절도범죄보다 낮은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주거침입강도범죄가 극단 사례에 가까운 희소사례였다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신고율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 공식범죄통계 내에서의 주거침입강도범죄 계산치가 불안정했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오차 요인에 의해 발생된 '그릇된 결과'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게 될 또 다른 요인들까지 고려해볼 경우, 위와 같은 추정들이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 추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2) 대인강도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대인강도는 '주거침입'(미수포함)이 아니면서³²⁾ '재산탈취 피해'(미수포함)를 당하고 '재산탈취의 강제성 또는 폭력성'(강제성 또는 폭행 여부)이 수반되었을 때 그 피해 해당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109). 강도범죄에는 절도범죄처럼 이외의 복잡한 형태의 강도범죄 유형이 많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인강도는 대체로 전체 강도범죄에서 침입강도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강도범죄들이 거의 대부분 대인강도범죄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인강도범죄의 범죄암수를 추정하는 것은 대인절도의 경우보다 상대적

32) 혹은 '발생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발생지역'을 잘 모를 경우, 그것은 적어도 범죄발생장소가 '자기집'은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으로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다.

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대인강도범죄 피해건수는 전체 표본 10,671명 중 28건이다. 피해자수는 28명으로 1년 사이의 2건 이상의 대인강도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인강도범죄의 피해율은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하든 피해인원을 기준으로 하든 똑같게 나온다. 즉 그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62.4건 혹은 262.4명이다. 한편, 공식범죄통계상에서 대인강도범죄는 침입강도와 강도강간³³⁾을 뺀 나머지 강도범죄건수로 그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럴 경우, 공식범죄통계상 대인강도 발생기록건수는 3,095건³⁴⁾으로 계산된다. 이를 토대로, 비례식을 이용해 공식통계상 대인강도 피해자수를 계산하면 대략 3,018명³⁵⁾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비교표 4-A〉 2008년도 대인강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건수기준 | 262.4건 ¹⁾ | 6.4건 ²⁾ | 41.0배 | 2.4% |
| 피해자수기준 | 262.4명 ³⁾ | 6.3명 ⁴⁾ | 41.7배 | 2.4% |
|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 1.00 | 1.02 | |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대인강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대인강도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8 \div 10,671) \times 100,000$. 2) $(3,095 \div 48,606,787) \times 100,000$, 48,606,787은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3) $(28 \div 10,671) \times 100,000$.

4) $(3,018 \div 48,606,787) \times 100,000$, 3,018은 공식통계상 피해자수 등을 통해 추정.

33) 강도강간이 주로 주거침입강도에서 돌변하여 발생된 사건이라는 가정하에 제외한 것이다. 물론 주거침입강도와 연관되지 않는 강도강간도 있을 수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공식통계(『범죄분석』)에 제시된 자료에서 강도강간이 주거침입강도와 연관되는 강도강간과 그렇지 않은 강도강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리고 2008년도 공식통계상 강도강간범죄건수는 총 45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고 해서 범죄율 계산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도 않는다. 참고로,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강도강간범죄(판별조합에 의해 그 수를 계산해 낼 수 있음)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범죄통계에서 45건밖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도 그럴 것이다. 강도강간범죄가 공식통계의 수치(45건)보다 100배가 더 많은 경우(4,500건)라고 하더라도 표본수가 10,000명인 피해조사에서 강도강간범죄는 평균적으로 1건밖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범죄압수가 공식통계의 10배인 경우엔, 100,000사례가 있어야 1건이 포착된다. 필자의 추측으로, 표본수가 대략 50,000사례 이상이기 전에는 강도강간범죄가 포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34) 공식통계상 전체 강도범죄건수 4,827건에서 침입강도 1,687건과 강도강간 45건을 뺀 수치이다. 이 수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다. 즉, 노상강도(855건)+차내강도(48건)+해상강도(0건)+차량이용강도(61건)+약취강도(85건)+마취강도(129건)+인질강도(0건)+기타강도(1,917건)=3,095건이다.

35) 비례식(2008년 전체강도범죄건수 4,827 : 2008년 대인강도범죄건수 3,095 = 2008년 전체강도범죄 피해자수 4,708 : X)을 이용한 것이다(대검찰청, 2009 : 156, 170 자료 근거 산출).

〈비교표 4-A〉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강도범죄의 피해조사상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62.4건, 공식범죄통계상의 대인강도범죄 발생기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4건으로 계산된다. 이는 범죄암수를 포함한 실제 대인강도범죄 사건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된 대인강도범죄 사건보다 41.0배가 많다는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추정범죄처리율을 2.4%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대인강도범죄 사건 중에서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는 비율이 2.4%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인절도범죄의 추정범죄처리율(1.3%)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긴 하다. 적어도 이 둘 사이의 관계는—대인절도범죄의 범죄암수가 대인강도범죄의 암수보다 대체로 클 것이라는 상식으로 볼 때—상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대인강도범죄의 범죄암수추정치—적어도 다른 범죄유형의 범죄암수추정치들에 비해서는—비교적 정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추정치에 대비한 대인절도범죄 암수추정 역시 그다지 큰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보기도 한다.

아무튼 위의 산출값들을 토대로 다음 〈비교표 4-B〉에서는 대인강도범죄의 추정신고접수율을 계산해 보았다. 추정신고접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자료와 함께 피해자 신고율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대인강도 피해 사례 28건 중 5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신고율이 17.9%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고 난 다음 다시 계산하면, 15.1%가 된다.

〈비교표 4-B〉 2008년도 대인강도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사건기준) 비교
단위 : %

| 가중치부여 여부 | 추정범죄처리율 | 피해조사신고율 | 추정신고접수율* |
|----------|---------|--------------------|----------|
| 비가중치 | 2.4 | 17.9 ¹⁾ | 13.4 |
| 가구원가중치부여 | | 15.1 ²⁾ | 15.9 |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 ×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대인강도 피해사례 28건 중 5건(17.9%)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이 때, 추정신고접수율은 15.9%(가구원가중치 피해자신고율 이용시)로 계산된다. 즉 다시 말해, 피해자가 대인강도범죄를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이를 공식적인 사건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대략 15.9%에 가깝다는 말이다. 이 수치는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강도

범죄의 경우(14.3%)와 비슷하거나 약간 크고, 대인절도범죄의 경우(11.1%)보다는 비교적 크며, 주거침입절도범죄의 경우(25.4%)보다는 꽤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성폭력범죄와 신체상해범죄

1) 성폭력범죄(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범죄암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률명에 성폭력범죄라는 것은 없고, 공식범죄통계에서도 그와 같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강간’이라는 법률명과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이라는 범주가 있기는 하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는 대체로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 범주에 해당되고,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합친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법률상의 강간죄와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이라는 범주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공식통계상의 강간 범주가 법률상의 강간죄를 포함하고도 남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법률상의 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것이지만,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범죄는 강제추행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점을 알지 못하고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범죄 통계치를 모두 ‘전형적인 강간’ 사건으로 간주할 경우엔 매우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강간’ 사건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8년도 공식범죄통계에서의 강간 범주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8장 제297조에서 제309조까지)가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만, 동법 제23조, 제25조, 제31조 위반 제외),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을 포함(대검찰청, 2009 : 일러두기 항목 참조)하고 있다. 다른 모든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범죄통계상 강간범주에는 미수·방조·예비·음모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강간범죄는 강간위협 및 강간, 그리고 강간미수가 모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강제추행은 대체로 형법상의 강제추행(미수포함)과 일치³⁶⁾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조사에서 강간범죄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건수는 1명

36) 어찌보면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일 수도 있다. 즉 상대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추행피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 각 1건으로 총 2건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한편, 강제추행 피해자는 25명이고, 피해건수는 25건으로 역시 1인당 1건씩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25명 중 24명은 여성이었고, 나머지 1명은 남성이었다. 표본이 2,000사례 정도였던 과거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전형적인 강간’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는데(5차례의 피해조사에서 사실상 매번 거의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음), 이번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표본수가 1만 명이 넘다보니 ‘전형적인 강간’ 사건이 무려(?) 2건이나 포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 5,000명 중의 한 명 꼴 혹은 여성 인구 2,500명 중의 한 명 꼴³⁷⁾이니 남녀합산 2,000사례 표본에서 강간범죄가 포착되지 않아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만하다. 표본의 확대로, ‘전형적인 강간’이라는 희귀 사례가 포착되었으니 이를 공식통계 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암수를 추정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공식범죄통계상 강간범죄(강제추행을 포함한 광의의 강간범죄)에는 ‘전형적인 강간범죄’를 따로 구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은 범죄 피해조사상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합쳐서 ‘성폭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 범주와 비교하여 그 범죄암수를 추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범죄통계에서 ‘전형적인 강간’을 공식적으로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조사의 강간범죄 피해율을 공식통계상의 ‘전형적인 강간’과 비교하여 그 범죄암수를 추정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형적인 강간사건’에서는 ‘상해피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공식범죄발생통계인 『범죄분석』에는 각 범죄피해자들의 상해자수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강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상해를 입은 경우엔 ‘전형적인 강간’에 해당될 확률이 꽤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전형적인 강간’ 사건의 범죄암수를 위 성폭력범죄와 함께 차례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넓은 의미의 성폭력범죄의 범죄암수를 추정해 보겠다. 단, 조사표본에서든 공식통계에서는 성폭력범죄에는 남성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물론 매우 소수임), 본고에서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심은 여성피해

37) 혹시라도 피해조사에서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수 자체가 축소되어 있을 경우 이 보다는 높은 피해율로 계산될 것이긴 하다. 사회통념상, 특히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강간범죄 피해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범죄피해조사에서조차도 응답하지 않을 개연성이 아주 없다고만은 하지 못할 것이다.

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암수를 추정하려면, 범죄율이나 범죄피해율을 계산할 때 분모로 사용하는 값은 당연히 여성 인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비교표 5-A>를 보면,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 인구 10만 명 당 467.7명(여성 표본수 5,559명 중 여성 성폭력 피해자 26명)으로 계산된다. 이에 비해, 공식통계에서는 여성 인구 10만 명 당 58.3명³⁸⁾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 중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율을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발생률’로 간주할 경우, 이는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된 성폭력범죄(공식통계상 명칭은 ‘강간’)의 8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폭력 범죄 피해여성 중 8명 중 1명의 경우에만 공식범죄통계로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추정범죄처리율이 12.5%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비교표 5-A> 2008년도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건수기준 | 여성 | 467.7건 ¹⁾ | 58.9건 ²⁾ | 7.9배 | 12.6% |
| | (전체) | (253.0건) ³⁾ | (31.1건) ⁴⁾ | (8.1배) | (12.3%) |
| 피해자수기준 | 여성 | 467.7명 ⁵⁾ | 58.3명 ⁶⁾ | 8.0배 | 12.5% |
| | (전체) | (253.0명) ⁷⁾ | (30.7명) ⁸⁾ | (8.2배) | (12.1%) |
| 여성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 | 1.00 | 1.01 | |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성폭력(강간+강제추행)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강간범죄 입력·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6 \div 5,559) \times 100,000$.

2) $(14,259 \div 24,190,904) \times 100,000$, 24,190,904는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중 여성인구.

3) $(27 \div 10,671) \times 100,000$.

4) $(15,094 \div 48,606,787) \times 100,000$, 15,094는 2008년도 공식통계 전체 강간범죄건수.

5) $(26 \div 5,559) \times 100,000$.

6) $(14,094 \div 24,190,904) \times 100,000$, 14,094는 공식통계 강간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수.

7) $(27 \div 10,671) \times 100,000$.

8) $(14,919 \div 48,606,787) \times 100,000$, 14,919는 공식통계 강간범죄 전체 피해자수.

다음 <비교표 5-B>를 볼 경우,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여성 성폭력범죄 피해 사례 26건 중 3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신고율이 11.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고 난 다음 다시 계산하면, 피해자신고율은 16.1%가 된다.

38) 2008년도 전체 여성인구(연앙추계인구 중 여성인구) 24,190,904명 중 공식통계상 여성 성폭력(공식통계분류상의 ‘강간’)피해자수 14,094명(대검찰청, 2009 : 171 참조)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다소 놀랍게도, 이 경우엔 피해자신고율(가중치 기준 16.1%)이 추정범죄처리율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계산되는 추정신고접수율은 77.6%에 달한다.

〈비교표 5-B〉 2008년도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 (여성기준)

단위 : %

| 가중치부여 여부 | 추정범죄처리율 | 피해조사신고율 | 추정신고접수율* |
|----------|---------|--------------------|----------|
| 비가중치 | 12.5 | 11.5 ¹⁾ | 108.7 |
| 가구원가중치부여 | | 16.1 ²⁾ | 77.6 |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 ×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여성대상 성폭력(강간+강제추행) 피해사례 26건 중 3건(11.5%)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형적인 강간범죄’의 암수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공식통계 내의 ‘강간’(실은 강간+강제추행 등) 피해자 중 상해피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수인 930명이란 수치(대검찰청, 2009 : 226)를 근거로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추정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 수치가 과연 공식통계 내에서 ‘전형적인 강간’범죄 피해자와 대략적으로라도 일치한다는 다른 근거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그 근거는 바로 범죄피해조사에서의 ‘강간(전형적인 강간)피해자수와 여성 ‘강제추행’피해자수 사이의 비율을 토대로 한 계산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08년도 피해조사에서 여성 강간 피해자수는 2명(A)이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24명(B)이며, 그 비율(A/B×100)은 8.3%이다. 공식범죄통계에서 ‘강간’피해자(넓은 의미의 강간)이면서 동시에 상해피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전형적인 강간’피해자(C)라고 간주할 경우, 전체 여성 강간(광의의 강간)피해자 중에서 이를 제외하고 남는 피해자들(D)의 수는 13,164명³⁹⁾이 되며, 양자간의 비율(C/D×100)은 7.1%가 된다. 놀랍게도, 두 비율은 거의 유사하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조사상 강간범죄(전형적 강간) 여성 피해자의 상대적 비중과 공식범죄통계상 ‘강간(광의의 강간)피해자 중 상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상대적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는 930명이라는 수치가 공식통계 내 실제 ‘전형적 강간’피해 여성의

39) 공식통계 내 전체 여성 강간(사실상의 성폭력) 피해자수 14,094명 중에서 위의 930명을 뺀 수치이다.

수와 유사한 수치일 것이란 가정에 힘을 보탬 수 있다고 판단된다.⁴⁰⁾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비교표 5-A-1>을 보면,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여성 강간 피해율은 여성 인구 10만 명 당 36.0명으로 계산되고, 공식범죄통계에서의 여성 대상 강간(전형적 강간) 범죄율은 여성 인구 10만 명 당 3.8명으로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조사의 피해율을 실제 '전형적 강간'범죄의 피해율로 간주할 경우, 범죄암수를 포함한 실제 범죄는 공식범죄통계상에 기록된 '전형적 강간' 사건의 9.5배라고 할 수 있으며, 추정범죄처리율은 10.6%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추정범죄처리율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의 추정범죄처리율(12.5%)보다 조금 작은 비율이기는 하나, 대체로 그와 유사한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 성폭력범죄의 범죄암수비율과 전형적인 강간 사건의 범죄암수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나, 전형적 강간범죄의 암수가 약간 더 크다는 뜻이다.

<비교표 5-A-1> 2008년도 강간범죄(전형적 강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자수기준 | 36.0명 ¹⁾ | 3.8명 ²⁾ | 9.5배 | 10.6%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강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강간'피해자 중 상해자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 \div 5,559) \times 100,000$.

2) $(930 \div 24,190,904) \times 100,000$, 24,190,904는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중 여성인구.

앞의 <비교표 5-A>와 <비교표 5-A-1>을 보았다면, '순수한 강제추행범죄'만을 다룬 다음 <비교표 5-A-2>의 내용은 이미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할 것이다.

<비교표 5-A-2> 2008년도 강제추행범죄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자수기준 | 431.7명 ¹⁾ | 54.4명 ²⁾ | 7.9배 | 12.6%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강간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강간'피해자 중 상해자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4 \div 5,559) \times 100,000$.

2) $(13,164 \div 24,190,904) \times 100,000$, 24,190,904는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 중 여성인구.

40) 더 나아가 이를 통해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가 모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한 표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표 5-A-2〉의 나타난 수치는—〈비교표 5-A〉의 경우, 강제추행범죄피해자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대체로 〈비교표 5-A〉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형적인 강간’범죄와 ‘순수한 강제추행’범죄를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비교표 5-A-1〉과 〈비교표 5-A-2〉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긴 하다.

2) 신체상해범죄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의미의 폭력범죄에 관해 2008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단순폭행’과 ‘심한폭행’, ‘협박·괴롭힘’피해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오로지 ‘심한폭행’의 범죄암수만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말한 바와 같다. 혹시라도 ‘단순폭행’의 경우, 비교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 포착된 단순폭행은 도저히 공식통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참고로, ‘원보고서’(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에는 ‘단순폭행’과 ‘심한폭행’이 ‘폭행·상해’로 합산되어 계산되어 있다. 그 합산치는 총 41명(43건)이다. 그런데, 이 41명의 폭행·상해 피해자를 ‘단순폭행’과 ‘심한폭행’으로 분할해 보면, ‘단순폭행’피해자가 21명(23건)이고, ‘심한폭행’피해자가 22명(22건)이 나온다. 두 범죄의 피해자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이며, ‘심한폭행’피해자가 더 많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사실상 이는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심한폭행’이 ‘단순폭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엉뚱한 결과가 범죄피해조사에서 발생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추정컨대 아마도 ‘폭행’ 개념이 고무줄과 같이 쉽게 늘고 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단순폭행’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폭행’으로 인식하지조차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그 폭행의 가해자가 ‘이 사람’일 경우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무튼 ‘심한폭행’이 22명이 발견되었는데, ‘단순폭행’이 21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폭행’피해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만하다.

그렇다면,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 ‘심한폭행’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 가장 중요한 판별기준은 폭행에 의한 신체피해여부이다(앞의 문헌 : 109).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총기에 의한 부상”, “뼈나 이빨이 금가거나 부러짐(신체골절)”, “장기 손상을 입음”, “기절함(의식불명)”,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활취거나 긁힘”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신체피

해라도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만하다. 한편, 범죄피해조사에서 ‘심한폭행’이 위와 같이 규정되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언뜻 생각하면, ‘상해범죄’와 일치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상해범죄에는 상해미수 역시 상당수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조사에서처럼 실제적인 신체피해가 있는 경우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체피해가 확인된 상해범죄만을 추려내어 비교하면 어떨까?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신체피해가 발생한 폭력범죄는 상해범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죄(이하 폭처법)에 의해 처벌되기도 하며, 두 가지가 정합될 경우에도 공식통계에서는 ‘폭처법’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심한폭행’에 대응되는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는 ‘상해범죄’ 중 ‘신체폭력’이 발생한 범죄와 ‘폭처법’ 중 ‘신체폭력’이 발생한 범죄의 합산으로 계산해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인 대검찰청 『범죄분석』에는 “신체피해 상황”에 대한 통계(대검찰청, 2009 : 226)와 “신체피해(상해) 정도”에 관한 통계(앞의 문헌 : 227)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통계에서 상해자(사건)의 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 차이가 꽤 크기까지 하다는 것이다⁴¹⁾. 이 두 통계치 중 어떤 통계치를 사용해야 할까? 필자의 판단으로, 전자의 경우는 좀 더 범위가 넓은 신체피해를 포괄한 수치이고, 후자의 경우는 “진단서를 땀 정도(실제로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의 상해피해”의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심한폭행’피해는 사실상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후자와 비교되어야 한다고 판단⁴²⁾한다.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다음 <비교표 6-A>를 보기로 하자. 표에서 범죄피해조사상의 ‘심한폭행’범죄 피해율은 인구 10만 명 당 206.2명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응하는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는 인구 10만 명 당 57.7명으로 계산됨을 볼 수 있다. 인구 10만 명 당 57.7명이라는 수치는 28,027명이라는 수치를 2008년도 연앙추계인구로 나눈 뒤 10만

41) 『2009범죄분석』의 “신체피해 상황” 통계에서는 상해피해자 중 38,449명이 신체피해를 입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데 비해, “신체피해(상해) 정도” 통계에서는 상해피해자 중 20,396명이 상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양 수치간의 차이가 무시못할 정도로 크다(앞의 문헌 : 226-227).

42) 필자는 이 두 가지 통계를 모두 이용하여 ‘심한폭행’의 범죄암수를 추정해 보았는데, 전자의 통계(“신체피해 상황”통계)를 사용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즉 그 경우엔 추정신고접수율이 100%를 상회하는 130% 정도로 계산된다. 이는 10건을 신고하면, 13건이 접수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 난센스이다.

을 곱한 것인데, 여기서 28,027이라는 수치가 바로 공식통계 내 ‘상해범죄’ 피해자 중 ‘전치2주 이하’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수(20,396명)와 ‘폭처법’ 피해자 중 ‘전치2주 이하’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수(7,631명)를 합친 수치이다.

〈비교표 6-A〉 2008년도 상해범죄(실질상해)의 조사피해율과 공식범죄율 비교

| 구분 | A범죄피해율* | B공식발생률** | A/B | 추정범죄처리율*** |
|--------------|---------|----------|------|------------|
| 피해건수기준 | 206.2건 | 62.7건 | 3.3배 | 30.4 |
| 피해자수기준 | 206.2명 | 57.7명 | 3.6배 | 28.0 |
| 1인 당 평균 피해건수 | 1.00 | 1.09 | | |

* 2008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신체상해 피해 기준.

** 2008년도 공식통계상 상해·특가법 중 실질상해 계산치 기준.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전체 실제 발생 범죄 중에서 범죄통계로 공식 기록되는 범죄의 비율 추정.

1) $(22 \div 10,671) \times 100,000$.

2) $(30,461 \div 48,606,787) \times 100,000$, 30,461은 아래 28,027 등을 토대로 추정해낸 값.

3) $(22 \div 10,671) \times 100,000$.

4) $(28,027 \div 48,606,787) \times 100,000$, 28,027은 상해죄내 실질상해자수+폭처법내 실질상해자수.

아무튼 이 계산치들을 토대로 범죄피해율을 공식발생률로 나누면,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심한폭행’범죄가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된 해당 범죄의 3.6배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동시에 이 경우 추정범죄처리율은 28.0%가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어떤 추정범죄처리율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즉, 가장 작은 범죄암수⁴³⁾)이다. 이는 비교적 심각한 내용의 특정 범죄들만의 암수추정을 할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여기에 단순폭행이 포함되었다면, 추정범죄처리율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동시에 상해범죄가 갖는 또 다른 특성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표 6-B〉를 볼 경우,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심한폭행’ 피해 사례 22건 중 7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신고율이 31.8%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하고 난 다음 다시 계산하면, 30.3%가 된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 어떤 범죄유형의 경우보다는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 사이의 간극이 좁다. 그에 따라, 추정신고접수율은 무려 92.4%(가구원가중치 피해자신고율 적용)에 달하고 있다.

43) 꽤 심각한 상해범죄임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범죄암수율이 결코 낮은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비교표 6-B〉 2008년도 상해범죄(실질상해)의 추정범죄처리율과 피해조사신고율
(사건 기준) 비교**

단위 : %

| 가중치부여 여부 | 추정범죄처리율 | 피해조사신고율 | 추정신고접수율* |
|----------|---------|--------------------|----------|
| 비가중치 | 28.0 | 31.8 ¹⁾ | 88.1 |
| 가구원가중치부여 | | 30.3 ²⁾ | 92.4 |

* 신고된 사건 중에서 경찰에 의해 공식 접수되는 사건의 비율 추정. 추정범죄처리율/피해조사신고율 ×100.

1)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 신체상해 피해사례 22건 중 7건(31.8%)이 신고됨.

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재계산되는 피해자신고율.

즉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신고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공식통계로 접수된다는 의미이다. 이 역시 '사건의 심각성'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일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동시에 그와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함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V. 종합비교 및 범죄암수추정치의 현실 적합성 검토

지금까지 각각의 범죄유형들에 대한 범죄암수추정을 따로 자세히 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들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추정의 결과가 어느 정도 현실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 〈비교표 7〉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범죄유형들의 범죄암수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차이에서는 어떤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기까지 하다고 할만하다. 표 내에서 범죄암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단연 대인절도범죄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인강도범죄이다. 나머지 범죄들은 이 두 유형의 범죄만큼 범죄암수 비율이 높지 않은데,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성폭력범죄, 심각한폭행의 순으로 범죄암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비교표 7〉 각 범죄유형의 추정범죄암수 · 피해자신고율 · 추정신고접수율 등에 대한 종합비교

단위 : %

| 구분 | 추정 범죄 암수율 | 추정 범죄 처리율 | 피해자 신고율 | 추정 신고 접수율 | 피해자 사건처리 인지율* | 공식 범죄내 신고사건 비율** | 공식 범죄내 고소사건 비율*** | 공식 범죄내 가해자 기지 비율**** | 공식 범죄내 검거율***** |
|--------|-----------|-----------|--------------------|--------------------|--------------------|------------------|-------------------|----------------------|-----------------|
| 주거침입절도 | 91.4 | 8.6 | 33.8 | 25.4 | 47.4 | 77.0 | 1.5 | 19.6(7.7) | 50.9 |
| 대인절도 | 98.7 | 1.3 | 11.7 | 11.1 | 25.1 | | | | |
| 주거침입강도 | 90.3 | 9.7 | 67.8 ^{주의} | 14.3 ^{주의} | 50.0 ^{주의} | 69.7 | 1.5 | 16.3(14.1) | 85.6 |
| 대인강도 | 97.6 | 2.4 | 15.1 | 15.9 | 24.4 | | | | |
| 성폭력 | 87.5 | 12.5 | 16.1 | 77.6 | 33.3 ^{주의} | 84.1 | 19.1 | 23.9(21.4) | 89.9 |
| 심각한폭행 | 72.0 | 28.0 | 30.3 | 92.4 | 76.3 | 95.8 | 16.2 | 41.9(41.9) | 96.5 |

* 2008년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 "(경찰은) 당신에게 신고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

** 공식범죄통계에서 "미신고"범주를 제외한 신고사건들(대검찰청, 2009 : 160-161. 참조)의 비중.

*** 공식범죄통계에서 수사단서가 "고소"와 "고발"인 사건들(앞의 문헌 같은 쪽 참조)의 비중.

**** 공식범죄통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가 "타인", 그리고 "미상"이 아닌 경우(앞의 문헌 :314-315. 참조)의 비중. 괄호 안의 수치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계산(재추정)해낸 수치임.

***** 공식범죄통계에서 제시된 검거율. 이는 경찰에 의해 "공식접수된 사건" 중 검거된 사건의 비율일수밖에 없음.

※ 주의 : 극소사례에서 계산된 값 또는 그 값에 근거한 계산치이므로 매우 불안정할 수도 있음.

이러한 순위는 대체로 범죄 내용의 심각성에 어느 정도 비례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위 범죄들 중에서는 심각한폭행의 경우가 평균 수준에서는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심각한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일 경우 혹은 단순폭행과 심각한폭행이 합산되어 범죄암수가 추정되었을 경우엔, 범죄암수율이 위 표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아졌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오로지 심각한 내용(흉기 등에 의한 상해)의 폭력범죄만을 뽑아냈기에 범죄암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추정범죄처리율이 높고), 신고율도 높고, 신고접수처리율도 높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언뜻 보아도, 절도범죄에 비해 강도범죄의 범죄암수율이 낮다는 점, 절도범죄와 강도범죄를 세분화할 경우 범죄암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범죄가 주거침입강도, 그 다음이 주거침입절도, 대인강도, 대인절도 순이었다는 점도 대체로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동시에 침입강절도와 대인강절도 사이의 암수율 차이가 큰 것 역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다.

각 범죄유형들의 피해자신고율의 경우, 일단 그 자체로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들이 엿보인다. 즉,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심각한폭행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인절도, 대인강도, 성폭력범죄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 역시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신고율이 불안정하게 측정된 주거침입강도의 경우를 제외할 경우, 범죄피해조사에서의 피해자신고율은 추정범죄처리율과 일정 정도 비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는 범죄암수추정 결과가 어느 정도 현실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단, 그러한 대략적 비례관계가 깔끔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단 각 범죄유형별로 신고접수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추정신고접수율 역시 범죄의 심각성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강절도범죄에 비해 성폭력과 심각한폭행범죄의 경우 추정신고접수율이 유난히 높은 것이 그러한 비례의 성격을 많이 일그러뜨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와 같은 현상에는 어떤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즉 범죄의 심각성 요인 말고도, 신고접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요인들 중에는 해당범죄들의 고소고발 비중이 포함될 수 있다. 각 범죄유형들의 고소고발 비율을 볼 경우, 강도와 절도는 그 비중이 1.5%로 대단히 낮은 데 비해, 성폭력과 상해범죄 일반의 경우엔 고소고발의 비중이 높고 특히 강절도범죄에 비할 경우 10배 이상 높다. 이 비율의 차이는 신고접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 신고와 고소고발은 현격히 다른 종류의 신고이기 때문이다. 단순 신고는 사건에 경중에 따라 경찰이 접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의 여지가 크지만, 고소고발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협의가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재량이 매우 적다고 할만하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비중이 높은 범죄는 그에 비례하여 그렇지 못한 범죄에 비해 신고접수율이 크게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와 상해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광의의 신고'에 의해 인지되는 비율이 거의 100% 혹은 90%에 근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절도와 이들 범죄의 고소고발 비중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강도절도 이들 범죄 사이의 신고접수율 차이가 더 커지게 될 개연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라고 하겠다. 한편, 필자는 앞부분에서 특정 범죄가 오로지 신고에 의해서만 인지되고 그 신고가 모두 경찰에 의해 접수될 경우 피해자신고율은 범죄처리율에 근접하거나 같아진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위 표에서 성폭력범죄와 심각한폭행의 경우가 그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만하며, 특히 심각한폭행의 경

우에 그렇다. 심각한폭행의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광의의 신고'에 의한 인지 비율이 100%에 가까운데, 동시에 피해자신고율과 추정범죄처리율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

성폭력범죄와 심각한 상해범죄의 신고접수율이 강절도보다 월등히 높아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 체포의 용이성'이다. 경찰이 범죄 신고접수를 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그 첫째가 사건내용의 경중이고, 그 다음이 범인의 체포 가능성이다(탁종연, 2006). 특히 경찰에서 '검거실적'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 체포 가능성이 적은 범죄는 공식적인 신고접수를 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성폭력범죄와 상해범죄는 적어도 강절도범죄에 비해서는 가해자 체포 확률 또는 체포 용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강절도 용의자 체포가 특히 어려운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성폭력범죄와 상해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그나마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위 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의 비중이 높고 낮은 것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가해자 체포가 쉬울 수밖에 없는데⁴⁴⁾, 위 표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의 비중이 높은 순서는 상해, 성폭력, 강도, 절도의 순이다. 그리고 이 순서는 본고에서 추정한 신고접수율 순위와 거의 같은 순서이기도 하다. 동시에 그것은 검거율 순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행한 범죄암수추정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범죄암수추정치에서 도출된 추정신고접수율이 얼마나 현실 적합한지를 어느 정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위 표에 제시한 추정신고접수율이 일정 정도는 타당성이 있으며 최소한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추정신고접수율의 현실 적합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위 표에 나타난 '피해자 사건 처리 인지율'이란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피해자 사건 처리 인지율'은 필자가 명명한 개념으로, 이 개념의 내용은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어느 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

44)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도, 성폭력이나 상해범죄가 강절도범죄보다는 가해자 체포에 유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상해범죄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순간에 서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면할 수밖에 없는 범죄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할 확률 자체가 매우 낮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도주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복면을 쓰는 강도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는 스트리트범죄 중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절도범죄의 범죄암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대로 구성된 것이다. 그 문항은 “(경찰이) 당신에게 신고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까?”라는 질문(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 525)이고, ‘피해자 사건 처리 인지율’은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정의한 것이다. 이 비율은 그 자체로 신고접수율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공식통계에 정식으로 신고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적고, 신고자에 끝까지 이에 관심을 갖는 경우 역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신고접수율과 관련될 수 있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개념과 추정신고접수율이 어느 정도 비례하기만 해도 추산한 신고접수율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 표를 보면, 특별히 사례가 적어서 비율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들을 제외할 경우 ‘피해자 사건 처리 인지율’과 ‘추정신고접수율’이 상당한 정도로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도범죄의 ‘추정신고접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짓고자 한다. 위 표를 볼 때, 상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강도범죄의 ‘추정신고접수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강도범죄는 절도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높고 그에 따라 절도범죄보다 보다 피고자신고율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큼 ‘추정신고접수율’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는 본고에서의 강도범죄 압수추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일까? 물론 전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검거율’과 관련해 설명해 낼 수 있다. 공식범죄통계상에서의 ‘검거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지 ‘범인 체포율 혹은 체포 능력’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각 범죄유형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범인 체포의 난이도’는 다르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인체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상대적으로 수사단서가 많은 범죄), 범인체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상대적으로 수사단서가 많은 범죄) 사이의 검거율은 달라질 것이기도 하다. 위 표에서 검거율이 높은 순서가 심각한폭행, 성폭력, 강도, 절도 순인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난이도에 비례하는 것이긴 하다. 그런데, 위 표에 나타난 강도범죄의 검거율은 기본적인 ‘범인 체포 난이도’에 비해 높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즉 그 검거율이 성폭력범죄보다 낮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절도범죄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강도범죄의 경우 절도범죄보다 수사단서가 상대

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의 상대적 심각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범인을 검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도범죄의 검거율이 절도범죄의 검거율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범죄의 '범인 체포 난이도'가 절도범죄의 그것보다 높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며, 강도사건으로 신고된 사건들 중 거의 대부분에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위 표에 나타난 강도범죄의 검거율은 이 범죄의 기본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이 지점에서 공식범죄통계상의 '검거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공식통계는 범죄암수가 제외된 범죄들의 집합이다. 이에 따라서 공식통계에 제시되는 '검거율' 역시 오로지 순수한 의미의 범인 체포 능력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공식범죄통계에서 표현되는 '검거율'은 '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건' 중에서 '범인이 체포된 사건'의 비율을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범인을 많이 체포해도 검거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사건을 덜 인지해도 검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범죄 인지 혹은 공식통계상 기록되는 범죄의 비중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등의 신고이고, 그에 못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들 신고를 경찰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일에 속하나 후자는 경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검거율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경찰이 범인 체포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들만 주로 접수하고 나머지 사건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면 공식범죄통계상의 검거율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경찰이 범죄 체포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신고를 공식화한다면 공식통계상의 검거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강도범죄의 검거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 강도범죄의 추정신고접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2008년도 공식범죄통계 자료와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로 20년 만에 '범죄암수추정'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2008년도의 경우 침입절도범죄는 실제 사건의 8.6%, 침입강도범죄는 9.7%, 대인절도범죄는 1.3%, 대인강도범죄는 2.4%, 성폭력

범죄(공식통계상의 강간)는 12.5%(전형적인 강간사건은 10.6%, 강제추행은 12.6%), 심각한상해범죄는 28.0%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가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의 앞부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추정 과정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부정확성과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본고에서의 최종 추정치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시도한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왔던 그 어떤 범죄피해조사 자료보다도 월등히 양호한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전형적인 강간'사건의 범죄암수 추정은 본고에서 활용한 2008년 범죄피해조사의 표본수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형적인 강간범죄'는 대략 여성인구 2,500명 중 한 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율은 왜 이전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전형적인 강간범죄'가 전혀 혹은 거의 포착되지 않아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이전 조사에서의 여성 표본수는 보통 1,000명 이하였기 때문에, 우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형적인 강간범죄'가 좀처럼 표본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논의할 수 있는 본고의 의의는 '범죄암수추정'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아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고에서 추정한 범죄암수추정치들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장담하기 어렵지만, 본고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다.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추정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범죄피해조사 자료가 양호해야 하겠지만, 범죄피해조사 자료가 아무리 좋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그 어느 지점에서라도 심각한 오류로 귀결될 공산이 작지 않다. 그러한 오류의 가능성은 특히 여러 범죄들의 속성을 사전에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더 중요하게는 공식범죄통계의 속성과 분류방식을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범죄피해조사상 특정범죄의 범죄피해를 추정치가 제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정확히 맞대응하여 비교할 수 있는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내지 못하면 그 범죄에 대한 추정범죄암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암수를 추정할 때에는 공식범죄통계상의 각 범죄에 대한 정의와 분류방식 및 각 범죄가 포괄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⁵⁾. 본고에서 그에 관련한 작업 과정을 —그 누

가 재현하더라도 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최대한 상세히 보고한 것은 추정된 범죄암수율이라는 결과물보다도 그러한 최종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과 그 도출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설령 결과물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이 개선되면 향후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다. 센세이션으로 먹고 사는 기자들에게야 과정과 방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학자들에게는 결과보다 방법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범죄암수추정 결과의 적합성 혹은 타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검증하는 방법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해보기도 하였다. 범죄암수추정을 해놓고 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범죄암수추정은 사실상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것은 그저 ‘터무니없이 우기는 결과’와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조사상의 신고율과 공식통계상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 범죄암수추정 결과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사전지식 혹은 관련된 추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와 같은 타당성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본다. 그리고 이에 관한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암수추정 자체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그 해석상 유의점에 대해 간단한 언급을 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암수는 당연히 공식통계기록량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지 범죄암수가 공식통계량보다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범죄암수추정을 통해 공식범죄통계의 구조를 좀 더 잘 파악하고, 때때로 공식범죄통계가 은폐하고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는 범죄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상의 ‘강간’범죄통계만으로는 그 ‘강간’이라는 범주 내의 그 실질적인 구성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고, 그 때문에 범죄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이해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만한데, 대규모 표본의 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하면, 그 실제 구성을 범죄암수추정을 통해 파악해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만약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재원이란 늘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강

45) 하지만, 그 작업에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범죄발생통계인 『범죄분석』의 출간물의 과도한 소략성 때문이다. 사실, 소략한 것은 책자가 아니다. 그 통계의 원자료(raw data)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적어도 범죄학연구자들에게라도 그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앞으로 좀 더 획기적인 범죄암수추정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점 하나만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다.

간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불 강간피해의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와 같은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하면 필요한 재원을 과대 혹은 과소 산출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심각한 유형의 강간범죄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성폭력범죄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 내고, 그 각각의 범죄암수를 추정할 경우 특정한 범죄유형 피해지원에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의 한도를 좀 더 정교하게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된 범죄암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령 최대한 정확한 값에 근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유의해야 할 만한 점들이 많다. 특히 어떤 특정 범죄유형의 전체 범주 내의 범죄암수율을 가지고 그 유형 내부의 하위유형에까지 기계적으로 그 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범죄유형별로 범죄암수율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같은 범죄유형내에서도 사건 내용이 심각할수록 범죄암수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인절도범죄의 범죄암수율을 가지고 비례식을 이용하여 주거침입절도의 범죄암수를 기계적으로 산출할 경우엔, 우리나라는 사실상 주거침입전문절도범의 천국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각한폭행의 범죄암수율을 가지고 비교적 사소한 폭력의 암수를 함부로 유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비교적 사소한 폭력의 암수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폭력범죄의 경우엔 그 하위유형의 심각성이 높아도 특별히 범죄암수가 줄어들지 않는다(오히려 조금 늘기까지 했음)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통의 다른 범죄유형들은 같은 범죄유형 내에서도 사건 자체의 심각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가 높은 하위유형일수록 범죄암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성폭력의 경우엔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성폭력범죄피해자가 ‘수치심’ 및 ‘강간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무튼 개별 범죄의 독특한 속성들로 인해 좀 더 세분화된 판단을 해야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분화에 따라 범죄암수 역시—때때로는 매우 크게—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범죄암수추정 역시 종종 세분화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조사 표본의 규모와 공식범죄통계의 세분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갈 길은 생각보다 멀다.

참 고 문 헌

- 기광도, 2002,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개괄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5-19., 한국피해자학회.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 박정선 · 정병하 · 탁종연 · 황정인, 2009, 『백죄백서 및 범죄분석 효용성 제고를 위한 검찰 범죄통계업무 개선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 김준호 · 심영희 · 조정희, 1991,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이동원, 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09, 『2008범죄분석』 통권 제141호.
- 박순진, 1994, “범죄피해조사의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24호: 58-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2002, “범죄피해조사의 표집에 대한 재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21-38. 한국피해자학회.
- 박순진,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 107-127., 한국피해자학회.
- 박순진 · 최영신, 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현, 2002, “범죄피해조사 개선방안 — 자료수집방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65-80. 한국피해자학회.
- 심영희, 1990,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 149-1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김준호 · 최인섭 · 조정희 · 박정선, 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윤성은 · 박선미 · 조정희 · 김선영 · 강영수,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조정희, 1990,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 성폭력의 실태 및

-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 277-3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 1998,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수준 요인들의 지역조건적 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 85-1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순래, 2002,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사표의 문항구성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 39-63. 한국피해자학회.
- 장준오, 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기광도, 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황지태, 2004, “범죄피해율 감소 원인에 대한 검토 : 2002년도 범죄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 5-23., 한국피해자학회.
- 탁종연, 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겨울호 :59-80., 한국경찰연구학회.
- 황지태, 2002, 『총기강도 사건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2009a,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설명 : 범죄 감소의 직접적 요인 설명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 봄호): 280-3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2009b,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Adler, F., Mueller, G. & W. Laufer, 1991, *Criminology*. New York : McGraw-Hill, INC.
- Cohen, L. E. &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7.
- Garafalo, J., 1990, "The National Crime Survey, 1973-1986 : Strength and limitations of a Very Large Data Set", pp. 75-96 in *Measuring Crime*, edited by D. MacKenzie, P. Baunach & R. Roberg.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arafalo, J. & M. J. Hindelang, 199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Crime Surve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 Grabosky, P. N., 1989, *Victims of Violen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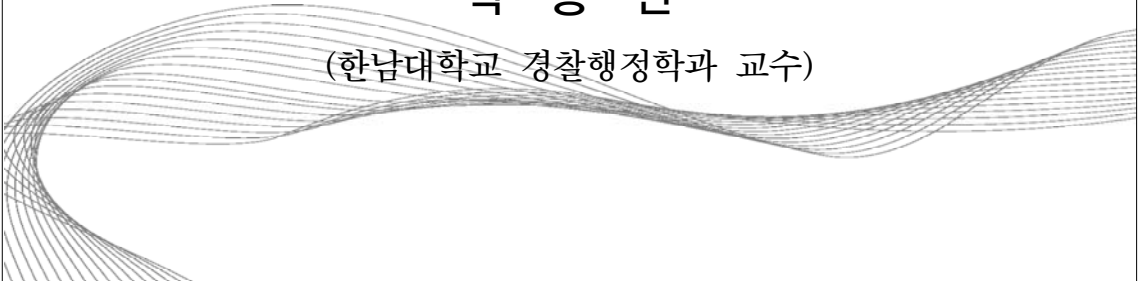
- Hagan, J., 1988, *Modern Criminology*, New York : McGraw-Hill, INC.
- Karmen, A., 1996,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O'Brien, R. M., 1985, *Crime and Victimization Data*, Beverly Hills, CA : Sage.
- Sanderson, J., 1994, *Criminology Textbook*, 6th edition, U.K. HLT Publications. 김형만 · 이동원 역, 2001, 『범죄학개론』, 제6판 한국어판. 청목출판사.
- Savitz, L. D., 1982, "Official Statistics", pp. 3-15 in *Contemporary Criminology*, edited by Savitz, L. & N. Johnson, 1982, Johnson Wiley & Sons Ins. New York.
- Skogan, W. G., 1981,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Victimiza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parks, R. F., 1981, "Surveys of Victimization : An Optimistic Assessment", in Michael Tonry & N. Morris [eds.] 1981, *Crime and Justice :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arks, R. F., Hazel, G. G. & D. Dodd, 1977, *Surveying Victims : A Study of the Measurement of Criminal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and Attitude to Criminal Justice*, John Wiley & Sons Inc.
- Sutherland, H. E., Cressey, D. R. & D. F. Luckenbill, 1992, *Principles of Criminology*, 11th edition. General Hall Inc. New York.
- Van Dijk, J. & C. Steinmetz, 1980, "The burden of crime in Dutch Society, 1973-1979", in Richard L. B., [eds.] *Coping with Burglary : Research Perspectives on Policy*, Kluwer-Nijhoff.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탁 종 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피해신고율 결정 요인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탁 종 연*

국문 초록

절도와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간편한 구제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들은 왜 범죄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내학계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재산범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피해신고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전면 개편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절도 459건과 사기 247건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구의 실증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가해자와의 인적관계가 멀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자인 경우 등에서 신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그간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의 이론적 논거로서 자주 사용된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에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주제어: 범죄피해신고, 범죄피해조사, 법의 행동이론, 사기, 절도.

Key words: police notification, behavior of law, fraud, theft, crime victimization survey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절도와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현실적인 대응책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가 특정한 후 최소 수백만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치르고 수년간의 재판과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기만 하면 누구의 조력 없이도 거의 즉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절도와 사기와 같은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112전화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¹⁾.

하지만 재산범죄 피해자 모두가 범죄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꺼리고 있다²⁾. 문제는 이런 신고포기 결정은 피해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민사적 배상의 길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마저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범죄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반복피해를 당할 위험까지 안게 된다. 지역사회의 다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신고를 통해 해당 범죄자를 검거했다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추가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신고포기 결정으로 인해 범인의 특징은 물론 범죄피해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한 명의 절도범이 한 지역을 거의 휘젓고 다니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절도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범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서구의 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연구해 온 결과, 범죄피해규모의 경미성, 피해자와 가해자와 인적관계, 또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aumer and Lauriste, 2010). 다만, 기존의 연구들도 대부분 가정폭력

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 한해 공식처리된 절도사건 223,264건 중,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가 151,510건, 고소한 경우가 3,246건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려 범죄가 시작된 경우가 전체의 69%에 달했고, 사기사건의 경우 총205,140건 중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가 17,954건, 고소한 경우가 126,886건으로 전체의,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2009:160).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절도피해자의 17%, 사기피해자의 8%만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외, 2009).

(Bachman et al., 1995; Berk et al., 1984; Felson et al., 2002), 성폭력 (Avakame et al., 1999; Baumer et al., 2003), 일반폭력과 상해 (탁종연·노성훈, 2008; Avakame et al., 1999), 강도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 탁종연·노성훈, 2008) 같은 대인범죄에 집중되어 왔고, 절도나 사기같은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 (예: Copes et al., 2001;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이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종류를 불문하고 피해자신고결정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주제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 범죄피해조사' (김은경 등, 2009)에서 기존부터 조사해오던 절도 이외에도 사기범죄를 중점 조사대상의 하나로 포함하여 사기피해자의 행동을 연구할 수 기회가 열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해 재산범죄, 특히 사기와 절도의 범죄피해자가 어떤 경우에 범죄를 신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 포기하는지 그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범죄피해자들의 범죄 신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과 실증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 부분은 국내에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미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 변수, 그리고 분석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연구는 2009년에 전면 개편된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연구와 관련된 자료의 장단점 등을 같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절도와 사기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결과가 주는 의미와 한국 형사정의시스템과 범죄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II.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는 도널드 블랙(Black, 1976)의 “법의 행동”(The Behavior of Law)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서 법은 피해자의 범죄신고, 경찰의 체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유죄판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통제기제로 정의되는데, 핵심적 주장은 법이 양적으로 변화하는 변수이며, 그 사용량이 가해자나 피해자 등 법사용 당사자들의 사회생활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이다. 블랙이 제시한 다섯 가지 사회생활 환경요인은 당사자의 계층, 사회적 거리, 문화, 조직화 그리고 사회통제 등이다.

이론에서 언급한 첫 번째 사회적 요인은 계층(stratification)이다. 계층은 수직적인 사회생활의 측면, 즉 금전, 토지나 물에 대한 권리와 같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일컫는 것이다(Black, 1976:11). 이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당사자의 계층에 따라 법의 사용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위계층 사람들은 하위계층사람들보다 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거리는(morphology) 수평적 사회관계를 말한다(Black, 1976:37). 법의 사용량과 범죄 당사자간 사회적 관계는 꺾을 엮어 놓은 형태의 관계 또는 2차방정식 곡선의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는 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친구나 지인 등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서서 상호 접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법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Black, 1976:41).

문화는(culture) 관습, 도덕, 신화, 교육, 종교와 같은 사회생활의 상징적 측면을 의미한다(Black, 1976: 61).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는 주로 교육수준, 언어구사력, 문화이해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화적 차이도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들처럼 법의 사용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교육 등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법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화는(organization) 사회생활의 협력적 측면을 뜻한다(Black, 1976: 85). 개인보다는 회사나 사단법인 같은 집단이 조직화 수준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조직화 수준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절도나 횡령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다 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제는 (social control) 사회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 기제를 말하는데, 법의 사용은 다른 사회통제의 사용과 반비례한다 (Black, 1976: 105). 즉, 조직, 직업, 부족, 이웃사회, 가족 내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가 많이 사용될수록 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인 법은 더 적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블랙의 이론을 정리하면, 높은 사회적 지위와 폭 넓은 문화를 향유하며, 강한 사회적 조직에 속해있고, 낮은 사회적 통제를 받는 사람이 자신과 인적 관계가 먼 사람과의 분쟁에서 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의 행동이론은 이론의 체계성과 논리성으로 인해 범죄학자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상당한 비판도 받고 있다. 주로 지적되는 이론의 약점은 범죄피해 자체의 심각성이 이론에서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 Hembroff, 1987). 형사법이론으로나 일반상식에 의할 때, 범죄의 심각성은 재정적 손실이나 신체적 손상의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의 집행과 처벌도 이에 따라 주로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Sellin and Wolfgang, 1964), 법의 행동이론에는 범행 자체의 심대성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실 블랙은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다섯 가지 명제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예컨대, 사회의 하류층이 상류층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상류층이 하류층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다 (Black, 1976: 15). 물론 이런 주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일부 설명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신고, 수사, 기소, 재판 등 각종 법의 사용이 다섯 가지 비법적 사회 환경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범죄의 종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등도 법의 행동이론의 틀에서는 제대로 포섭되지 않아 실증연구의 준거이론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최근의 피해자 신고행동관련 연구에서 법의 행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어진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 Baumer and Lauristen, 2010; Felson et al., 1999; Felson et al., 2001).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법의 행동이론에倚매이지 않고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수들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하였다.

2. 실증연구 검토

범죄학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범죄피해신고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폭넓은 실증적 연구가 이뤄져 왔다. 가장 잘 알려진 신고의 결정요인은 피해자가 경험한 범죄피해의 종류이다. 예를 들어, 강간 등 성범죄의 신고율은 강도, 절도, 상해 등의 범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aumer and Lauristen, 2010),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다 (김은경 외, 2009; 김지선 외, 2006). 이렇게 특정 범죄의 신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그 범죄피해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신고 후에 형사사법 기관에 의해 겪을 수 있는 제2차적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죄피해를 신고할 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들이 고려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피해의 심각성으로 볼 수 있다. 피해의 심각성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서구의 연구를 보면 경제적 손실이 큰 경우에 작은 경우보다 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같은 맥락에서 소규모 절도보다는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신고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and and Catalano, 2007; Slogan, 1984).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를 살펴봐도 자동차절도의 신고율이 자동차부품절도나 일반절도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지선 외, 2006). 폭력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의 심각성이 신고여부의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무기를 소지 또는 사용했거나, 자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신체적 위협수준이 심각한 경우 신고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탁종연·노성훈, 2008; Laub, 1997; Skogan, 1984). 요약하면 재산범죄이건 폭력범죄이건 중대한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이다. 이 주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널드 블랙 (Black, 1976)이 발표한 ‘법의 행동’ (The Behavior of Law)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vakame et al., 1999; Copes et al., 2001). 블랙에 사회적 거리론 (morphology)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보다는 관계가 먼 사람, 즉 가족보다는 친구, 친구보다는 지인, 지인보다는 완전한 타인에 의한 범죄사건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인적관계의 영향은 범죄의 종류, 측정방법, 다른 변수의 통제수준 등에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Baumer and

Lauristen, 2000).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 신고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나타났지만 (예: Hindelang and Gottfredson, 1979; Copes et al., 2001), 근래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관계가 신고확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예: Felson et al., 1999).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역시 피해자들의 신고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derson, 2000; Baumer and Lauristen, 2010; Schnebly, 2008).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소수인종들이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린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다 (예: Anderson, 2000). 사실 이런 시민과 경찰 간의 불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된 방법이 소위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인 경찰과 시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Kelling and Moore, 1988).

마지막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도널드 블랙 (Black, 1976)의 이론, 특히 계층론 (stratification) 등을 참고하면 백인, 남성, 부유층에서 경관요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연구에서는 반대의 증거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또는 소수인종일 때 신고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Avakame et al., 1999; Hart and Rennison, 2003; 탁종연·노성훈, 2008).

선행연구에서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요인들에 대한 상당한 실증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³⁾을 검증하기 위한 시계열적 연구가 부족하다 (예외: Baumer and Lauristen, 2010; Baumer et al., 2003). 하지만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연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

3)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여성들의 신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김지선 외, 2006), 이는 사회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개선된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범죄 신고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발전도 범죄피해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Baumer and Lauristen, 2000).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수단의 발전이다. 과거 전화가 대중화되지 않고 112시스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경찰에 신고하기가 매우 번거로워 신고를 하기가 매우 번거로웠지만, 1980년 이후 집전화 보급과 1990년대 이후 핸드폰의 보급덕에 신고가 매우 용이해졌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계속 범죄피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에는 그러한 감소추세가 감지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핸드폰의 보급이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어난다. 기존 연구의 다른 문제점은 조사대상을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범죄에 두고 절도와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많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국내의 학계에서는 죄종을 막론하고 이 주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에서의 피해자들의 범죄신고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연구에서 신고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된 요인들, 즉, 범죄의 심각성, 가해자와의 관계,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주된 독립변수로 보고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에 포함하여 이들 요인들이 재산범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행정원)에서 시행한 제8차 범죄피해조사의 원 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9년에 행정원에서 통계청에 의뢰하여 전국의 14세 이상의 남녀 10,671명을 대상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경험여부, 피해상황 및 결과 등을 질문한 것이다 (김은경 외, 2009). 이 범죄피해조사 자료는 재산범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연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유일한 설문조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행정원에서는 이미 7차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표본의 크기가 불과 2천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확률표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사대상 범죄가 한정적이었던 점 등 때문에 이 연구와 같은 실증연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원의 제8차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이상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표본크기가 1만 명 이상으로 5배나 커졌을 뿐 아니라, 기존에 재산범죄로는 절도만 조사하다 사기범죄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행정원에서는 제8차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두 가지 SPSS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공개하

4) 행정원의 범죄피해조사 결과보고서 (예: 김은경 외, 2009; 김지선 외, 2006)나 문장일의 연구(2004)에서 피해액 및 피해자의 인적특성과 신고율 사이의 이원분석(bivariate analysis)을 실시한 것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고 있다. 하나는 조사에 응답자 (10,671명)을 기준으로 작성한 파일이며, 다른 하나는 응답자들이 경험한 사건(10,835사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응답자기준 파일도 사건 기준 파일은 피해경험과 그 결과 등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들어있으나, 다만 응답자가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때는 그 수만큼의 사건정보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사건 기준 파일의 사례수가 좀 더 많을 뿐이다. 이 연구는 각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한 각 상황에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기준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관심은 절도와 사기사건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사건기준 파일에서 절도와 사기범죄피해사례만을 따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이 범죄피해조사에서 보고한 절도피해사건은 459건이었고, 사기범죄피해를 사건은 247건이었다. 행정원에서는 절도피해를 가구범죄인 주거침입절도 (124건)와 개인범죄인 절도(335건)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도 작고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절도피해를 묶어서 연구하였다. 다만, 별도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결과는 거의 같았음을 밝힌다.

2. 변수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범죄피해신고 여부이다. 이 변수는 재산범죄 피해자가 당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와 (1로 코딩), 신고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로 나뉜 이분형 변수이다. 두 경우 공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절도의 경우 총459건 중 신고사례가 80건 (17.4%)이었고, 사기의 경우, 총247건 중 신고사례가 20건(8.1%)에 불과했다 (표1 참조).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 변수이름 | 변수설명 | 절도사건 (n=459) | | | 사기사건 (n=247) | | |
|---------------|--|-----------------|-----|-----|-----------------|-----|-----|
| | | 평균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최소값 | 최대값 |
| 〈중속변수〉 | | | | | | | |
| 신고함 | 피해사건을 경찰에 신고함 | .17 | 0 | 1 | .08 | 0 | 1 |
| 〈독립변수〉 | | | | | | | |
| 피해액 | 범죄피해액수 (100만원) | 0.53 | 0 | 15 | 3.54 | 0 | 50 |
| 무기위험물건소지 |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물건 소지 | .03 | 0 | 1 | - | - | - |
| 잘 아는 사람 | 가해자가 가족친척, 친구, 애인,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선생님), 거래관계자,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 | .02 | 0 | 1 | .23 | 0 | 1 |
| 경찰검거신뢰 |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 줄 것이다”라는 진술에 동의 | .14 | 0 | 1 | .15 | 0 | 1 |
| 통제변수 | | | | | | | |
| 집피해 | 피해가 집에서 발생함 | .39 | 0 | 1 | .54 | 0 | 1 |
| 피해횟수 | 지난1년간 동종사건 피해횟수 | 1.31 | 1 | 5 | 1.50 | 0 | 1 |
| 나이 | 피해자의 만 나이 | 40.64 | 14 | 91 | 40.63 | 14 | 77 |
| 여성 | 피해자가 여성 | 0.43 | 0 | 1 | 0.47 | 0 | 1 |
| 대졸 | 피해자가 대졸이상의 학력소지 | .31 | 0 | 1 | .45 | 0 | 1 |
| 월평균소득 | 피해자 가구 월평균 소득* | 3.99 | 1 | 7 | 4.11 | 1 | 7 |

*월평균소득: 소득 없음(1), 100만원미만(2), 101-200만원 미만(3), 201-300만원미만 (4), 301-50만원미만 (5), 501-1,000만원미만(6), 1,000만원(7)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는 피해의 심각성이다. 피해의 심각성은 다시 피해액과 무기위험물건소지로 변수로 측정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개념상 물리적 피해는 배제되므로, 피해의 심각성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Gottfredson and Hindelang, 1979). 범죄피해조사에는 피해액을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변수로 사용하였다. ‘피해액’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서, 절도 피해자들은 평균 53만원의 피해를, 사기 피해자들은 평균 35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무기위험물건소지’ 변수는 가해자가 칼, 드라이버, 병 등 무기나 위험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면 높게 (무기위험물건소지=1), 그렇지 않았으면 낮게 코딩 (위험물건소지=0)한 이분형 변수이다. 이는 피해액의 크기와 독립적으로 그 범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결정짓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강도 등과 달리 순수 재산범죄의 경우, 칼이나 드라이버 같은 위험물건소지의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지만, 절도피해사건의 경우에 2.8%의 사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잘 아는 사람’ 변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가해자가 가족친척, 친구, 애인,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또는 선생님),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 이웃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인 경우는 높게 (잘 아는 사람=1), 단지 안면만 있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낮게(잘 아는 사람=0) 코딩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가족친척으로 삼등분하여 물어보고, 아는 사람인 경우 이를 다시 친구, 애인, 학교선후배, 직장동료, 직장상사(또는 선생님),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 이웃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안면만 있는 사람 등 8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인적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절도의 경우 가해자가 잘 아는 사람인 경우는 1.5%에 불과하였고, 사기의 경우는 23.1% 정도였다. 범죄신고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적관계는 단지 안면만 아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적관계의 마지막 범주인 안면만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합친 것이다.

‘경찰검거능력신뢰’ 변수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범죄피해조사에는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 줄 것이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응답자가 이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높게 (경찰검거능력신뢰=1)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게 (경찰검거능력신뢰=0) 코딩하였다. 절도의 경우 14.1%, 사기의 경우 15.0%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의 경찰검거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변수들⁵⁾도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신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사용하지 않았다.

5) 이들 변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 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이다. 참고로, 이들은 모두 요인분석으로 묶어서 사용하여도 분석결과는 거의 같았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범죄피해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독립변수들과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섯 개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피해 장소와 피해횟수 등 피해사건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집피해’변수⁶⁾는 피해의 장소가 집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피해 장소가 집이었으면 높게 (집피해=1), 그렇지 않으면 낮게 (집피해=0) 코딩하였다. 조사결과 39.4%의 절도사건이 53.8%의 사기사건이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절도를 가구범죄인 주거침입절도와 개인범죄인 절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구분은 응답자가 가구주인지 가구원인지에 의한 구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가구원이 답한 절도가 피해장소가 집일 경우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가구범죄로 구분되지만 사실은 가구주가 응답한 주거침입절도와 내용상 같은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해 장소의 분류상 집에서 발생한 피해인지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피해횟수’ 변수는 응답자가 2008년 한 해 동안 같은 종류의 피해를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를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동종의 피해를 반복해 경험한다면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체념하여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절도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1.3회,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평균 1.5회의 동종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로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나이’는 응답자의 만 나이를 측정한 연속변수이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40.6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응답자의 성별을 측정한 변수로서, 응답자가 여성이면 높게(여성=1), 남성이면 낮게 (여성=0) 코딩하였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43.1%, 사기사건의 경우 47.0%가 여성으로 밝혀졌다.

‘대졸’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측정한 이분형변수로서, 응답자가 대졸이상이면 높게 (대졸=1), 그보다 낮은 학력을 소지했으면 낮게 (대졸=0) 코딩하였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31.2%가 사기사건의 경우 45.3%가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나타났다.

6) 집피해 변수도 관점에 따라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같은 절도라도 집안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재물의 손실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느낌이 다른 장소에서의 피해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기의 경우에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통제변수로 분류한다.

‘소득수준’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측정한 변수이다. 이 변수는 범죄피해조사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장 낮게 코딩하고 (소득=1), 100만원미만(소득=2), 101-200만원 미만 (소득=3), 201-300만원미만 (소득=4), 301-50만원미만 (소득=5), 501-1,000만원미만(소득=6), 그 이상(소득=7)으로 코딩하였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독립변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블랙 (Black)의 이론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계층 (stratification)적으로 또는 문화(culture)적 측면에서 범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 (dichotomous variable)이므로 분석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기존 연구의 관행에 따라 0.05(two-tailed)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였다.

V. 연구결과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의 경우 신고합과 피해액 (.370), 다음으로 나이와 집피해 (.323)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고, 사기의 경우에는 나이와 대졸변수(-.297)의 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히 회귀분석에 영향을 줄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략).

〈표 3〉 범죄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 | 절도사건 | | | 사기사건 | | |
|---------------------|----------|--------|------------|---------|--------|------------|
| | B | Wald | Odds Ratio | B | Wald | Odds Ratio |
| 〈독립변수〉 | | | | | | |
| 피해액(100만원) | 1.155*** | 26.811 | 3.174 | .091*** | 11.317 | 1.095 |
| 무기위협소지 | 1.430* | 4.512 | 4.178 | - | - | - |
| 잘 아는 사람 | -8.024 | .136 | .000 | -1.759* | 4.372 | .172 |
| 경찰검거능력 신뢰 | -.093 | .049 | .911 | -19.121 | .000 | .000 |
| | | | | | | |
| 〈기타 피해사건 특성〉 | | | | | | |
| 집피해 | -.242 | .516 | .785 | 1.031 | 2.392 | 2.803 |

| | | | | | | |
|-----------------------|---------|-------|-------|---------|-------|-------|
| 피해횟수 | -.502 | .313 | 2.575 | -.530 | 1.298 | .255 |
| | | | | | | |
| <피해자 특성> | | | | | | |
| 나이 | .031*** | 7.629 | 1.031 | -.012 | .286 | .988 |
| 여성 | .095 | .090 | 1.100 | -1.305* | 3.976 | .271 |
| 대출 | .448 | 1.370 | 1.566 | .408 | .425 | 1.504 |
| 월평균소득 | -.186 | 2.069 | .830 | -.478 | 3.292 | .620 |
| | | | | | | |
| 상수 | -2.496 | 5.301 | .082 | 2.082 | 1.069 | 8.018 |
| -2 log likelihood | 279.49 | | | 90.32 | | |
| Nagelkerke R Square | 0.325 | | | 0.318 | | |
| 표본크기 | 394 | | | 176 | | |

*.01(p<.05, **p<.01, ***p<.001

표3은 범죄피해신고여부 즉 ‘신고함’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절도와 사기사건 모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신고여부의 결정적인 변수라는 점이었다. 절도사건의 경우 다른 조건을 통제한 후에도 피해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 마다 신고할 가능성이 3.17배,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0.1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01$). 피해의 심각성의 또 다른 지표인 무기위험소지 역시 신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지만, 절도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4.2배나 더 많이 신고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들은 절도와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부에 따라 주로 신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다른 독립변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변수, 즉 잘 아는 사람 변수는 오직 사기사건에서만 신고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잘 아는 사람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1/5도 안 되는 0.17배 정도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5$). 즉, 피해액 등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해도 가해자가 잘 아는 사람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변수는 절도사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경찰검거능력 신뢰변수는 절도와 사기사건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피해자가 신고 후 경찰이 범인을 검거해 줄 수 있을 거란 평소의 믿음은 다른 조건이 같다고 볼 때 실제 절도와 사기사건의 신고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제변수 중에도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짐에 따라 신고확률은 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사기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은 1/4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통제변수, 학력수준(대졸)이나 월평균소득과 같은 피해자의 특성이나 피해장소(집피해)나 피해횟수는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피해자가 응답한 그 피해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 미신고 이유 | 절도사건 % | 사기사건 % |
|---------------------------------|-------------------|-------------------|
|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 | 55.4 | 51.5 |
| 증거가 없었기 때문 | 22.4 | 3.5 |
|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 | 9.2 | 3.1 |
| 경찰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8.7 | 2.6 |
| 다른 방식으로 처리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 | 2.6 | 19.8 |
|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 | 0.3 | 15.4 |
|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0.5 | 0.4 |
|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 - | 0.4 |
| 기타 | 0.8 | 3.1 |
| 합 계 | 100.0% (n=379) | 100.0% (n=227)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조사에서 직접 그 피해사건의 미신고로 이유로 응답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표4에서 보듯이 절도와 사기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한 경우가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5.4%에 달해 가해자와의 관계가 신고하지 않게 한 큰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다르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절도사건의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관련 신뢰도가 미신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까닭으로 증거가 없었기 때문 (22.4%),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 (9.2%), 그리고 경찰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8.7%) 등을 들었다는 점은 다른 말로 하면 40%정도의 사람들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면 신고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5. 피해자가 응답한 그 피해사건을 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

| 신고한 이유 | 절도 % | 사기 % |
|------------|---------------|---------------|
| 범인검거처벌 | 45.0 | 40.0 |
| 손실회복 | 38.8 | 45.0 |
| 동일유사사건재발방지 | 8.8 | 15.0 |
| 경찰예방활동개선 | 2.5 | - |
| 범죄이니까 | 3.8 | - |
| 기타 | 1.3 | - |
| 합계 | 100 (n=80) | 100 (n=20) |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이 당해 사건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결정의 가장 큰 이유도 질문하고 있는데, 그 응답내용도 상기 내용과 부합한다. 즉, 표 5에서 보듯이 그 사건을 실제로 신고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범인검거처벌이라고 답한 경우가 절도 45%, 사기 40%였고, 다음으로 손실회복이라고 답한 경우가 절도의 경우 38.8%, 사기의 경우 45.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를 신고했을 경우 경찰이 범인검거처벌하거나 손실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비록 평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피해자의 신고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 당해사건에서는 경찰의 검거능력을 고려하여 신고 또는 미신고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1.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내학계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인 재산범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피해신고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전면 개편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절도 459건과 사기 247건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구의 실증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가 심각할수록, 가해자와의 인적관계가 멀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남자인 경우 등에서 신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행동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피해액이 커지거나 범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같이 범죄피해가 심각할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나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해자를 잘 아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신고하기를 꺼려하지만, 이는 인지상정일지 모르며 합리성을 따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범죄학자들과 형사사법체제의 실무기들은 공식통계를 해석할 때 피해액이 적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체계적으로 축소되어 보고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남성이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신고확률이 높아진다는 발견은 법의 행동이론의 예측내용과 상당히 부합하지만, 교육수준이나 월평균소득이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이론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범죄피해 자체의 심각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 이론의 설명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가 범죄피해자의 신고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에 다룬 범죄가 재산범죄로 한정된 탓에 폭력, 성폭력, 강도 등 다른 범죄에서는 각 변수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 인적관계의 효과가 절도범죄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사기범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점을 보면, 조사대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는 달리 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절도와 같이 타인간의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연관된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값을 세분화하여 사용하지 못해 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관계 변수는 좀 더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좀 더 인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고확률이 높아지는 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탁중연·노성훈, 2009).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자료 자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활용한 자료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표본이지만, 현재 한국의 범죄피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탓에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례수가 크지 않았다. 가장 흔한 범죄피해인 절도의 경우도 불과 400여 사례에 불과하였고, 성범죄나 강도 같은 심각한 범죄는 100사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종별로 많은 변수를 이용한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쉽지 않겠지만, 실증연구를 위해 표본의 크기를 늘리거나 조사 횟수를 좀 더 늘려 복수의 조사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장일. (2004).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 「비교형사법연구」 6:315-345.
- 탁종연 · 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 8:41-70.
- Anderson, E. (2000). 「The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Chicago: W. W. Norton & Company.
- Avakame, E. F., Fyfe, J. J., & McCoy, C. (1999). "Did you call the police? What did they do?: An empirical assessment of Black's theory of mobilization of law," 「Justice Quarterly」 16:765-792.
- Bachman, R. (1998). "The factors related to rape reporting behavior and arrest: New evidence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5:8-29.
- Bachman, R., & Coker, A. L. (1995). "Police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The interactive effects of victim injury, offender's history of violence, and race," 「Violence and Victims」 10, 91-106.
- Baumer, Eric & Lauristen, Janet. (2010). "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 1973-2005: a multivariate analysis of long-term trends in the national crime survey (NCS) and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Criminology」 48:131-185.
- Berk, R. A., Berk, S. F., Newton, P. J., & Loseke, D. R. (1984). "Policies on call: Summoning the police to the scene of spousal violence," 「Law and Society Review」 19:479-498.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 New York: Academic Press.
- Copes, H, Kerley, K.R., Mason, K.A., & Wyk, J. V. (2001). "Reporting behavior of fraud victims and Black's theory of law : an empirical assessment." 「Justice Quarterly」 19:343-363.

- Felson, R. B., Messner, S. F., & Hoskin, A. (1999).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calling the police in assaults," 「Criminology」 37:931-947.
- Felson, R. B., Messner, S. F., Hoskin, A.,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 617-647.
- Gottfredson, M. R., & Hindelang, M. J. (1979). "A study of the behavior of la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3-18.
- Hembroff, L. A. (1987). "The seriousness of acts and social contexts: a test fo Black's theory of the behavior of law."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322-347.
- Hickman, L. J., & Simpson, S. S. (2003). "Fair treatment or preferred outcome? The impact of police behavior on victim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s," 「Law and Society Review」 37: 607-634.
- Hindelang, M. J., & Gottfredson, M. R. (1976). "The victim's decision not to invoke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W. E McDonald (Ed.), 「Criminal justice and the victim」 Beverly Hills, CA: Sage.
- Kelling, G. L., and Moore, M. (1988). "From political to reform to community: The evolving strategy of police". In 「Community Policing: Rhetoric or Reality」 , eds. Jack R. Greene and Stephen D. Mastrofski. New York: Praeger.
- Kidd, R. F. & Chayet, E. F. (1984). "Why do victims fail to report? The psycholog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0, 39-50.
- Laub, J. H. (1997). "Pattern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Victims of Crime」 , eds. Robert C. Davis, Arthur J. Lurigio, and Wesley G. Skogan. Thousand Oaks, CA: Sage.
- Schnebly, Stephen M. (2008). "The influen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on crime-reporting behavior". 「Justice Quarterly」 25:223-51.
- Sellin, T and Wolfgang, M. (1964). 「The measurement of delinquency」 New York: Wiley.
- Skogan, Wesley G. (1984).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The status of world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113-37.

제 2 부

사회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

<발표 1>

•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노성호(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발표 2>

• **폭력 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김성언(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토론>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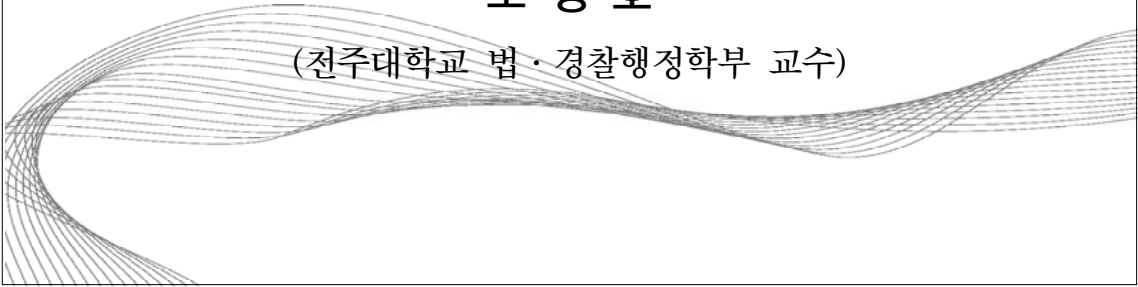
조윤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노 성 호

(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노 성 호*

I. 들어가는 말

범죄학 연구나 형사사법분야에서 범죄자에게로 많이 기울어 있던 연구의 관심이 최근 범죄피해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피해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지만 반복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외국에서도 많이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관심의 부족은 다중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위해서 매우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범죄피해조사결과를 보면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이며, 2번 이상 피해를 당하는 것은 더욱 희귀한 현상이라는 인상을 준다. Sparks(1981)는 일반 모집단의 대표표본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다중피해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고 기술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 이전의 범죄피해조사는 표본이 작아서 2번 이상 범죄피해를 당한 다중범죄피해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 등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해서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인과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수 있지만, 범죄피해를 당하도록 만드는 인과적 요인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특정 개인이 한번 범죄피해를 당한다는 데는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우연적인 요

*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소가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2번 이상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는 다중피해의 경우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죄피해는 우연적인 요소의 작용이라 볼 수 있지만 2번이상의 경우는 우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특정의 요인들이 작용해서 빚어지는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 Sparks(1981)는 반복피해의 연구는 범죄피해간의 일반적인 인과과정을 명료하게 하고 피해자 자신의 행동 속성이 그들의 피해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이론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중피해의 이해는 이론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중요성도 가진다. 이러한 이해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Barr와 Pease(1990)과 Farrell(1992)에 따르면 과거의 피해가 미래의 위협의 강한 예측요인이 된다면 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자원은 가장 최근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향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욱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다중피해가 가지는 더 구체적인 인과적 과정의 파악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피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후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파악할 때 그에 적절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중범죄피해에 관해서 3가지 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다중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로 다중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집단별로 살펴보고, 셋째, 다중범죄피해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중범죄피해의 개념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일정기간동안 반복해서 복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횡단적인 측면과 종단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횡단적인 측면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일정기간동안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다중범죄피해(multiple victimization)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종단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피해를 경험하고 다음 조사에서도 다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반복피해(repeated victimization)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1) 예를 들어 일부 피해자가 지역의 범죄자들에게 취약하거나 매력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는 일부 피해자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보복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과거의 피해가 미래의 위험이 높일 수 있다. 두 경우에 미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반대로 피해위험이 개인의 측정되지 않는 특성(예, 위험감수 성향)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대안적인 범죄예방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Menard와 Huizinga(2001)는 두가지 종류의 반복피해의 유형 구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만성적 피해와 다중피해이다. 다중피해는 주어진 단일 연구기간동안 2번이상의 피해로 규정하며, 연간 피해빈도로 측정한다. 다중피해 또는 피해의 빈도는 특정 응답자가 제한된 기간동안 경험한 피해의 강도(intensity)를 의미한다. 반복피해에 대한 횡단적 조사에서는 다중피해만이 반복피해의 측정가능한 부분이다. 만성적 피해는 둘 이상의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로 정의된다. 만성적 피해는 피해경험의 지속의 지표이거나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하는 시간의 길이로 정의된다. 만성적 피해는 종단적인 자료를 사용해서만 측정가능하다. 다중피해와 만성적 피해 모두 반복피해를 대표하며 이 두 가지의 조합인 만성적 반복피해도 가능하다. 이러한 논의는 다중피해의 개념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자료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횡단적인 의미에서의 다중범죄피해의 개념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2회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를 다중피해로 규정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다중피해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구범죄와 대인범죄의 다중피해실태를 살펴본다. 둘째로 다중피해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집단의 대표적인 프로파일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셋째는 다중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II.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다중범죄피해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내용과 관심에 따라서 몇 개 영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다중범죄피해의 실태를 살펴보고, 다중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가장 단순한 전략은 횡단적인 피해조사의 사건발생자료를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 한건이나 그 이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Gottfredson(1984)은 14%의 성인이 자기보고 범죄피해 중에서 대략 70%가량을 경험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분포가 다양한 상황이나 범죄유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소수의 청소년들이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청소년

년 범죄피해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특정 유형의 폭력은 다중발생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유사한 맥락에서 Menard와 Huizinga(2001)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피해의 유형을 피해없음, 단일피해, 다중피해, 만성피해, 만성적 다중피해로 구분하였는데, 각 유형의 비율이 12.9%, 13%, 9.8%, 12.1%, 52.2%이다. 그밖에 다양한 연구들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Finkelhor와 동료들(2005)의 조사결과 등이다.

두 번째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범죄피해가 이후의 범죄피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이다. Reiss(1980)는 전미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 자료를 사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과 가구범죄피해를 살펴보는 범죄경력 연구를 발전시켰다. Reiss는 상당히 많은 반복피해가 모든 주요범죄유형에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범죄피해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절도, 폭행, 침입절도 등) 한 시점에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범죄유형의 피해를 다시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범죄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의 피해자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반복피해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개의 이론적 관점이 존재한다(Winkel, et al. 2003). 하나는 회복/접종(resilience/inoculation) 관점에서 이전의 피해경험은 미래의 피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처전략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피해에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번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른 하나는 취약성(vulnerability) 관점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모든 스트레스를 주는 생애사건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이후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관점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대응일관성 모델(coping consistency model)이라 부른다. 과거의 대응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반복피해가 가져오는 영향은 달라진다. 즉 과거의 대응성공이 미래의 대응성공의 좋은 예측인이 된다. 과거 피해에 의한 스트레스 잔여물이 남아 있는 정도와 피해간의 시간적 간격이 결과를 결정한다.

과거 피해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범죄경력 연구의 핵심이 되는 상황의존론과 모집단이질론과도 연결된다(Tseloni and Pease, 2004). 일반적으로 과거의 피해가 미래의 피

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는데, 이러한 설명은 범죄경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와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다. 사건의존(event dependence)은 최초의 피해가 이후의 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함축한다. 첫 번째 범죄의 성공적인 수행은 피해자를 더 취약하고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든다. 따라서 피해경험이 많고 오래될수록 계속되는 범죄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이질성(heterogeneity)의 측면에서 개인이나 가구는 이전의 피해경험에 관계없이 피해를 당할 일정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일부 대상자는 그들이 다른 잠재적 대상자보다 가해자들에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과거의 범죄피해경험이 이후에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개인의 특성이 계속해서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연구결과는 사건종속과 이질성 모두가 현재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Lauritsen and Quinet, 1995; Osborn and Tseloni, 1998; Witterbrood and Nieuwbeerta, 1999). 이러한 결과에 덧붙여 Tseloni와 Pease(2004)는 짧은 기간내에 발생한 재피해는 과거 피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간이나 장기적인 피해는 개인적, 가구요인, 생활양식 특성과 연관되는 경향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전략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중피해를 연구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반복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두 번째 관점을 선호하는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은 첫 번째 피해를 당하기 전에 잠재적 피해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첫 번째 관점의 경우에 반복피해의 방지는 첫 번째 피해이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되어야 하며, 과거 피해가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과거피해가 이후의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종단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료만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세 번째는 복수유형피해(poly-victimization)가 가지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연구이다. 복수유형피해란 개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한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의 수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복수유형피해를 종속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인으로 보며, 복수유형피해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 주로 아동의 피

해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기존에는 아동이 당하는 주요 범죄피해유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범죄피해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신적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복수유형피해연구는 피해유형의 중복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유형의 범죄피해를 중복적으로 당하는 경우에 그것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²⁾(Finkelhor, et al. 2005; Richmond, et al. 2009; Turner, et al. 2010).

전체적인 조사결과는 복수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아동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Turner와 동료들(2010)의 연구는 표본 중에서 약 66%가 2개 유형 이상의 피해에 노출되어있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Finkelhor와 동료들(2005)은 아동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하는가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유형의 중복빈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증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복수유형 범죄피해는 기존에 단일 범주의 범죄피해가 설명한다고 간주되었던 심리적 고통 변량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III. 연구 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제6차 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피해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기존 피해조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³⁾. 조사방법상의 특이점은 응답자들의 범죄피해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NCVS 방식으로 스크리닝 질문을 강화하고, 발생한 피해의 행위(내용)를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사후에 범죄수업과 피해양상을 종합하여 사건의 범죄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총조사표본수는 4710가구의 10671명이며, 2009년 9월 14일부터 10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이들은 주로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JVQ)라는 척도를 이용해서 아동의 범죄피해를 조사하며, 전화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4개의 범죄 또는 비행항목에 대해서 피해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Finkelhor, et al. 2005).

3) 자세한 조사방법과 결과는 김은경 등,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고하시오.

2.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범죄피해변인이다. 피해범죄유형과 더불어 피해빈도가 주요한 변인을 구성한다. 조사자료에서 범죄피해는 가구대상범죄와 개인대상범죄로 구분되는데, 가구대상범죄는 4710가구가 기본이 되며, 개인대상 범죄는 10671명의 개인이 기본이 된다. 가구범죄에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손괴, 단순주거침입, 기타 가구범죄가 포함되고, 대인범죄에는 사기, 절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기타 폭력범죄가 포함된다.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범죄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가구범죄피해와 대인범죄피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범죄피해조사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⁴⁾.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의 범죄피해조사와는 달리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에서 응답자의 피해유형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피해사건을 가능하면 모두 기억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계속 다른 피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당한 피해유형의 구분은 조사가 완료된 후에 사건조사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본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피해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변인군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에서 나타난 피해의 건수이며, 두 번째는 사건조사표의 문항2번, 즉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에서 대답한 피해건수가 총 몇건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며, 세 번째는 사건조사표에서 피해자가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구분한 범죄피해의 유형별 피해율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범죄유형별 피해율과 피해의 상세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사건조사표를 중심으로 한 문항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초조사표에 나타난 문항을 사용하는 방법(첫번째)과 사건조사표의 문항을 이용한 방법(세번째) 간에는 피해건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에 피해경험이 있다고 하였지만 사건조사표를 기록하지 않은데서 오는 차이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피해율의 추정

4) 기초조사표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과 더불어 지난 1년동안 응답자가 당한 피해의 내용을 정확하게 회상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의 여부를 묻는 다양한 스크리닝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리닝 질문에서 범죄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응답한 피해경험 별로 각각 사건조사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은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참고를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다중 피해율의 대략적인 추정을 살펴보고 이를 간단하게 비교하여볼 것이다.

다중범죄피해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범죄피해 조사는 대인범죄와 가구범죄를 구분하여 조사하며, 대인범죄의 경우는 다중범죄피해의 분석단위가 개인이지만 가구범죄의 경우는 가구가 분석단위가 되기에 분석단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다중범죄피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피해경험의 빈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구범죄와 대인범죄의 다중피해를 따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가구범죄피해를 개인단위로 전환하여 대인범죄와 함께 고려하여 다중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가구의 대표가 피해를 응답한 경우에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데이터를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배경변인으로는 성별, 최종학력, 본인 및 가구의 수입, 주거형태(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거주기간, 이사빈도, 가족구성형태, 직업, 혼인상태, 교통수단 등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먼저 일반적으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렵다”,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두렵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렵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느끼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로서 “나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지는 “최근 우리나라의 범죄양상이 점차 흉악해지는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의 두 문항으로,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척도로서 “평소 되도록 현금을 많이 가지도 다니지 않으려 한다”, “호루라기,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등 3문항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두려움으로서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9가지의 범죄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생활양식변인은 두 변인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개인에 관련된 것으로 늦게 귀가하는 빈도인데, 직장이나 학교일로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늦게(대략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물었다. 거의 매일부터 전혀 없음으로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다른 하나는 가구에 관련된 것으로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며, 당신

과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 단위로 대략 몇시간 정도되는지 질문하고 거의 비우지 않음부터 12시간이상의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물리적 취약성은 살고 있는 동네의 물리적, 환경적 낙후의 정도로서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더미가 널려 있다”, “후미진 곳이나 공터 등이 많다”, “냄새나 소음 등으로 쾌적하지 않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취약성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기초질서(가령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활동능력에 대한 인식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 줄 것이다” 등 4문항이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중피해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과 평균차이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중피해집단은 피해가 없는 집단, 1번만 피해를 당한 집단, 가구피해만 중복으로 당한 집단, 대인피해만 중복으로 당한 집단, 가구피해와 대인피해를 중복으로 당한 집단 등 5개로 구분하였다.

다중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위해서 명목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종속변인이 명목척도이며 3개이상의 값을 가질 때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단, 1번 피해를 당한 집단, 다중피해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변인, 생활양식변인, 기타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집단을 1번 피해를 당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⁵⁾.

5) 피해가 없는 집단, 1회피해집단, 다중피해집단 등 3집단의 구성이 서열성을 띠고 있기에 중간으로 간주되는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IV. 다중범죄피해의 실태

1. 다중범죄피해 실태

다음의 <표 1>은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을 중심으로 개인의 다중범죄피해를 제시하였다. <표 1>는 스크리닝 질문에서 응답자들 복수의 피해를 응답한 피해유형의 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9730명으로서 91.2%이며, 한가지 유형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838명으로 7.9%, 두 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90명으로 0.8%이며, 세 가지 유형이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은 13명으로 0.1%이다.

<표 1>의 아래 부분은 개인의 중복피해빈도수이다. 즉 어떤 종류의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는지 관계없이 개인이 당한 피해의 빈도이다. 1회의 피해만 경험한 사람은 722명으로서 6.8%이다. 따라서 2%에 해당하는 219명은 2번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하였다. 가장 많은 피해건수를 보고한 사람은 1년 동안 18회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스크리닝 질문을 통한 중복피해 유형수와 빈도수

| | 범주 | 빈도 | 퍼센트 |
|----------|--------|-------|------|
| 중복피해 유형수 | 없음 | 9730 | 91.2 |
| | 한가지 | 838 | 7.9 |
| | 두가지 | 90 | .8 |
| | 3가지 이상 | 13 | .1 |
| | 합계 | 10671 | 100 |
| 중복피해 빈도수 | 없음 | 9730 | 91.2 |
| | 1회 | 722 | 6.8 |
| | 2회 | 137 | 1.3 |
| | 3회 | 48 | .4 |
| | 4회 | 14 | .1 |
| | 5회 | 11 | .1 |
| | 6회 | 1 | .0 |
| | 7회 | 1 | .0 |
| | 8회 | 2 | .0 |
| | 10회 | 1 | .0 |
| | 11회 | 1 | .0 |
| | 13회 | 2 | .0 |
| | 18회 | 1 | .0 |
| | 합계 | 10671 | 100 |

다음은 사건조사표의 응답을 중심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후 계산한 범죄피해율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는 사건조사표의 질문에 기초해서 분류해서 제공한 가구범죄와 대인범죄 피해유형중복수와 사례수의 빈도분포범죄유형별 중복피해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표 2> 범죄피해유형빈도 및 범죄피해건수의 빈도

| | | 가구범죄피해유형 | | 대인범죄피해유형 | |
|---------------------------|-------|----------|-------|----------|-------|
| | | 빈도 | 퍼센트 | 빈도 | 퍼센트 |
| 피해유형 | 없음 | 4497 | 95.48 | 10050 | 94.18 |
| | 한가지 | 211 | 4.48 | 567 | 5.31 |
| | 두가지 | 2 | .04 | 49 | .46 |
| | 세가지 | | | 5 | .05 |
| | 합계 | 4710 | 100 | 10671 | 100 |
| 피해건수 | 없음 | 4497 | 95.48 | 10050 | 94.18 |
| | 1회 | 199 | 4.23 | 526 | 4.93 |
| | 2회 | 13 | .28 | 72 | .67 |
| | 3회 | 1 | .02 | 19 | .18 |
| | 4회 | | | 3 | .03 |
| | 5회 | | | 1 | .01 |
| | 합계 | 4710 | 100 | 10671 | 100 |
| 피해건수별 분포 (2009 보고서) | 1회 | 161 | 75.6 | 454 | 73.1 |
| | 2회 | 23 | 10.8 | 72 | 11.6 |
| | 3회 | 8 | 3.8 | 21 | 3.4 |
| | 4회 | 14 | 6.6 | 36 | 5.8 |
| | 5회 이상 | 7 | 3.3 | 38 | 6.1 |
| | 합계 | 4710 | 100 | 10671 | 100 |

<표 2>에서 지난 1년 동안 가구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가구는 4497가구로서 95.48%이며, 한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211가구로 4.48%, 2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단 2가구로서 0.04%에 불과하다. 대인범죄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대인피해를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10050명으로 94.18%이며, 한 가지 대인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5.31%, 두 가지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범죄와 대인범죄피해의 피해건수분포를 보면, 가구피해 건수가 1회인 경우는 199명으로 4.23%이며, 2회와 3회는 각 0.28, 0.02%로 가구범죄피해를 중복피해를 당한 비

율이 매우 낮다. 대인범죄피해의 경우도 2회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95명으로서 0.89%에 불과해 중복피해의 비율이 매우 낮다.

표의 가장 아래 부분에 제시된 것은 범죄피해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표(159쪽)⁶⁾로서 피해율계산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총피해건수별 분포를 제시하였는데, 이 표의 가운데 제시된 분포와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의 표가 훨씬 더 많은 피해건수를 보이고 있다. 같은 사건조사표의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가구범죄의 피해를 가구원 모두에게 적용시킨 후에 개인의 다중범죄피해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3>은 사건조사표를 중심으로 구성한 개인의 가구범죄피해와 대인범죄피해의 경험을 합산한 다중범죄피해의 빈도를 보여준다.

<표 3> 다중범죄피해의 분포(가구피해+대인피해)

| 피해빈도 | 피해유형 | 빈도 | 퍼센트 | 피해횟수 | 퍼센트 |
|------|-------------|--------|-------|-------|------|
| 없음 | | 9,625 | 90.20 | 0 | |
| 1회 | 가구 1회 | 396 | 3.71 | 396 | 31.6 |
| | 대인 1회 | 484 | 4.54 | 484 | 38.6 |
| 2회 | 가구 2회 | 25 | .23 | 50 | 4.0 |
| | 가구 1회+대인 1회 | 42 | .39 | 84 | 6.7 |
| | 대인 2회 | 66 | .62 | 132 | 10.5 |
| 3회 | 가구 3회 | 3 | .03 | 9 | 0.7 |
| | 가구 2회+대인 1회 | 1 | .01 | 3 | 0.2 |
| | 가구 1회+대인 2회 | 6 | .06 | 18 | 1.4 |
| | 대인 3회 | 15 | .14 | 45 | 3.6 |
| 4회 | 가구 1회+대인 3회 | 3 | .03 | 12 | 1.0 |
| | 대인 4회 | 3 | .03 | 12 | 1.0 |
| 5회 | 가구 2회+대인 3회 | 1 | .01 | 5 | 0.4 |
| | 대인 5회 | 1 | .01 | 5 | 0.4 |
| 합계 | | 10,671 | 100 | 1,255 | 100 |

지난 1년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625명으로 90.2%에 해당한다. 한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880명(8.25%)인데, 이중에서 가구피해만 1회 당한 사람이

6) 분포를 구한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 즉 가구피해 213 가구, 대인피해 621명만을 추출하여 사건조사표의 문2의 빈도분포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396명(3.71%), 대인피해만 1회 당한 사람이 484명(4.54%)으로 대인피해만 당한 사람이 더 많다. 2번이상의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66명(1.56%)이다. 즉 전체 응답자 10671명 중에서 1.56%가 지난 1년동안 2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다. 다중피해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번 피해를 당한 사람은 133명(1.25%)인데 이 중에서 가구피해만 2번 당한 사람은 25명(0.23%), 대인피해만 2번 당한 사람이 66명(0.62%)이며, 가구피해와 대인피해를 각각 1번씩 경험한 사람이 42명(0.39%)이다. 모두 3번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25명(0.23%)인데, 대인범죄만 3회 당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15명(0.14%)이며, 다음이 가구피해 1회와 대인피해 2회를 당한 사람으로 6명(0.06%)이다. 4번 피해를 당한 사람은 6명(0.06%)인데, 가구피해 1회와 대인피해 3회를 당한 사람이 3명(0.03%)이고, 대인피해만 4회 당한 사람이 3명(0.03%)이다. 사건조사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한 사람은 5회의 피해를 보고한 경우로서 2명(0.02%)이며, 가구피해를 2번 당하고 대인피해를 3번 당한 사람이 1명이고, 대인피해만 5번 당한 사람이 1명이다.

표의 우편에서 전체사건의 피해횟수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건의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피해사건 중에서 70%정도는 한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며, 나머지 30%만이 다중범죄피해자가 경험한 것이다.

사건조사표를 이용한 범죄유형의 구분에 기초한 피해분포를 제시한 <표 3>과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에 기초해 피해분포를 제시한 <표 1>의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가 당한 전체피해의 빈도는 <표 3>에서 나타난 결과가 <표 1>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낮다. <표 1>에서는 최대 피해건수로 18건까지 보고되었지만, <표 3>에서는 최대 5건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조사표를 기록하는 방식과도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가해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연속범죄의 경우 5건까지만 기록하도록 하였다⁷⁾. 다음으로 비교해볼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전체적으로 <표 1>보다는 <표 3>의 결과가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겠지만, 가구범죄에서 가구대표가 응답한 피해경험을 가구원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

7) 원래는 연속범죄의 경우 5회까지 사건조사표를 기록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착오로 인하여 2회까지 기록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다중범죄피해의 빈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타난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2번이상의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66명(1.56%)에 불과하다. 즉 전체 응답자 10671명 중에서 1.56%가 지난 1년동안 2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러한 빈도와 비율은 다중피해의 연구를 위한 분석을 위해서 충분한 사례라고 보기에 아쉬움이 있다.

2. 다중범죄피해자의 특성

다중범죄피해자들이 가지는 특성을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단과 1번만 피해를 당한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다중피해자 집단은 다시 3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가구범죄피해만 당한 집단(가구중복집단)과 대인범죄피해만 당한 집단(대인중복집단) 그리고 가구범죄피해와 대인범죄피해 모두 당한 집단(가구대인중복집단)이다⁹⁾. <표 4>는 다중피해집단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피해집단 유형과 명목척도로 구성된 배경변인간의 교차분석결과이다.

<표 4> 다중피해집단과 배경변인의 교차분석결과 (빈도(%))

| | 하위범주 | 피해없음 | 피해 1회 | 가구중복 | 대인중복 | 가구대인중복 | 합계 | 카이제곱 |
|----------|--------|------------|-----------|----------|----------|----------|-------|------------|
| 주거 유형 | 단독주택 | 3877(40.3) | 392(44.5) | 23(82.1) | 26(30.6) | 30(56.6) | 4348 | 38.9(8)*** |
| | 연립주택 | 1249(13.0) | 110(12.5) | 4(14.3) | 11(12.9) | 4(7.5) | 1378 | |
| | 아파트 등 | 4499(46.7) | 378(43.0) | 1(3.6) | 48(56.5) | 19(35.8) | 4945 | |
| | 계 | 9625(100) | 880(100) | 28(100) | 85(100) | 53(100) | 10671 | |
| 세대구성 | 미혼 | 856(8.9) | 82(9.3) | 1(3.6) | 5(5.9) | 3(5.7) | 947 | 26.1(12)** |
| | 부부 | 1833(19.0) | 127(14.4) | 6(21.4) | 9(10.6) | 3(5.7) | 1978 | |
| | 부모와 자녀 | 4989(51.8) | 479(54.4) | 17(60.7) | 51(60.0) | 35(66.0) | 5571 | |
| | 기타 | 1947(20.2) | 192(21.8) | 4(14.3) | 20(23.5) | 12(22.6) | 2175 | |
| | 계 | 9625(100) | 880(100) | 28(100) | 85(100) | 53(100) | 10671 | |

8) 이는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에서 가구범죄로 간주된 부분과 사건조사표의 문항에 의한 범죄 유형구분에서 가구범죄로 분류한 범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9) 다중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피해를 보고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후의 분석결과는 가구피해중복 집단은 28명, 대인피해중복집단은 85명, 가구와대인중복의 경우는 53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
|--------------|---------|------------|-----------|----------|----------|----------|-------|-------------|
| 성별 | 남자 | 4592(47.7) | 446(50.7) | 16(57.1) | 38(44.7) | 20(37.7) | 5112 | 6.4(4) |
| | 여자 | 5033(52.3) | 434(49.3) | 12(42.9) | 47(55.3) | 33(62.3) | 5559 | |
| | 계 | 9625(100) | 880(100) | 28(100) | 85(100) | 53(100) | 10671 | |
| 혼인여부 | 배우자 없음 | 3574(37.1) | 360(40.9) | 9(32.1) | 42(49.4) | 20(37.7) | 4005 | 10.4(4)* |
| | 배우자 있음 | 6051(62.9) | 520(59.1) | 19(67.9) | 43(50.6) | 33(62.3) | 6666 | |
| | 계 | 9625(100) | 880(100) | 28(100) | 85(100) | 53(100) | 10671 | |
| 직업 | 전문, 사무직 | 1883(19.6) | 178(20.2) | 4(14.3) | 16(18.8) | 8(15.1) | 2089 | 62.4(20)*** |
| | 서비스직 | 1448(15.0) | 158(18.0) | 7(25.0) | 17(20.0) | 12(22.6) | 1642 | |
| | 기능직 | 2023(21.0) | 171(19.4) | 8(28.6) | 9(10.6) | 8(15.1) | 2219 | |
| | 전업주부 | 1747(18.2) | 146(16.6) | 4(14.3) | 11(12.9) | 9(17.0) | 1917 | |
| | 학생 | 1332(13.8) | 162(18.4) | 3(10.7) | 24(28.2) | 7(13.2) | 1528 | |
| | 무직 | 1192(12.4) | 65(7.4) | 2(7.1) | 8(9.4) | 9(17.0) | 1276 | |
| | 계 | 9625(100) | 880(100) | 28(100) | 85(100) | 53(100) | 10671 | |
|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 버스 | 3666(38.1) | 290(33.0) | 11(39.3) | 32(37.6) | 12(22.6) | 4011 | 24.7(12)* |
| | 지하철 | 992(10.3) | 97(11.0) | 1(3.6) | 5(5.9) | 9(17.0) | 1104 | |
| | 자가용 | 3444(35.8) | 327(37.2) | 9(32.1) | 28(32.9) | 22(41.5) | 3830 | |
| | 기타 | 1523(15.8) | 166(18.9) | 7(25.0) | 20(23.5) | 10(18.9) | 1726 | |
| | 계 | 9625(100) | 880(100) | 28(100) | 85(100) | 53(100) | 10671 | |

* p<.05, ** p<.01, *** p<.001

먼저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주거유형과 다중피해집단간에는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피해없는 집단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40.3%)이 아파트등에 거주하는 비율(46.7%)보다 약간 높으며, 피해1회집단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과 아파트의 비율은 44.5%와 43%로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다중피해집단의 경우 주거형태는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낸다. 가구중복집단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82.1%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대인중복집단의 경우에는 아파트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56.5%로 피해없음이나 피해1회집단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대인중복집단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56.5%)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가구범죄의 피해를 반복해서 당하는데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구성형태와 다중피해형태의 관계는 $p<.01$ 에서 유의미하다. 다중피해를 경험한 세 집단 모두 피해없음과 피해1회집단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구대인중복집단의 경우 이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중복집단의 경우에는 부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범죄피해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중복집단에서 남자의 비율이, 대인중복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에

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혼인여부는 $p < .05$ 에서 다중피해집단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대인중복집단에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중복집단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음 표에서 살펴볼 집단별 응답자의 연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은 다중범죄피해집단과 매우 강한 관계를 보인다. 가구중복집단에서는 서비스직과 기능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중복집단에서는 학생의 비율이, 가구대인중복집단에서는 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 사무직의 비율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1회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p < .05$ 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가구대인중복집단에서 지하철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중복집단과 대인중복집단에서는 기타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 다중범죄피해집단별 배경변인 평균차이 분포

| | 피해없음 | 피해 1회 | 가구중복 | 대인 중복 | 가구 대인중복 | 합계 | F |
|---------|------------------|------------------|------------------|------------------|------------------|------------------|-----------------|
| 사례수 | 9625 | 880 | 28 | 85 | 53 | 10671 | |
| 만나이 | 44.74 (17.90) | 40.92 (16.93) | 43.25 (14.82) | 34.26 (14.91) | 38.72 (13.45) | 44.31 (17.82) | 17.57 (0.00) |
| 거주연수 | 15.05 (17.12) | 13.31 (15.49) | 17.35 (17.78) | 7.46 (6.72) | 13.58 (15.08) | 14.84 (16.94) | 6.09 (0.00) |
| 이사횟수 | 0.52 (0.80) | 0.59 (0.89) | 0.25 (0.44) | 0.78 (0.96) | 0.87 (1.06) | 0.53 (0.81) | 6.29 (0.00) |
| 최종학력 | 3.12 (1.21) | 3.17 (1.13) | 2.89 (1.13) | 3.08 (0.90) | 3.21 (0.95) | 3.13 (1.20) | 0.69 (0.598) |
| 본인소득 | 3.10 (1.39) | 3.19 (1.36) | 3.11 (1.17) | 2.89 (1.39) | 3.08 (1.30) | 3.10 (1.39) | 1.44 (0.218) |
| 가구 전체소득 | 3.96 (1.33) | 4.06 (1.26) | 3.75 (0.93) | 3.98 (1.34) | 3.89 (1.38) | 3.97 (1.33) | 1.42 (0.223) |

* 셀의 숫자는 평균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이며, 괄호안이 유의확률임.

〈표 5〉은 다중범죄피해집단별 배경변인의 평균차이를 보여준다. 만나이와 거주연수, 이사횟수는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만, 최종학력이나 본인소득, 가구전체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최종학력이나 본인 및 가구의 소득과 같은 변인은 다중피해와 관련이 없다. 먼저 만나이를 살펴보면 피해없는 집단이 평균연령이 가장 높다. 대인중복집단이 평균연령이 가장 낮아서 34세 가량이며 다음이 가구대인중복으로 38세가량이다. 가구피해의 경우 평균연령이 높고, 대인피해의 경우 평균연령이 낮은 경

향을 보인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대인중복집단의 경우 평균 7년 정도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평균 7-10년 정도 거주기간이 짧다. 피해1회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이 13년 정도로 비슷한 거주기간을 보였다. 반대로 이사횟수는 가구중복의 경우 가장 낮았으며, 가구대인중복집단이 가장 높았다. 가구중복피해집단의 특성은 평균연령이 높고 한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이사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특성을 보인다.

〈표 6〉 다중범죄피해집단별 범죄두려움, 생활양식, 환경적 요인 분포

| | 피해없음 | 피해 1회 | 가구 중복 | 대인 중복 | 가구 대인중복 | 합계 | F |
|-------------|-----------------|-----------------|-----------------|-----------------|-----------------|-----------------|-----------------|
| 사례수 | 9625 | 880 | 28 | 85 | 53 | 10671 | |
| 범죄 두려움 | 8.09 (3.16) | 8.74 (3.27) | 9.36 (2.90) | 9.27 (3.18) | 9.34 (3.14) | 8.17 (3.17) | 13.85 (0.00) |
| 범죄피해 가능성 인지 | 6.09 (1.72) | 6.61 (1.68) | 7.36 (1.28) | 6.89 (1.78) | 7.17 (1.79) | 6.15 (1.72) | 31.21 (0.00) |
| 범죄심각성인지 | 7.79 (1.54) | 8.11 (1.41) | 8.64 (1.06) | 8.34 (1.19) | 8.28 (1.46) | 7.82 (1.53) | 14.57 (0.00) |
| 범죄피해예방행동 | 8.47 (1.83) | 8.75 (1.77) | 8.75 (2.01) | 9.01 (1.50) | 8.85 (1.41) | 8.50 (1.83) | 6.96 (0.00) |
| 범죄유형별 두려움 | 22.32 (7.41) | 24.90 (7.25) | 27.46 (8.16) | 26.00 (7.35) | 26.28 (6.51) | 22.60 (7.44) | 35.53 (0.00) |
| 동네의 이웃관계 | 19.00 (4.50) | 18.99 (4.30) | 19.54 (3.45) | 18.19 (4.24) | 18.08 (4.84) | 18.99 (4.48) | 1.34 (0.251) |
| 늦은 귀가(역방향) | 4.78 (2.48) | 4.40 (2.47) | 4.46 (2.12) | 4.05 (2.39) | 4.06 (2.27) | 4.74 (2.48) | 7.62 (0.00) |
| 집이 비어 있는 시간 | 3.24 (1.53) | 3.43 (1.49) | 3.93 (1.41) | 3.71 (1.55) | 3.43 (1.42) | 3.26 (1.53) | 6.28 (0.00) |
| 물리적 취약성 | 7.68 (2.49) | 8.20 (2.53) | 8.29 (3.13) | 8.72 (2.60) | 8.91 (2.40) | 7.74 (2.50) | 15.41 (0.00) |
| 사회적 취약성 | 7.58 (2.39) | 8.13 (2.45) | 9.04 (2.56) | 8.95 (2.28) | 9.02 (2.52) | 7.64 (2.41) | 24.19 (0.00) |
| 범죄에 대한 주민반응 | 13.01 (2.92) | 13.13 (2.93) | 13.36 (2.64) | 13.58 (2.53) | 12.79 (3.25) | 13.02 (2.92) | 1.28 (0.276) |
| 동네 이웃과의 친밀도 | 11.76 (4.58) | 11.68 (4.61) | 13.04 (4.18) | 10.71 (4.14) | 11.51 (5.20) | 11.75 (4.58) | 1.74 (0.138) |
| 경찰활동인식 | 12.64 (2.74) | 11.92 (2.74) | 12.00 (2.58) | 11.59 (2.75) | 11.00 (2.45) | 12.56 (2.75) | 21.09 (0.00) |

* 셀의 숫자는 평균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이며, 괄호안이 유의확률임.

〈표 6〉에는 범죄의 두려움, 개인의 생활양식과 환경적 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네의 이웃관계, 범죄에 대한 주민의 반응, 동네 이웃과의 친밀도 등 세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다중피해집단은 피해없는 집단에 비해서 훨씬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구중복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이 가장 높은 두려움의 정도를 보였다.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 일반적인 범죄두려움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는데, 가구중복피해를 당한 집단이 범죄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에서도 다중피해집단이 우리나라의 범죄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구중복집단이 우리나라의 범죄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예방행동도 다중피해집단이 피해없는 집단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특한 점은 대인중복집단이다. 앞서 살펴본 두려움의 인지에 있어서는 다른 다중피해집단보다 낮았지만 범죄예방행동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인지와 행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별범죄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역시 다중피해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두려움의 정도를 보였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상식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분석의 결과 역시 여러 번 피해를 당한 다중피해집단이 범죄의 두려움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할 기회를 의미하는 생활양식변인인 늦은 귀가빈도와 집을 비워두는 시간도 생활양식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중피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늦은 귀가¹⁰⁾가 많았고, 집을 비워두는 시간도 더 길었다. 늦은 귀가빈도에서는 대인중복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이 가장 높았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서는 가구중복집단과 대인중복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많아 더 많이 노출될수록 대인피해를 많이 당하고, 집을 비워두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구피해를 많이 당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리적 및 사회적 취약성의 측면에서도 다중피해집단은 피해없는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약간의 점수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다중피해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

10) 설문지에서 응답지의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져서, 점수가 낮을수록 늦은 귀가빈도가 많은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찍 귀가한 것을 의미한다.

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중피해집단은 피해없는 집단에 비해서 대체로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성실도에 대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7〉 다중범죄피해집단별 기초질서위반행위 분포

| | 피해없음 | 피해 1회 | 가구중복 | 대인중복 | 가구대인중복 | 합계 | F |
|--------------------------|----------------|----------------|----------------|----------------|----------------|----------------|-----------------|
| 사례수 | 9625 | 880 | 28 | 85 | 53 | 10671 | |
|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 않고 그냥 버림 | 1.39 (0.83) | 1.48 (0.90) | 1.29 (0.53) | 1.93 (1.15) | 1.30 (0.54) | 1.40 (0.83) | 11.01 (0.00) |
| 무단횡단이나 새치기 등 기초 질서 위반 | 1.64 (0.86) | 1.82 (0.94) | 1.96 (0.96) | 2.16 (1.08) | 2.08 (1.07) | 1.66 (0.87) | 19.17 (0.00) |
| 가족 중 누군가와 말다툼이나 몸싸움 | 1.40 (0.70) | 1.56 (0.82) | 1.29 (0.60) | 1.91 (1.12) | 2.04 (1.09) | 1.42 (0.72) | 30.64 (0.00) |
| 가족 이외 누군가와 말다툼이나 몸싸움 | 1.23 (0.50) | 1.31 (0.60) | 1.25 (0.65) | 1.47 (0.75) | 1.62 (0.90) | 1.24 (0.52) | 15.51 (0.00) |

* 셀의 숫자는 평균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이며, 괄호안에 유의확률임.

〈표 7〉에서는 응답자들의 기초질서위반행동과 다중범죄피해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 범죄피해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일탈행동 또는 범죄행동과 범죄피해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4가지의 기초질서위반행동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피해가 없거나 1회만 피해가 있는 사람들보다 기초질서위반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다중피해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중복집단의 경우 무단횡단 등의 기초질서위반은 높았지만 다른 위반행동은 오히려 더 낮은 면을 보였다. 대인중복집단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위반행동을 보였으며, 가구대인중복집단의 경우 쓰레기버리기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상에서 교차분석과 평균차이분석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중심으로 각 다중피해집단이 지니는 특징적 면을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가구중복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고, 기능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고, 평균연령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단과 비슷하며, 한 곳에 오래 거주하며, 이사를 덜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이며, 집이 비어있는 시간도 가장 길다. 사회적 취약성도 가장 높아서 동네사람들에 의한 부정적 모습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무단횡단이나 새치기 등의 기초질서위반행위는 많이 하지만 나머지 기초질서위반행위는 다른 집단보다 덜 한다.

대인중복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학생의 비율이 높고, 평균나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낮고, 한 곳에 거주하는 기간도 가장 짧고 이사 횟수도 많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다중피해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밤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가장 많으며, 사는 동네의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편이다. 기초질서위반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이다.

가구대인중복집단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서비스직과 무직의 비율이 높으며, 평균나이는 낮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젊다. 한곳에 거주하는 기간은 중간정도이지만 이사빈도는 가장 많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고,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상당히 높으며, 경찰의 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낮다. 몸싸움과 관련된 기초질서위반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

V. 다중범죄피해의 요인

다중피해집단을 다른 두 집단(피해없는 집단과 피해1회집단)과 구분해 주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명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모델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적합도 검증 결과

| | 카이 제곱 | 자유도 | 유의확률 |
|-----|-----------|-------|-------|
| 피어슨 | 20420.031 | 21284 | 1.000 |
| 편차 | 7502.587 | 21284 | 1.000 |

〈표 8〉의 결과는 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테스트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피어슨 값과 편차통계치는 카이제곱 분포를 가진다. 통계적 유의도가 0.1보다 높기 때문에 자료가 모델의 가정과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모형의 적합도 검증

| 모형 | 모델 맞춤 기준 | 우도비 검증 | | |
|------|----------|---------|-----|------|
| | -2 로그 우도 | 카이 제곱 | 자유도 | 유의확률 |
| 절편 만 | 7755.839 | | | |
| 최종모형 | 7506.746 | 249.093 | 34 | .000 |

〈표 9〉의 카이제곱은 절편만 있는 모델과 최종모형의 -2로그우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값이 249.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에 최종모형은 우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10〉 1회피해집단을 기준으로한 명목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인 | 피해없는집단 | | | | | 다중피해집단 | | | | |
|------------|--------|-------|--------|-----|-------|--------|-------|------|-----|-------|
| | B | 표준 오차 | Wald | 자유도 | 유의 확률 | B | 표준 오차 | Wald | 자유도 | 유의 확률 |
| 절편 | 3.85 | .38 | 102.67 | 1 | .000 | -.16 | .91 | .03 | 1 | .859 |
| 만나이 | .01 | .00 | 4.94 | 1 | .026 | -.03 | .01 | 9.44 | 1 | .002 |
| 물리적 취약성 | -.03 | .02 | 3.00 | 1 | .083 | -.03 | .04 | .42 | 1 | .515 |
| 사회적 취약성 | -.05 | .02 | 6.59 | 1 | .010 | .11 | .05 | 6.29 | 1 | .012 |
| 학력 | -.01 | .03 | .07 | 1 | .794 | -.12 | .10 | 1.68 | 1 | .195 |
| 가구수입 | -.02 | .03 | .52 | 1 | .472 | -.14 | .08 | 3.20 | 1 | .074 |
| 늦은 귀가(역방향) | .01 | .02 | .32 | 1 | .570 | -.03 | .04 | .41 | 1 | .524 |
| 집이 비어있는 시간 | -.05 | .02 | 4.34 | 1 | .037 | .08 | .06 | 2.03 | 1 | .154 |
| 기초질서위반행동 | -.06 | .02 | 15.08 | 1 | .000 | .10 | .03 | 8.60 | 1 | .003 |
| 주거유형: 단독주택 | -.31 | .08 | 13.51 | 1 | .000 | .15 | .19 | .62 | 1 | .431 |
| 주거유형: 연립주택 | .01 | .12 | .01 | 1 | .938 | -.09 | .29 | .09 | 1 | .760 |
| 주거유형: 아파트등 | .00 | . | . | 0 | . | .00 | . | . | 0 | . |
| 성별: 남자 | -.13 | .08 | 2.40 | 1 | .122 | -.34 | .19 | 3.09 | 1 | .079 |
| 성별: 여자 | .00 | . | . | 0 | . | .00 | . | . | 0 | . |
| 혼인여부: 무배우자 | -.01 | .10 | .01 | 1 | .908 | -.48 | .24 | 3.86 | 1 | .050 |
| 혼인여부: 유배우자 | .00 | . | . | 0 | . | .00 | . | . | 0 | . |
| 직업: 전문사무직 | -.29 | .17 | 3.00 | 1 | .083 | -.89 | .37 | 5.81 | 1 | .016 |
| 직업: 서비스직 | -.48 | .17 | 8.29 | 1 | .004 | -.63 | .35 | 3.36 | 1 | .067 |
| 직업: 기능직 | -.25 | .16 | 2.51 | 1 | .113 | -.93 | .36 | 6.81 | 1 | .009 |
| 직업: 전업주부 | -.45 | .17 | 6.74 | 1 | .009 | -.96 | .39 | 6.07 | 1 | .014 |
| 직업: 학생 | -.30 | .19 | 2.44 | 1 | .118 | -1.17 | .40 | 8.58 | 1 | .003 |
| 직업: 무직 | .00 | . | . | 0 | . | .00 | . | . | 0 | . |

〈표 10〉은 종속변인의 세 범주, 즉 피해없는 집단, 피해1회집단, 다중피해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명목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기준이 되는 집단은 1회피해를 당한 집단으로서 〈표 10〉의 좌측에 제시된 것은 피해1회집단과 피해없는 집단의 비교결과이며, 우측에 제시된 것은 피해1회집단과 다중피해집단의 비교결과이다.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것은 배경변인들과 생활양식변인, 취약성 변인, 기초질서위반행동이다.

피해없는 집단과의 비교에서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만나이, 사회적 취약성, 집이 비어있는 시간, 기초질서위반행동, 주거유형중 단독주택, 직업 중에서 서비스직과 전업주부이다. 이 중에서 기초질서위반행동과 주거유형: 단독주택은 $p < .001$ 에서, 사회적 취약성과 직업: 서비스직과 전업주부는 $p < .01$ 에서 만나이와 집이 비어있는 시간은 $p < .05$ 에서 유의미하다. 나이가 많으며, 사회적 취약성이 낮으며,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적으며, 기초질서위반행동을 덜할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으며, 서비스직과 전업주부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 피해없는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중피해집단과의 비교에서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만나이, 사회적 취약성, 기초질서위반행동, 혼인여부: 배우자없음, 직업에서 전문사무직, 기능직, 전업주부, 학생의 항목이다. 만나이, 기초질서위반행동, 직업: 기능직과 학생은 $p < .01$ 에서, 사회적 취약성, 혼인여부: 배우자없음, 직업: 전문사무직과 전업주부는 $p < .05$ 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만나이가 적을수록, 사회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기초질서위반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며, 전문사무직, 기능직, 전업주부, 학생의 비율이 낮을 때 다중피해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두 분석을 비교하면 피해없는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집이 비어있는 시간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중피해집단과의 비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집이 비어 있는 시간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첫 번째 피해를 당하는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첫 번째 피해이후 다중피해를 설명하는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혼인상태는 피해없는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중피해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중피해집단에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없는 집단과 첫 번째 범죄피해를 당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집단과 2번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즉 첫 번째 피해를 당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다중피해를 당하도록 하는데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맺는 말

이상에서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VI)의 자료를 이용해서 다중범죄피해의 실태와 집단별 특징, 다중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몇가지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중범죄피해 분포의 추정결과 범죄피해가 소수의 피해자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범죄피해건수의 70%정도는 1회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미국의 조사결과,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추가적인 피해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실태가 보편적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이유를 찾아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중범죄피해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특징적인 점들을 구분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다중피해집단 유형별로 배경적 특성,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본 피해조사자료에서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1번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처음 범죄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참신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부분 범죄피해를 처음 경험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사하게 반복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asley와 Rosenbaum (1988)이 일상적 활동관점에서 반복피해를 분석하였을 때, 반복피해에의 과정이 단독피해의 과정과 유사하였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Osborn과 동료들(1996)은 반복피해자가 단일피해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증거는 약하지만, 첫 번째 피해가 미래 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다중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

타난 바와 같이 다중피해의 연구에 있어서 다중피해자와 단일피해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에 이러한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피해가 이후의 피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종단적인 자료의 축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rr, R., and Pease, K. (1990) "Crime placement, displacement and deflection," in Tonry, M., and Morris, N. (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77-315
- Ellingworth, D., Farrell, G., & Pease, K. (1995) "A victim is a victim is a victim? Chronic victimization in four sweeps of the British Crime Surve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 360-365.
- Farrell, G. (1992) "Multiple victimization: Its extent and significance," *International Review of Criminology* 2 : 85-102
- Farrell, G., Phillips, C., & Pease, K. (1995) "Like taking candy: Why does repeat victimization occur?"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384-399.
- Finkelhor, D., Ormrod, R.K, Turner, H. A., & Hamby, S.L. (2005a). "The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youth: A comprehensive, national survey," *Child Maltreatment* 10, 5-25.
- Finkelhor, D., R.K. Ormroda, H. A. Turner and S. L. Hambyb, (2005b)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9 : 1297-1312
- Gottfredson, M. (1984) *Victims of Crime: The Dimensions of Risk*, Home Office Research Study 81,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ondon.
- Hindelang, M., Gottfredson, M., and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Ballinger, Cambridge, MA.
- Jensen, G., and Brownfield, D. (1986). "Gender,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theory," *Violence Victims* 1 : 85-99
- Lasley, J. R., & Rosenbaum, J. L. (1988) "Routine activities and multiple personal victimiz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3: 47-50
- Lauritsen, J. L. and K. F. D. Quinet, (1995) "Repeat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and

- young adul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2) : 143-166
- Lila, M., Juan Herrero, and Enrique Gracia, (2008) "Multiple Victimization of Spanish Adolescents: A Multilevel Analysis," *Adolescence* 43 : 333-350
- Menard, S., & Huizinga, D., (2001) "Repeat victimization in a high-risk neighborhood sample of adolescents," *Youth & Society* 32: 447-72
- Nelson, J.F., (1984) "Multiple victimization in American cities: A statistical analysis of rare ev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870-891
- Osborn, D.R., Ellingworth, D., Hope, T., & Trickett, A. (1996) "Are repeatedly victimized households differen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2: 223-245
- Pease, K., & Laycock, G. (1997) *Revictimization: Reducing the heat on hot victims*. Rockville, MD: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Reiss, A. (1980) "Victim proneness in repeat victimization by type of crime," in Fienberg, S., and Reiss, A. (eds.), *Indicators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Quantitative Studies*,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pp. 41-53
- Richmond, J.M., Pierce, T.W., Aspelmeier, J.E. and Alexander, A.A., (2009) "Polyvictimization, Childhood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Child Maltreatment* 14(2) : 127-147
- Saunders, B.E., (2003) "Understanding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Toward an integration of overlapping fiel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356-376.
- Sparks, R. (1981) "Multiple victimization: Evidence, theory,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 : 762-778
- Tseloni, A. and K. Pease, (2004) "Repeat Personal Victimization : Random Effects, Event Dependence and Unexplained Heterogene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
- Turner, H.A., Finkelhor, D. and Ormrod, R., (2010)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323-330
- Van Kesteren, J., Mayhew, P. and Nieuwbeerta, P., (2000) *Criminal Victimization in Seventeen Industrialized Countries*. NSCR/WODC. Leiden, Den Ha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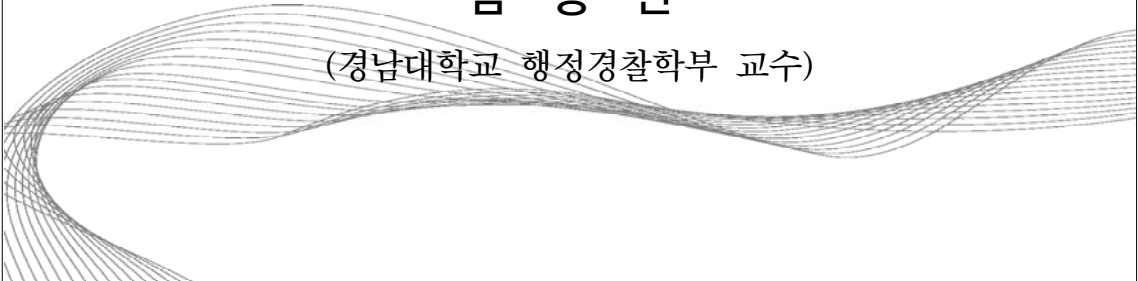
Winkel, F.W., E.Blaauw, L. Sheridan and A.C. Baldry, (2003) "Repeat criminal victimization and vulnerability for coping failure: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a potential risk factor," *Psychology, Crime and Law* 9 : 87-95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폭력 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김 성 언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폭력 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김 성 언*

I. 문제제기

상당수의 연구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범죄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폭력피해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Cohen and Felson, 1979; Goffredson, 1986; Miethe, Stafford, and Long, 1987).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LaGrange and Ferraro, 1989). 또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는 가장 적게 보고되는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피해의 실제적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Young, 1992). 더욱이 강간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유형의 폭력피해는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성별화 되어 있다고도 말해진다(Madriz, 1997). 2003년도 미국의 전국 범죄피해조사(NCV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주로 강도, 심한 폭행, 경미한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반면, 여성은 주로 성폭행과 강간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talano, 2004). 이 조사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유형은 각기 상이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성적인 학대와 성폭력이 폭력, 협박, 스토킹 등과 항상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종종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다(Edleson, 1999). 애인이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체폭력과 성폭력은 동시발생적인 경우가 많다. 아내와 여자 친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이들을 성적으로도 학대한다(Bergen, 2004; Finkelhor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and Yllo, 1985; Meyer, Vivian, and O'Leary, 1998; Russell, 1984, 1990; Schechter, 1982; Tjaden and Thoennes, 2000). 요컨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일반 폭력이 쉽게 구분되거나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폭력피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폭력피해에 대한 남녀의 신고율의 차이 혹은 신고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도 있다(Belknap, 2007: 275). 폭력피해를 감추고자 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비단 그 보고대상이 경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범죄피해조사에서조차 여성의 폭력피해율은 남성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성적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개인적인 일인데다 당황하거나 부끄러워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모멸감과 자기비난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범죄피해를 경찰이나 연구자에게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mith, 1994).

많은 조사연구들은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raungart, Braungart, and Hoyer, 1980; Clemente and Kleiman, 1976; LaGrange and Ferraro, 1989; Ortega and Myles, 1987). 그러나 일부 범죄학자들은 대부분의 범죄통계에서 여성 피해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의 높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비합리적 혹은 모순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Warr, 1984; Madriz, 1997에서 재인용; Belknap, 2007: 275). 이에 대해 영(Young, 1992)은 여성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면서도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두려움 수준과 피해율 수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연구자들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여성의 범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성폭력이나 구타가 남성이 경험하는 다른 범죄피해만큼 일관되게 경찰(또는 범죄피해조사)에 보고된다면 공식통계는 여성의 폭력피해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의 폭력피해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개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강간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통해 '폭력피해의 성별화'와 같은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다뤄지고 그에 기초한 해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일반적인 폭행이나 구타의 피해가 동시발생적이고 둘 간의 분리적 사고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적인 학대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신체적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과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문제와 자료

이 연구는 신체적 폭행 피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다루려는 것이다. 기존 논의와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은 폭행과 구타 피해자는 대개 남성이라는 관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 또한 폭행이나 상해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피해의 수준이나 정도 역시 남성에 못지않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또한 남성들은 중하고 심각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경미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관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의 결과는 신체피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폭력 피해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는 통상의 고정관념과 달리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폭력 피해에 대한 남녀 간의 비교는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부터 피해발생의 맥락,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결과와 비용, 피해 이후의 심리적·행동상의 변화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이 연구는 2009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폭력피해의 유형은 주로 폭행과 상해, 협박, 괴롭힘(스토킹)에 한정된다.¹⁾ 협박과 괴롭힘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 구타하려 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주는 행위 역시 무형적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폭력 피해율의 추이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는 신체적 폭력 피해율에 있어 남녀 간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1〉).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폭행과 상해 피해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피해자의 규모는 남성 피해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알 수

1) 강간, 살인, 강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구체적 형태이지만, 강간의 경우 범죄의 성격상 피해의 남녀차이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고, 살인은 피해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도의 경우 비록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거나 폭력 행사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는 재산범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있다. 전체 폭행 및 상해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이후로는 다시 낮아지고 있다. 즉 지난 10년 간 폭행 및 상해 피해자 규모를 남녀별로 비교해보면, 전반기 약 5년 동안에는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나, 후반기 약 5년을 보면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남성 폭행·상해 피해자의 규모는 여성의 약 1.55배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력행위) 피해자의 남녀 비중 추이 역시 폭행·상해의 추이와 유사하다. 다만 폭력행위 피해자 중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중은 폭행·상해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다. 2008년의 경우 전체 폭력행위 피해자 중 여성의 숫자는 남성의 약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협박 피해의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1999년만 해도 여성 협박 피해자의 규모는 남성 협박 피해자의 74%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성별에 따른 협박 피해자 규모상의 남녀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는 여성 협박 피해자의 규모가 남성의 그것을 넘어섰다. 2008년 여성 협박 피해자의 규모는 남성의 약 1.12배 수준이다.

〈표 1〉 공식통계상의 폭행·상해, 협박, 폭력행위 피해자 여성비¹ 추이

| 연도 | 폭행상해 | 협박 | 폭력행위 |
|------|------|------|------|
| 1999 | 0.56 | 0.74 | 0.43 |
| 2000 | 0.56 | 0.66 | 0.44 |
| 2001 | 0.58 | 0.97 | 0.47 |
| 2002 | 0.63 | 0.94 | 0.49 |
| 2003 | 0.62 | 0.96 | 0.53 |
| 2004 | 0.77 | 1.06 | 0.63 |
| 2005 | 0.75 | 0.91 | 0.60 |
| 2006 | 0.60 | 1.04 | 0.52 |
| 2007 | 0.55 | 1.02 | 0.43 |
| 2008 | 0.54 | 1.12 | 0.43 |

주 1: 연도별 여성비 = 연도별 여성 범죄피해자 수/연도별 남성 범죄피해자 수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년도).

〈표 2〉 공식통계상의 협박 피해에 대한 폭행·상해 피해비¹의 성별 비교

(단위: 명)

| 연도 | 폭행상해 피해자 | | 협박 피해자 | | 협박 피해자 비 | | 남성비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1999 | 16,417 | 9,253 | 410 | 304 | 40.0 | 30.4 | 1.32 |
| 2005 | 20,826 | 15,531 | 1,160 | 1,050 | 18.0 | 14.8 | 1.21 |
| 2006 | 76,091 | 45,720 | 1,335 | 1,383 | 57.0 | 33.1 | 1.72 |
| 2007 | 112,237 | 61,201 | 1,548 | 1,576 | 72.5 | 38.8 | 1.87 |
| 2008 | 115,103 | 62,409 | 1,733 | 1,934 | 66.4 | 32.3 | 2.06 |

주 1: 연도별 폭행·상해 피해비 = 연도별 폭행·상해 피해자 수/연도별 협박 피해자 수

주 2: 연도별 남성비 = 연도별 남성 협박 피해자 비/연도별 여성 협박 피해자 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0-2009년도).

공식통계상으로 봤을 때 유형의 신체적·물리적 폭력 피해 가능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고, 무형의 언어적·행동적 폭력 피해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녀 모두 협박 피해보다는 폭행 및 상해 피해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9년의 경우 남성의 폭행·상해 피해율은 협박 피해율의 약 40.0배이다. 여성의 폭행·상해 피해율은 30.4배이다. 2005년의 협박 피해율에 대한 폭행·상해 피해율의 비(ratio)는 남성이 18.0, 여성이 14.8로써 1999년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성별에 관계없이 간접적 혹은 언어적 폭력이나 위협보다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2006년부터는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계되던 일부 폭력의 유형(예, 야간에 발생한 폭행 혹은 상해)이 폭행이나 상해로 재분류됨에 따라 폭행과 상해 발생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다. 때문에 협박 피해에 대한 폭행·상해 피해비 역시 남녀에 관계없이 2006년 이후로 갑자기 높아졌다. 더욱이 1999년과 2005년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행·상해 피해비를 비교해 보면, 1999년보다 2005년의 수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폭행피해율과 협박피해율의 크기 차이가 좁혀지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그 남성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협박보다 폭행과 상해 피해를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 남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은 신체적 폭력 피해의 성별 차이에 대해 공식통계와는 다른 내용들을 전달한다. 〈표 3〉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된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남녀의 폭행 및 상해와 협박의 피해 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물론 지금까지 총 8차례 실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는 조사대상 지

역, 표본수, 표집대상, 표집방법, 피해의 측정 방식 등이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던 1990년 피해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조사의 경우, 추이 비교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각각의 조사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 및 상해 피해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증가추세를 포착할 수 있는 공식통계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더욱이 폭행·상해 피해율의 남녀 차이, 즉 남성의 폭행·상해 피해율에 대한 여성의 폭행·상해 피해율의 비(ratio)를 보면 1990년대에는 0.2 내외로 낮았으나 2000년대에는 줄곧 0.7 이상이고, 특히 2008년에는 0.96으로 폭행·상해 피해율상의 성차가 매우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공식통계와는 다른 결과이다.²⁾ 뿐만 아니라 〈표 3〉의 결과는 구타나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피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총 8차례의 범죄피해조사 중 협박과 괴롭힘(스토킹)을 별도로 측정한 것은 2009년도 조사뿐이다. 다만 1991년의 서울범죄피해조사와 2000년도에 실시한 세계범죄피해조사-한국편(전국조사)에서는 폭행과 상해, 협박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 200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협박피해율은 0.09%이고 남성의 협박피해율은 0.10%로서 여성의 피해율이 낮다. 이 또한 공식통계와는 다른 결과이다. 협박피해율만의 추이를 알 수 없어 폭행·상해·협박 피해를 동시에 측정했던 1999년을 기준으로 2008년의 변화를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상해·협박 피해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감소의 폭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다. 1999년의 경우 여성의 폭행·상해·협박 피해율은 남성의 0.43배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0.95배로 그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범죄피해조사 자료 역시 공식통계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협박보다는 폭행과 상해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3〉). 그렇지만 그 차이는 공식통계보다 훨씬 작다. 남자의 경우 협박 피해율에 대한 폭행·상해 피해율의 비는 4.19이고 여성은 4.45이다. 이는 공식통계와 달리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폭행·상해 피해율과 협박 피해율간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협박 피해율에 대한 폭행·상해 피해율의 비의

2) 2005년 피해율에 비해 2008년 피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실제 피해율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두 조사에서의 피해측정 방식이 상이한 데서 비롯된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2005년도 피해 조사에서는 '개념 중심'의 측정문항이 사용되었다면, 2008년 피해조사에서는 '행위 중심'의 측정문항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보고서 제3장 조사방법의 개편을 참고하면 좋다.

여성비는 1.06임). 요컨대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적·유형적 폭력피해보다는 간접적·무형적 폭력 피해를 더 많 이 경험한다는 가설은 유지되기 힘들다.

〈표 3〉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조사연도별 폭행·상해, 협박 피해 추이의 남녀 비교

(단위: 명, %)

| 피해발생 연도 | | 1993 | 1996 | 1998 | 1999 | 2002 | 2005 | 2008 | |
|----------|-------|-------|-------|-------|-------|-------|-------|-------|------|
| 표본연령기준 | | 14세 | 15세 | 15세 | 16세 | 15세 | 15세 | 14세 | |
| 표본수 | 남자 | 1,015 | 1,026 | 1,048 | 1,008 | 1,027 | 1,023 | 5,112 | |
| | 여자 | 1,014 | 1,014 | 1,052 | 1,035 | 1,021 | 1,027 | 5,559 | |
| 폭행·상해 | 피해 빈도 | 남자 | 44 | 32 | 32 | - | 7 | 4 | 21 |
| | | 여자 | 11 | 6 | 7 | - | 6 | 3 | 22 |
| | 피해율 | 남자 | 4.33 | 3.12 | 3.05 | - | 0.68 | 0.39 | 0.41 |
| | | 여자 | 1.08 | 0.59 | 0.67 | - | 0.59 | 0.29 | 0.40 |
| | 여성비 | | 0.25 | 0.19 | 0.22 | - | 0.86 | 0.75 | 0.96 |
| | 협박 | 피해 빈도 | 남자 | -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 - | 5 |
| 피해율 | | 남자 | - | - | - | - | - | - | 0.10 |
| | | 여자 | - | - | - | - | - | - | 0.09 |
| 여성비 | | - | - | - | - | - | - | 0.92 | |
| 폭행·상해·협박 | 피해 빈도 | 남자 | - | - | - | 45 | - | - | 26 |
| | | 여자 | - | - | - | 20 | - | - | 27 |
| | 피해율 | 남자 | - | - | - | 4.46 | - | - | 0.51 |
| | | 여자 | - | - | - | 1.93 | - | - | 0.49 |
| 여성비 | | - | - | - | 0.43 | - | - | 0.95 | |
| 폭행·상해비 | 피해 빈도 | 남자 | - | - | - | - | - | - | 4.20 |
| | | 여자 | - | - | - | - | - | - | 4.40 |
| | 피해율 | 남자 | - | - | - | - | - | - | 4.19 |
| | | 여자 | - | - | - | - | - | - | 4.45 |
| 여성비 | | - | - | - | - | - | - | 1.06 | |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000년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사용된 「2008년 기준 전국 범죄피해 조사」에서는 대인범죄 피해 유형으로 사기, 절도, 강도,

단순폭행, 심한폭행, 성폭행, 강제추행, 괴롭힘(스토킹), 단순협박 등 9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표 4>는 2008년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대인 재산범죄와 대인 폭력범죄의 유형별 피해율을 성별로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사기나 절도 피해의 경우 남성의 피해율이 여성의 피해율보다 모두 높다. 두 유형을 합친 재산범죄 피해율을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의 재산범죄 피해율은 남성의 약 0.84배에 해당한다. 반면 폭력범죄의 경우 성별에 따른 피해율의 차이는 재산범죄의 그것과 양상을 달리한다. 통념 혹은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강도피해율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으며 그 차이는 약 1.95배나 된다. 폭행의 경우에도 정도가 덜한 단순폭행은 여성의 피해율이 높고, 중한 폭행 피해율은 남성이 더 높다. 강제추행과 괴롭힘(스토킹)의 경우에도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단순협박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의 피해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 그렇지만 단순협박 피해율의 남녀간 차이는 심한폭행의 경우에 비하면 그리 큰 편이 아니다.

요컨대 <표 4>의 결과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생각들을 부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나 괴롭힘(스토킹)과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 상 여성의 피해가능성이 높은 범죄유형을 제외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표 4>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율의 남녀 비교

(단위: 명, %)

| 구 분 | | 표본수 | | 피해빈도 | | 피해율 | | 여성비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 재산 범죄 | 사기 | 5,064 | 5,524 | 131 | 116 | 2.59 | 2.10 | 0.81 |
| | 절도 | 5,021 | 5,479 | 174 | 161 | 3.47 | 2.94 | 0.85 |
| | 소계 | 5,195 | 5,640 | 305 | 277 | 5.87 | 4.91 | 0.84 |
| 폭력 범죄 | 강도 | 5,186 | 5,621 | 9 | 19 | 0.17 | 0.34 | 1.95 |
| | 단순폭행 | 5,187 | 5,627 | 8 | 13 | 0.15 | 0.23 | 1.50 |
| | 심한폭행 | 5,182 | 5,631 | 13 | 9 | 0.25 | 0.16 | 0.64 |
| | 성폭행 | 5,195 | 5,638 | - | 2 | - | 0.04 | - |
| | 강제추행 | 5,194 | 5,616 | 1 | 24 | 0.02 | 0.43 | 22.20 |
| | 괴롭힘 | 5,190 | 5,623 | 5 | 17 | 0.10 | 0.30 | 3.14 |
| | 단순협박 | 5,190 | 5,635 | 5 | 5 | 0.10 | 0.09 | 0.92 |
| | 소계1* | 5,195 | 5,640 | 41 | 87 | 0.79 | 1.54 | 1.95 |
| | 소계2** | 5,195 | 5,640 | 40 | 63 | 0.77 | 1.12 | 1.45 |
| | 소계3*** | 5,195 | 5,640 | 35 | 46 | 0.67 | 0.82 | 1.21 |

* 소계 1: 강도+단순폭행+심한폭행+강제추행+스토킹+단순협박

** 소계 2: 강도+단순폭행+심한폭행+스토킹+단순협박

*** 소계 3: 강도+단순폭행+심한폭행+단순협박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그런데 <표 4>는 단지 범죄유형별로 남녀의 피해발생 건수만을 보여줄 뿐이다. 동일한 범죄유형이라도 피해발생 맥락, 가해자의 동기,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유형,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 피해결과 등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폭력 피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혹은 유사성)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양상들을 비교하는 작업이 덧붙여져야 한다.

IV. 폭력 피해의 발생 맥락과 결과의 성별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는 이전의 조사보다 표본수를 약 4배가량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폭력피해가 있었던 응답자의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피해발생과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들을 일반화하기는 힘들며 그에 대한 해석은 탐색적인 의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아래에서는 남녀 폭행·상해, 협박·괴롭힘(스토킹)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발생의 맥락, 사건에 대한 대응, 피해의 결과 등을 비교할 것이다. 폭행·상해 피해 사건 수는 남성이 21건, 여성이 22건이다. 협박·괴롭힘 피해 사건 수는 남성이 10건, 여성이 22건이다.

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남녀 폭행·상해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자는 10대 비율이 45.0%로 가장 높고, 여자는 20대 비율이 38.1%로 가장 높다. 남성 폭행·상해 피해자 10명 중 6명은 20대 이하이고, 여성 폭행·상해 피해자의 절반(52.4%)이 20대 이하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 폭행·상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폭행 및 상해 피해자의 성별 평균연령은 남자가 28.8세, 여자가 35.1세로 여성이 좀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협박·괴롭힘의 경우 남성피해자의 평균 연령(32.3세)이 여성(28.6

세)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의 경우 40대 피해자가 전체의 40.4%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여성은 20대 피해자 비율이 50.0%이다.

폭행 및 상해 피해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본인소득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소득수준별 분포가 유사하다. 다만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되는 중상층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이 조금 더 높다. 이에 반해 협박·괴롭힘 피해에서는 남녀의 소득수준별 차이가 발견된다. 본인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은 월평균 3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비율이 40%로 가장 높지만, 여성은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 비율이 54.5%로 절반이 넘는다. 협박·괴롭힘 피해자의 가구소득을 보면, 남성 피해자의 60%가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인데 비해, 여성 피해자의 54.5%는 200만 원 미만이다. 즉 협박·괴롭힘 피해의 경우 여성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남성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 피해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폭행·상해 피해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남녀 모두 미혼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 남성이 좀더 크다. 하지만 협박·괴롭힘의 경우 남성 피해자의 60%는 기혼인데 비해, 여성 피해자의 68.2%는 미혼이다. 즉 20대 미혼 여성의 협박·괴롭힘 피해비율이 다른 조건의 여성들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남성 폭행·상해 피해자의 절반(55.0%)이 고등학교 학력자이며, 대학 이상의 비율은 15.0%로 낮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별 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더군다나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피해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협박·괴롭힘 피해의 경우 남녀 모두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이다.

폭행·상해 피해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남성의 절반은 학생이고 기능직 종사자(20%)의 구성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지만, 여성 피해자의 경우 학생(23.8%), 관리전문직(19.0%), 전업주부(14.3%), 무직/기타(14.3%), 판매서비스직(9.5%), 단순노무직(9.5%) 등 특정 직업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괴롭힘 피해의 경우, 남성은 학생(40.0%)이나 관리전문직(30.0%)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무직/기타(31.8%)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22.7%), 전업주부(18.2%), 학생(18.2%) 순이다. 협박·괴롭힘 피해자 중 화이트칼라층(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율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40%이나 여성은 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폭행·상해 피해자 중 화이트칼라층의 비율은 남성이 5%이나 여성은 23.8%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표 5〉 남녀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단위: 명, %)

| 구 분 | | 폭행·상해 | | 협박·괴롭힘 |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연령 | 10대 | 9 (45.0) | 3 (14.3) | 3 (30.0) | 3 (13.6) |
| | 20대 | 3 (15.0) | 8 (38.1) | 1 (10.0) | 11 (50.0) |
| | 30대 | 2 (10.0) | 2 (9.5) | 2 (20.0) | 5 (22.7) |
| | 40대 | 3 (15.0) | 2 (9.5) | 4 (40.4) | 3 (13.8) |
| | 50대 | 2 (10.0) | 5 (23.8) | - | - |
| | 60대 이상 | 1 (5.0) | 1 (4.8) | - | - |
| | 평균 연령 | 28.8(15.6) | 35.1(16.7) | 32.3(13.8) | 28.6(8.1) |
| 본인 소득 | 100만원 미만 | 6(30.0) | 6(28.6) | 3(30.0) | 12(54.5) |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4(20.0) | 6(28.6) | 1(10.0) | 7(31.8)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5(20.0) | 3(14.3) | 2(20.0) | 1(4.5) |
| | 300만원 이상 | 5(20.0) | 6(28.6) | 4(40.0) | 2(9.1) |
| 가구 소득 | 200만원 미만 | 8(40.0) | 8(38.1) | 1(10.0) | 12(54.5)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4(20.0) | 5(23.8) | 0(0.0) | 4(18.2) |
|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6(30.6) | 2(9.5) | 6(60.0) | 3(13.6) |
| | 500만원 이상 | 2(10.0) | 6(28.6) | 3(30.0) | 3(13.6) |
| 혼인 상태 | 미혼 | 13(65.0) | 11(52.4) | 4(40.0) | 15(68.2) |
| | 배우자 있음 | 7(35.0) | 8(38.1) | 6(60.0) | 5(22.7) |
| | 이혼 | 0(0.0) | 2(9.5) | - | 2(9.1) |
| 교육 수준 | 중학교 이하 | 6(30.0) | 8(38.1) | 2(20.0) | 1(4.5) |
| | 고등학교 | 11(55.0) | 7(33.3) | 1(10.0) | 8(36.4) |
| | 대학 이상 | 3(15.0) | 6(28.6) | 7(70.0) | 13(59.1) |
| 직업 | 관리전문직 | 0(0.0) | 4(19.0) | 3(30.0) | 1(4.5) |
| | 사무직 | 1(5.0) | 1(4.8) | 1(10.0) | 1(4.5) |
| | 판매서비스직 | 0(0.0) | 2(9.5) | 1(10.0) | 5(22.7) |
| | 농어업 | 2(10.0) | 1(4.8) | - | - |
| | 기능직 | 4(20.0) | 0(0.0) | 1(10.0) | - |
| | 단순노무직 | 1(5.0) | 2(9.5) | - | - |
| | 전업주부 | 0(0.0) | 3(14.3) | - | 4(18.2) |
| | 학생 | 10(50.0) | 5(23.8) | 4(40.0) | 4(18.2) |
| | 무직/기타 | 2(10.0) | 3(14.3) | - | 7(31.8) |

2. 피해의 발생맥락

폭행, 상해, 협박과 괴롭힘(스토킹)은 전형적인 대인범죄들이다. 대개의 대인범죄는 개인 혹은 집단간 상호작용이나 인간관계를 매개로 발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발생할 때조차 사건이 야기되기 직전 두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 다툼이 있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갈등 또는 다툼이라는 매개 요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폭력피해를 당하는 남녀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가?

〈표 6〉은 폭행·상해와 협박 및 괴롭힘이 발생하는 맥락을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먼저 피해건수를 보면, 폭행·상해이든 협박·괴롭힘이든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중복적인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 혹은 반복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중복적인 피해를 경험한 여성 피해자를 보면, 폭행 및 상해에서는 동일 가해자에 의한 반복적 범행이었으나, 협박·괴롭힘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해자들에 의해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상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1 대 1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좀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의 가해자가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비율은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 협박·괴롭힘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피해자 혼자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가해자 수를 보면 남자 피해자의 71.4%는 2명 이상의 가해자로부터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80.0%가 1명의 가해자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여성의 경우 가해자와의 1 대 1의 관계 속에서 협박·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10명 중 9명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남성피해자의 경우 10명 중 7명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3명은 누가 자신을 가해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박·괴롭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10명 중 3명은 누가 가해자인

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폭행·상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족이나 친척은 제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78.6%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여성이 피해를 입은 폭행·상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45.0%)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나, 피해자가 남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여성은 가족(친척이나 전 남편 포함)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행·상해 피해를 입은 여성 4명 중 1명은 가해자가 남편이나 (조)부모, 혹은 전 남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이 피해를 입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1/4은 가정폭력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우, 남성 피해자는 가해자가 학교 선·후배,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았고, 여성 피해자는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 학교 선·후배, 그냥 안면만 있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좀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숫자는 작지만 남녀 모두 직장동료나 직장상사/선생님으로부터의 폭행·상해 피해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혹은 학교 내 폭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 결과는 남성 못지않게 여성 또한 직장/학교 내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 행해진 폭행·상해 사건도 있었는데, 그 피해는 남성이 21.6%, 여성은 30.0%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6〉 남녀 폭행 상해 피해자의 피해사건 특성 비교

(단위: 명, %)

| 구 분 | 항 목 | 폭행·상해 | | 협박·스토킹 |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피해건수 | 1회 | 18 (85.7) | 17 (77.3) | 7 (70.0) | 13 (59.1) |
| | 2회 이상 | 3 (14.3) | 5 (22.7) | 3 (30.0) | 9 (40.9) |
| | 평균 ¹ | 1.43 (1.21) | 1.50 (1.01) | 1.80 (1.48) | 2.27 (1.78) |
| 반복피해 2 여부 | 그렇다 | 3 (100.0) | 5 (100.0) | 1 (33.3) | - |
| | 아니다 | - | - | 2 (66.7) | 9 (100.0) |
| 전체 피해자 수 | 1명 | 13 (61.9) | 17 (77.3) | 10 (100.0) | 22(100.0) |
| | 2명 이상 | 8 (38.1) | 5 (22.7) | - | - |
| 가해자 인식여부 | 알 수 없음 | 7 (33.3) | 2 (9.1) | 3 (30.0) | 7 (31.8) |
| | 타인이 알려 줌 | - | - | 1 (10.0) | 0 (0.0) |
| | 직접 대면함 | 14 (66.7) | 20 (90.9) | 6 (60.0) | 15 (68.2) |

| | | | | | |
|---------------------|--------------|-----------|-----------|----------|-----------|
| 가해자 수 | 1명 | 11 (78.6) | 17 (85.0) | 2 (28.6) | 12 (80.0) |
| | 2명 이상 | 3 (21.4) | 3 (15.0) | 5 (71.4) | 3 (20.0) |
| 가해자 성별 ³ | 남자 | 13 (50.0) | 13 (50.0) | 3 (23.1) | 10 (76.9) |
| | 여자 | 1 (14.3) | 6 (85.7) | 2 (40.0) | 3 (60.0) |
| | 남녀 | - | 1 (100.0) | 2 (50.0) | 2 (50.0) |
| 가해자의 신분 | 모르는 사람 | 3 (21.4) | 6 (30.0) | 2 (28.6) | 3 (20.0) |
| | 아는 사람 | 11 (78.6) | 9 (45.0) | 5 (71.4) | 12 (80.0) |
| | 친구 | 1 (7.1) | - | 1 (10.0) | - |
| | 애인(전애인) | - | 1 (6.7) | - | 1 (6.7) |
| | 학교선후배 | 4 (28.6) | 2 (13.3) | - | 2 (13.3) |
| | 직장동료 | 1 (7.1) | 1 (6.7) | 3 (30.0) | 1 (6.7) |
| | 직장상사/선생님 | 1 (7.1) | 1 (6.7) | - | 1 (6.7) |
| | 거래관계자 | - | - | - | 1 (6.7) |
| | 이웃/잘 아는 사람 | 3 (21.4) | 4 (26.7) | - | 4 (26.7) |
| | 안면만 있음 | 1 (7.1) | 2 (13.3) | 1 (10.0) | 2 (13.3) |
| | 가족 | 0 (0.0) | 5 (25.0) | - | - |
| | 남편/아내 | - | 2 (13.3) | - | - |
| (조)부모 | - | 2 (13.3) | - | - | |
| 전남편 | - | 1 (6.7) | - | - | |
| 가해 동기 ⁴ | 금전적 동기 | 8 (38.1) | 2 (9.1) | 2 (20.0) | 2 (9.1) |
| | 불화, 감정악화 | 5 (23.8) | 8 (36.4) | 4 (40.0) | 6 (27.3) |
| | 화가 나서 | 6 (28.6) | 7 (31.8) | 1 (10.0) | 5 (22.7) |
| | 보복 | 3 (14.3) | 1 (4.5) | - | 3 (13.6) |
| | 성충동, 성적 만족추구 | - | 5 (22.7) | 1 (10.0) | 4 (18.2) |
| | 부주의, 우발적 | 4 (19.0) | 4 (18.2) | 1 (10.0) | 2 (9.1) |
| | 관계회복, 피해자 지배 | - | 4 (18.2) | - | 4 (18.2) |
| | 자신을 무시함 | 1 (4.8) | - | - | - |
| | 무전취식 후 도주 | - | - | 1 (10.0) | - |
| | 호객행위 | - | - | 1 (10.0) | - |
| | 모르겠다 | 2 (9.5) | - | 1 (10.0) | 9 (40.9) |

* 주 1: 피해경험 5회 이상은 '5회'로 가정함

** 주 2: '반복피해'란 동일 가해자로부터 반복해서 피해를 당한 사건을 말함.

*** 괄호안의 수치는 가해자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피해자의 성별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의 백분율 값임.

**** 주 4: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한 것임.

이와 달리 협박·괴롭힘 사건의 경우 남녀 모두 70% 이상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는 직장동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웃이나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사건에서의 가해자-피해자의 성별 조합을 보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비율(50.0%)과 피해자가 여성인 비율(50.0%)이 동일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성일 때 피해자가 남성(14.3%)인 경우는 드물고, 피해자가 여성(85.7%)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여성폭력은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남성폭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50.0%) 비율은 여성 가해자-남성 피해자(14.3%) 비율보다 훨씬 크다. 이것은 남녀간의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성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협박·괴롭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협박·괴롭힘에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의 비율(76.9%)은 여성 가해자-남성 피해자의 비율(40.0%)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협박·괴롭힘의 대상은 여성이 더 많은 반면,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다. 요컨대 직접적·유형적 폭력이든 간접적·무형적 폭력이든 관계없이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성별화 현상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폭행·상해, 협박·괴롭힘의 가해 동기는 복합적이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지고 있었다. 폭행·상해의 경우를 보면, 남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주된 동기는 금전적 이해관계, 불화나 감정악화, 분노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주된 동기가 불화나 감정악화, 분노인 것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폭행·상해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가해자와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사건을 촉발시킨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의 성충동이나 성적 만족 추구를 위해서 혹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피해자 지배를 위해 여성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10건 중 4건(40.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폭행이나 구타가 성폭력이나 성학대, 성적인 지배력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여성에게 행사되는 일반폭력이 성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협박·괴롭힘의 경우에도 나타난다(36.4%). 즉 협박·괴롭힘 피해 여성 3명 중 1명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성폭력이나 성적인 지배의 욕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피해자의 대응

협박·괴롭힘 사건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방어행동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폭행·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방어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반응방식은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표 7〉).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10명 중 7명(76.2%)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던 반면, 아무런 저항이나 대응이 없었던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³⁾ 즉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피해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행동이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폭력사건에서의 여성 피해자의 ‘저항에 있어서의 수동성이나 무력성(無力性)’을 지적한 선행연구들과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선행연구들은 남성 가해자에 대한 저항에 있어 여성 피해자들이 수동성을 보이는 것은 문화적인 효과로 풀이한다.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은 자신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의 수동성과 ‘여성적인’ 행동에 보상이 주어진다.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디어에 의해 조장·증폭되는 성역할 고정관념, 즉 여성의 수동성과 남성의 적극성이 문화적으로 보상받는다. 관념과 이미지는 남성지배와 그에 대한 여성의 저항불가능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elknap, 2007: 278-2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여성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에 대한 신체적 공격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라기보다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40.9%)나 ‘탈출, 도망(시도)’(18.2%)와 같은 소극적 형태가 많았다는 점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에 저항하는 여성은 ‘조건화된’ 저항기술을 써야 한다는 가부장적 문화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Estrich, 1987). 여성의 대응방식은 분명 남성의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가해자의 폭행이나 구타에 대해 저항하기로 결심한 남성 피해자의 경우, 5명 중 3명이 신체적 격투로써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방어행동과 가부장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3)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 피해자의 방어나 대응은 피해자 혼자 있을 때(71.4%)보다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들(12세 미만 아동은 제외)과 같이 있을 때(93.3%)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혼자(16.7%)이거나 혹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26.7%)이 있거나에 크게 상관없이 방어나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폭행·상해 사건에서의 피해자 대응방식에 대한 성별 비교

(단위: 명, %)

| 구 분 | 항 목 | 남자 | 여자 |
|----------|-----------------|-----------|-----------|
| 방어·대응 여부 | 아니다 | 16 (76.2) | 3 (13.6) |
| | 그렇다 | 5 (23.8) | 19 (86.4) |
| | 신체적 격투 | 3 (14.3) | 3 (13.6) |
| | 소리 지르기 등 위협, 경고 | 2 (9.5) | 9 (40.9) |
| | 협상, 애원 등 사정 | - | 1 (4.5) |
| | 탈출, 도망(시도) | - | 4 (18.2) |
| | 경찰, 경비원 도움요청 | - | 2 (9.1) |
| 대응행동 영향 | 피해악화 차단 | 2 (40.0) | 10 (52.6) |
| | 가해자 체포 도움 됨 | 1 (20.0) | 1 (5.3) |
| | 탈출·도피 도움 됨 | - | 5 (26.3) |
| | 상해·재산피해 확대 | - | 2 (10.5) |
| | 가해자의 공격성 증폭 | 2 (40.0) | 1 (5.3) |

가해자의 폭력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방어하거나 대응하는 행동이 피해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표 8〉). 남성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이 피해를 축소 혹은 차단하는 효과(40.0%)와 가해자의 공격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효과(40.0%)가 동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성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은 피해를 축소 혹은 차단하거나(52.6%) 피해자가 탈출·도피하는 데 도움(26.3%)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 여부를 측정한 결과, 남녀 모두 낮은 신고율을 보였다. 폭행·상해 사건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 경찰 신고율은 19.0%였으나,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의 신고율은 27.3%로 조금 더 높았다. 신고 이유에 대한 남녀의 응답결과는 흥미롭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범인의 검거·처벌,’ ‘손실(피해)회복,’ ‘경찰 예방활동 개선,’ ‘범죄이기 때문에’ 등 그 이유가 제각각이지만, 여성 피해자는 주로 범인 검거·처벌이나 재발방지 등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억제의 동기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남녀 모두 피해가 경미하거나, 다른 방식 혹은 개인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여성(18.8%)의 경우 남성(5.9%)에 비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좀더 많았다.

〈표 8〉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사건에 대한 남녀 피해자의 신고행동 비교

(단위: 명, %)

| 구 분 | 폭행·상해 | | 협박·괴롭힘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신고했다 | 4 (19.0) | 6 (27.3) | 0 (0.0) | 0 (0.0) |
| 범인검거·처벌 | 1 (25.0) | 3 (50.0) | - | - |
| 손실(피해)회복 | 1 (25.0) | - | - | - |
| 재발방지 | - | 3 (50.0) | - | - |
| 경찰 예방활동 개선 | 1 (25.0) | - | - | - |
| 범죄이니까 | 1 (25.0) | - | - | - |
| 합 | 5 (100.0) | 6 (100.0) | - | - |
| 신고하지 않았다 | 17 (81.0) | 16 (72.7) | 10 (100.0) | 22 (100.0) |
|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7 (41.2) | 7 (43.8) | 3 (30.0) | 10 (45.5) |
| 개인적으로 처리 | 4 (23.5) | 4 (25.0) | 4 (40.0) | 4 (18.2) |
| 증거가 없어서 | - | - | - | 1 (4.5) |
| 경찰조치 불신 | - | 1 (6.3) | - | 1 (4.5) |
| 경찰이 귀찮게 할까봐 | - | - | - | 2 (9.1) |
| 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 3 (17.6) | 1 (6.3) | 3 (30.0) | 2 (9.1) |
| 보복이 두려워서 | - | 2 (12.5) | - | - |
|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1 (5.9) | 1 (6.3) | - | 1 (4.5) |
| 기타 | 2 (11.8) | - | - | 1 (4.5) |
| 합 | 17 (100.0) | 16(100.0) | 10 (100.0) | 22 (100.0) |

4. 피해의 결과

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결과와 그에 따른 비용을 야기한다(Cohen, 2005). 폭행과 구타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의료적 치료비용, 생산 활동이나 학업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학업) 손실의 비용 등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신고하고 그 이후 전개되는 형사절차(이를테면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하는 일 등)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산범죄 피해의 경우 파괴된 물건들을 고치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기 위해 드는 시간적 노력이 또 다른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범죄피해는 차후의 범죄예방을 위한 간접적 비용도 야기한다. 대인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사건 이후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탄다거나 특정 장소나

사람을 회피하거나, 어두워지면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행동변화에 따른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의존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비용,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비용 등이 유발된다.

하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유형의 비용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범죄는 심리적·정신적 피해와 후유증, 혹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처럼 쉽게 측정하기 힘든 무형의 비용을 낳는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무형적 비용이 범죄로 인한 유형적 피해보다 더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Brand and Price, 2000). 이에 아래에서는 폭행·상해 및 협박·괴롭힘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와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에 있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 유형적 피해

협박과 괴롭힘의 경우와 달리 폭행과 상해는 그 행위의 본질상 피해자의 신체적 침해와 부상을 야기한다. 앞의 <표 4>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성은 상대적으로 심한 폭행 피해가 많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단순 폭행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는 이 점을 부연해서 보여주고 있다. 실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구타가 가해진 비율은 여성 피해자(45.5%)보다 남성 피해자(66.7%)가 좀더 높다.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인해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비율 역시 남성 피해자(61.9%)가 여성 피해자(40.9%)보다 더 높다.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수는 남성이 13명 중 5명(38.5%)이며, 여성은 9명 중 3명(33.3%)이다. 이러한 부상자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1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명 중 2명은 10일 이하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명은 약 4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여성피해자 1명은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례수가 작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9〉 폭행·상해 사건에서의 피해자 대응방식에 대한 성별 비교

(단위: 명, %)

| 구 분 | 항 목 | 남자 | 여자 |
|---------------|--------------|--------------|-------------|
| 폭행여부 | 폭행함 | 14 (66.7) | 10 (45.5) |
| | 폭행 시도함 | 7 (33.3) | 12 (54.5) |
| 신체피해여부 | 신체피해 없음 | 8 (38.1) | 13 (59.1) |
| | 칼에 의한 부상 | 1 (4.8) | 2 (9.1) |
| | 신체골절 | 2 (9.5) | 2 (9.1) |
| | 장기손상 | 2 (9.5) | - |
| | 타박상 | 9 (42.9) | 5 (22.7) |
| 치료여부 및 장소 | 의료적 처치 받지 않음 | 5 (38.5) | 3 (33.3) |
| | 집에서 | 3 (23.1) | 2 (22.2) |
| | 학교·직장의 의무실에서 | - | 1 (11.1) |
| | 개인병원 | 1 (7.7) | 3 (33.3) |
| | 종합병원 | 4 (30.8) | - |
| 입원여부 | 그렇다 | 3 (60.0) | 1 (33.3) |
| | 1일 | 1 (20.0) | - |
| | 10일 | 1 (20.0) | - |
| | 35일 | - | 1 (100.0) |
| | 120일 | 1 (20.0) | - |
| | 아니다 | 2 (40.0) | 2 (66.7) |
| 의료비용 | 평균비용(만원) | 126.2(121.7) | 110(164.6) |
| 부상에 따른 생산성 손실 | 있다 | 5 (38.5) | 4 (44.4) |
| | 평균(일) | 47.8 (53.5) | 49.8 (86.9) |
| | 없다 | 8 (61.5) | 5 (55.6) |

신체적 상해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물론 의료적 치료에 따른 학업이나 노동의 포기와 같은 생산성 손실이라는 비용을 초래한다(〈표 9〉). 폭행·상해의 피해로 인한 평균 의료비용은 남자가 126.2만원, 여자가 11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수가 적고 사례별 편차⁴⁾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요망된다. 상해피해로 학교결석, 직장에 병가 혹은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 가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생산성 손실여부와 손실일수를 측정된 결과, 남자 상해 피해자의 38.5%와

4) 남자 피해자의 경우 1만원 1명, 50만원 1명, 80만원 1명, 200만원 1명, 300만원 1명이고, 여자 피해자의 경우 10만원 1명, 20만원 1명, 300만원 1명이다.

여자 상해 피해자의 44.4%가 생산성 손실을 보고하였다. 상해 피해자 1인당 생산성 손실일수는 남자가 47.8일(표준편차=53.5일)이고 여자가 49.8일(표준편차=86.9일)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작은 사례수와 개별 사례간 높은 편차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⁵⁾

〈표 10〉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사건처리를 위한 노동손실 여부와 손실정도의 남녀비교

(단위: 명, %)

| 구 분 | 폭행·상해 | | 협박·괴롭힘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없음 | 17 (81.0) | 17 (77.3) | 8 (80.0) | 18 (81.8) |
| 있음 | 4 (19.0) | 5 (22.7) | 2 (20.0) | 4 (18.2) |
| 평균손실일수(일) | 9.0 (5.7) | 26.8 (36.0) | 11.5(12.0) | 59.0 (34.4) |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수사 및 재판을 위해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와 같은 비용이 실제 발생한 피해자의 비율은 피해유형이나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표 10〉). 사건의 법적 처리에 소요된 시간 손실을 보면, 폭행·상해의 남자 피해자는 9.0일(표준편차=5.7일), 여자 피해자는 26.8일(표준편차=36.0일)이고, 협박·괴롭힘의 남자 피해자는 11.5일(표준편차=12.0일), 여자 피해자는 59.0일(표준편차=34.4일)로 집계되었다. 얼핏 보기에 남자 피해자에 비해 여자 피해자의 법적 처리를 위한 시간 손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작은 사례수와 사례간 큰 편차로 인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⁶⁾

5) 남자 피해자의 생산성 손실일수의 분포를 보면 2일 1명, 12일 1명, 15일 1명, 90일 1명, 120일 1명이며, 여성 피해자는 4일 1명, 5일 1명, 10일 1명, 180일 1명이다. 여성의 생산성 손실일수가 남성보다 높게 평가된 데에는 여성 1명의 극단적 피해사례 때문이다.

6) 폭행·상해 피해자의 사건처리에 따른 시간손실을 보면, 남자는 2일 1명, 7일 1명, 12일 1명, 15일 1명이며, 여자는 3일 1명, 6일 1명, 15일 1명, 20일 1명, 90일 1명 등이다. 협박·괴롭힘 피해의 경우, 남자는 3일 1명, 20일 1명이고 여자는 15일 1명, 60일 1명, 99일 1명 등이다.

나. 무형적 피해

범죄에 따른 무형적 피해의 대표적 형태는 심리적·정신적인 영향 혹은 후유증, 가족 관계의 변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야기 등이다. 이와 같은 피해들은 쉽게 계량화되기도 않는다.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영향이나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보다 일반적이다(〈표 11〉). 폭행·상해 피해자 중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남성이 42.9%인데 비해, 여성은 13.6%에 불과하다. 협박·괴롭힘 피해의 경우에도 심리적 후유증을 느끼는 정도에 따른 성별 차이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표 11〉 폭행 상해 사건의 피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단위: 명, %)

| 구 분 | 항 목 | 폭행·상해 | | 협박·괴롭힘 |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심리적 후유증* | 우울함 | 6 (28.6) | 14 (63.6) | 4 (40.0) | 6 (27.3) |
| | 고립감 | 1 (4.8) | - | 1 (10.0) | 2 (9.1) |
| | 두려움 | 2 (9.5) | 3 (13.6) | - | 7 (31.8) |
| | 불면증·악몽 등 | 1 (4.8) | - | - | 4 (18.2) |
| | 사회관계상의 어려움 | - | 1 (4.5) | 1 (10.0) | - |
| | 성적 수치심 | - | - | - | 1 (4.5) |
| | 타인회피(이사, 전학) | 2 (9.5) | - | - | 1 (4.5) |
| | 근심, 걱정 | - | 1 (4.5) | - | - |
| | 남성혐오증 | - | 2 (9.1) | - | - |
| | 불신감 | - | 1 (4.5) | - | - |
| | 울화, 억울함 | 1 (4.8) | - | - | - |
| | 없음 | 9 (42.9) | 3 (13.6) | 4 (40.0) | 3 (13.6) |
| 심리상담치료 여부 | 아니오 | 12(100.0) | 18 (94.7) | 6(100.0) | 18 (94.7) |
| | 예 | - | 1 (5.3) | - | 1 (5.3) |
| | 치료기간 | - | 5일 | - | 15일 |
| | 치료비용 | - | 40만원 | - | 3만원 |
| 가족생활에의 영향 |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침 | 3 (14.3) | 2 (9.1) | 1 (10.0) | 3 (13.6) |
| | 대체로 부정적 영향 미침 | 7 (33.3) | 14 (63.6) | 2 (20.0) | 6 (27.3) |
| | 그저 그렇다 | 2 (9.5) | 4 (18.2) | 2 (20.0) | 5 (22.7) |
| | 부정적 영향 없음 | 5 (23.8) | 1 (4.5) | 4 (40.0) | 7 (31.8) |
| | 전혀 부정적 영향 없음 | 4 (19.0) | 1 (4.5) | 1 (10.0) | 1 (4.5) |
| | 평균 | 3.00(1.41) | 3.68(.89) | 2.80(1.23) | 3.14(1.17) |

* 주: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한 것임.

범죄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은 복합적으로 발현된다.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후유증은 우울증(63.6%)이다. 이밖에도 여성 폭행·상해 피해자들은 두려움, 남성혐오증과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 피해를 당한 남성 또한 다른 유형의 심리적 영향에 비해 우울증(28.6%)을 좀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두려움이나 타인을 회피하는 행동상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협박·괴롭힘 피해가 있었던 남성이 경험했던 가장 일반적인 심리적 상태는 우울이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두려움과 우울, 불면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폭행·상해나 협박·괴롭힘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각각 1건 씩 있었다.

범죄피해는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혀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를 5점으로 하는 척도로써 폭력범죄가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측정된 결과,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mme, 1986; Kale and Kleinman, 1985; Keane, 1995; McCoy et al., 1996; Roundtree, 1998; Will and McGrath, 1995).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그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 이에 폭력피해 이후 피해자의 회피적 행동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탐구해왔다.

회피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 사건 이후, 나는 가급적 밤에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나는 우범지역을 가급적 우회하거나 피해서 다닌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가급적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의 세 가지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피해 이후의 회피행동’이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변화된 범죄의 두려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전보다 더욱 두려움을 느낀다.”의 세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피해 이후의 범죄두려움’이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폭행·상해 및 협박·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피해 이후의 회피행동’과 ‘피해 이후의 범죄두려움’의 문항간 내적일관성 정도를 측정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행동과 범죄두려움 수준의 변화에 대한 성별 비교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피해 이후의 회피행동 및 두려움 수준의 변화에 대한 남녀 비교

| 측정 항목 | | 폭행·상해 | | 협박·괴롭힘 |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회피 행동 | 나는 가급적 밤에 혼자 택시 타지 않는다. | 2.52 (1.21) | 2.77 (.81) | 2.60 (1.27) | 3.27 (1.16) |
| | 나는 우범지역을 가급적 우회하거나 피해서 다닌다. | 3.05 (1.12) | 3.27 (1.03) | 2.90 (1.37) | 3.73 (.99) |
| | 나는 가급적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 2.81 (1.12) | 3.50 (.91) | 2.90 (1.29) | 3.18 (.96) |
| | 복합지수 | 8.38 (3.07) | 9.55 (2.09) | 8.40 (3.74) | 10.18 (2.87) |
| | 사례수 | 21 | 22 | 10 | 22 |
| | t-값 | -1.45 | | -1.48 | |
| | 신뢰도 계수(α) | .79 | | .93 | |
| 범죄 두려움 |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 2.57 (.98) | 2.91 (.92) | 2.40 (1.08) | 3.45 (1.14) |
| | 밤에 혼자 골목길을 다니기가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졌다. | 2.95 (1.12) | 3.36 (1.18) | 2.60 (1.08) | 3.86 (1.04) |
| |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전보다 더욱 두려움을 느낀다. | 2.57 (1.21) | 3.09 (.97) | 2.50 (1.08) | 3.73 (.99) |
| | 복합지수 | 8.10 (3.02) | 9.36 (2.84) | 7.50 (3.03) | 11.05 (2.95) |
| | 사례수 | 21 | 22 | 10 | 22 |
| | t-값 | -1.42 | | -3.13** | |
| | 신뢰도 계수(α) | .91 | | .94 | |

주: 평균(표준편차)

*: $p < .05$, **: $p < .01$

그 결과를 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성 폭행·상해 피해자들의 범죄피해 회피행동이 남성 피해자에 비해 좀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괴롭힘의 경우에 있어서도 범죄피해 이후의 회피행동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폭행·상해 피해는 특히 여성들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 역시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협박·괴롭힘 피해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가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의 유무에 따른 두려움 수준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성별에 관계없이 폭행·상해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구타(폭행)이나 괴롭힘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 협박·괴롭힘에 대한 피해경험은 여성 집단에 한해, 구타(폭행) 혹은 괴롭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남성 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폭행이나 구타, 협박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재차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중복적인 피해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피해 이후의 회피행동 및 두려움 수준의 변화에 대한 남녀 비교

| 구 분 | 남자 | | | | 여자 | | | |
|---------------|----------|------|-----------|------|----------|------|-----------|------|
| | 폭행·상해 피해 | | 협박·괴롭힘 피해 | | 폭행·상해 피해 | | 협박·괴롭힘 피해 | |
|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 구타(폭행) 피해 두려움 | 2.33 | 3.05 | 2.34 | 2.30 | 2.74 | 3.23 | 2.74 | 3.32 |
| 사례수 | 5,174 | 21 | 5,185 | 10 | 5,618 | 22 | 5,618 | 22 |
| t-값 | -3.45** | | .12 | | -2.24* | | -2.67** | |
| 괴롭힘 피해 두려움 | 2.01 | 2.43 | 2.02 | 2.00 | 2.41 | 2.91 | 2.41 | 3.59 |
| 사례수 | 5,174 | 21 | 5,185 | 10 | 5,618 | 22 | 5,618 | 22 |
| t-값 | -2.90* | | .06 | | -2.31* | | -5.48*** | |

주: 평균(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요약해보면, 폭행·상해, 협박·괴롭힘과 같은 신체·언어적 폭력은 특히 여성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폭력피해자들에 비해 여성 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건 이후 동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더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V. 논의와 한계

이 글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폭행 피해의 위험성이 낮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기 위해 기획되어졌다. 그간 폭행, 특히 심한 폭행 피해자의 대부분은 남성들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비록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이나, 본문의 분석결과들은 이러한 관념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수행된 범죄피해조사 결과들은 1990년대에 수행된 피해조사 결과와 달리 여성의 폭행피해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점차 폭행이나 구타의 위험성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타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남성들의 보고율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피해조사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여성의 폭행·상해 피해율과 남성의 폭행·상해 피해율과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남성의 피해율은 빠르게 감소하는 데 비해 여성의 피해율은 더디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두 집단의 그 피해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8년 기준 피해조사에서는 괴롭힘(스토킹)은 물론 강도피해의 경우에도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폭력피해로부터 더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조사 결과들은 공식통계로써는 포착할 수 없는,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폭력 피해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은 성폭력에 있어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성별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본문의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의 성별화'를 폭행·상해의 경우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폭행 및 상해 범죄에 있어 가해자-피해자의 성별 조합을 통해 봤을 때, '여성가해자-남성피해자'의 관계보다는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관계가 훨씬 더 지배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특성은 협박·괴롭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성충동이나 성적인 만족추구를 위해, 혹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피해자 지배를 위해 남성이 여성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5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 및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러한 동기에 의해 여성에게 간접적 혹은 무형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3건 중 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폭행과 구타가 성폭력이나 성적인 지배력의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시켜준다고 생각된다. 폭행·상해 피해 여성 4명 중 1명은 남편, (조)부모, 전 남편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서구의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은 남성지배적인 가부장제 문화 체계 하에서는 여성의 폭력 피해가 감추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8년 기준 한국의 피해 조사 자료에 의하면 폭행 및 상해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해자의 공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러한 적극적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신체적 맞대응을 주로 했던 남성피해자와 달리 소리 지르기나 경고, 혹은 탈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대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간접적 대응방식은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이 지적하는 여성피해자의 ‘저항에 있어서의 수단 선택성’을 떠올리게 한다. 가해자와의 대면에 있어 회피적 대응이라는 특성은 여성의 수동성과 의존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폭행·상해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부상이라는 비용을 유발한다. 하지만 폭행·상해의 비용은 피해자의 부상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치료를 위해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학업, 직장생활, 가사활동 등의 생산성 손실을 야기한다. 그와 같은 비용의 측면에서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노동손실도 발생하는데, 비록 사례수가 작아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분석결과들은 비용의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및 상해, 협박 및 괴롭힘 등 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는 결코 남성의 그것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개진한다.

범죄피해는 유형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정신적 후유증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증가와 같은 쉽게 측정하기 힘든 무형의 피해로부터 크게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상해 피해나 협박 혹은 괴롭힘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그와 같은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폭행이나 구타, 협박과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이처럼 폭력피해로 말미암은 심리학적 비용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필자는 서두에서 이 글을 한국에서 폭행과 협박, 괴롭힘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남성 피해자와의 대조를 통해 들춰보고자 하는 하나의 탐색적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피해사실이 보고된 사례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교한 분석과 비교연

구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들은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통해 한국에서의 여성 폭력피해가 성폭력이나 성학대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폭력의 문제에게 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반폭력 피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징후도 포착되었다.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에 의한 일반적인 폭행 및 구타와 성폭력, 성적인 지배간의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의 논의전개에는 무리가 따른다. 향후 여성폭력 피해에서 있어 일반폭력과 성폭력의 '중층결합'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 김지영 · 홍영오 ·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 최영신. 2000.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 김준호 · 최인섭 · 조정희 · 박정선. 199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 2000. 『세계 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기광도. 1998.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지선 · 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lknap, Joanne. 2007.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3rd Edi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윤옥경 · 강은영 · 김지선 · 신연희 · 전영실 옮김. 2009. *여성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세계이저리닝코리아).
- Bergen, Raquel Kennedy. 2004. "Studying Wife Rape." *Violence Against Women* 10: 1407-1416.
- Brand, Sam and Price, Richard. 2000.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London: Home Office Research Study 217.
- Braungart, Margaret M., Braungart, Richard G., and Hoyer, William J. 1980. "Age, Sex, and Social Factors in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rces* 13: 55-66.
- Catalano, Shannan. 2004. *Criminal Victimization, 2003*.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S. Department of Justice, September, 12pp.
- Clemente, Frank and Kleiman, Michael B. 1976. "Fear of Crime among the Aged." *Gerontologist* 16: 211-219.
- Cohen, L. E.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hen, Mark. 2005. *The Cost of Crime and Justice*. New York: Routledge.
- Edleson, Jeffrey L. 1999. "The Overla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Woman Battering." *Violence Against Women* 5: 134-154.
- Finkelhor, David and Yllo, Kersti. 1985. *License to Rape: Sexual Abuse of Wives*. New York: Free Press.
- Goffredson, Michael R. 1986. "Substantive Contributions of Victimization Surveys." In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Gomme, I. M. 1986. "Fear of crime among Canadians: A multi-variate analys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4: 249-258.
- Kale, B. L. and Kleinman, P. 1985. "Fear, crime, community organization, and limitations on daily routines." *Urban Affairs Quarterly* 20: 400-408.
- Keane, C. 1995. "Victimization and fear: Assessing the role of offender and offen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7: 431-455.
- LaGrange, Randy L. and Ferraro, Kenneth F. 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 697-718.
- Madriz, Esther. 1997. *Nothing Bad Happens to Good Girls: Fear of Crime in Women's L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Coy, H. V., Wooldredge, J. D., Cullen, F. T., Dubeck, P. J., and Browning, S. L. 1996. "Lifestyles of the old and not so fearful: Life situation and older person's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 191-205.
- Meyer, Shannon-Lee, Vivian, Dina, and O'Leary, K. Daneil. 1998. "Men's Sexual Aggression in Marriage." *Violence Against Women* 4: 415-435.
- Miethe, T. D., Stafford, M. C., and Long, J. S.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84-194.
- Ortega, Suzanne T. and Myles, Jessie L. 1987. "Race and Gender Effects on Fear of Crime: An Interactive Model with Age." *Criminology* 25: 133-152.
- Roundtree, P. 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341-372.
- Russell, Diana E. H. 1984.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CA: Sage.

- Russell, Diana E. H. 1990. Fraternity Gang Rap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chechter, Susan. 1982. Women and Male Violence. Boston: South End Press.
- Tjaden, Patrica and Thoennes, Nancy. 2000.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Male-to-Female and Female-to-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Measured by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6: 142-161.
- Warr, Mark.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 681-702.
- Will, J. A. and McGrath, J. H. 1995. "Crime, neighborhood perceptions, and the under-clas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class posi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163-176.
- Young, Vernetta D. 1992. "Fear of Victimization and Victimization Rates among Women: A Paradox?" Justice Quarterly 9: 419-442.

제 3 부

사회 : 이순래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발표 1>

-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김준호(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2>

-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 주요 모델들의 검증

박정선(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성식(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토론>

노성훈(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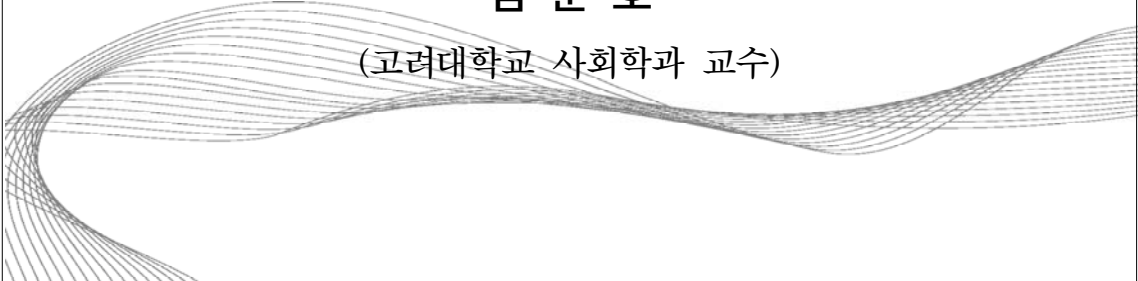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김 준 호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김준호*, 박현수, 박성훈

I. 서론

대부분의 범죄학 이론은 주로 가해자의 범죄성(criminality)이나 동기(motivation)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밝히고 검증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반면, 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루마니아 법률가인 멘델존(Beniamin Mendelshon),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법학교수인 헨티히(Hans Von Hentig) 등이 범죄 발생 상황에서 피해자의 역할에 주목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범죄에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유발(Victim-precipit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울프강(Wolfgang, 1957)의 미국 남부지역의 살인 연구에 적용되었고, 그 제자인 아미르(Amir, 1967)가 강간 연구에 확대 적용하였으나 페미니즘에 기반한 많은 여성학자들의 비판에 부딪쳐 이런 관점에 입각한 연구는 그 이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Meier and Miethe, 1993; Rock, 2000).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범죄 피해 행위로 전환되었는데, 중요한 계기는 공식통계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서덜랜드(Sutherland, 1939)를 비롯한 학자들은 공식통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조사(Victim survey)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1973년의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피해조사 이후 캐나다,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지역에 한정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1990년에 첫 번째 피해조사가 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 실시하였다. 그 후 1994년부터 3년 주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 주관한 범죄피해조사는 8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에 걸쳐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범죄 발생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식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발한 피해조사는 범죄 발생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범죄피해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기존의 가해자 중심 범죄이론과 달리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는 등 가해자 중심이론에서 제외되었던 중요한 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위시한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에 관심을 둔 이론을 위시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해체이론이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개인 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관심을 발전하였다. 기존의 가해자 중심이론이 범죄를 야기하는 개인 혹은 사회적인 요인에 관심을 두었다면 피해이론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적인 조건에 관심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피해 원인론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가해이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에서 실시한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의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보려는 일환에서 출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일상활동과 범죄피해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자들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피해가 사회적 집단(social groups)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Gottfredson and Hindelang, 1981; Hinde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 또 다른 학자들은 범죄피해율이 거시적 사회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범죄피해 현상을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Cohen and Felson, 1979; Felson and Cohen, 1980).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과는 달리 범죄피해 현상에 주목한 이들의 논의는 생활양식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 또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으로 불리며, 이후 범죄피해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¹⁾

생활양식이론은 각 개인마다 성, 인종, 수입, 교육, 직업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expected role)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범죄피해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즉 선행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직업활동 또는 여가활동 등 생활양식(lifestyle)은 피해위험(risk of victimization)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노출(exposure)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의 접촉(association) 빈도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결정하게 된다(Garofalo, 1987; 24-26).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남자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 여자는 집에서 아이와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역할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남자들의 바깥 활동이 더 잦아지고 그만큼 범죄피해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생활양식-노출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성, 연령, 직업, 교육, 수입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범죄피해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범죄피해 이론으로서 일상활동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요소는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죄대상(suitable targets),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보호/감독의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이며, 세 가지 요소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수렴되는 경우 약탈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1960년부터 1971년까지의 범죄율을 비교하면서, 원거리 출퇴근 증가(가구의 분리),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증가, 가전제품(TV, 카세트, 개인컴퓨터)의 소형화·경량화, 여가활동의 증가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가구중심활동의 감소)가 범죄기회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다(Cohen and Felson, 1979). 따라서 잠재적 범죄자를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도 적절한 범죄대상이나 보호/감독의 부재를 높이는 사회적 변화(기술, 직업활동, 여가활동)에 의해 범죄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코헨과 펠슨은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보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의 시·공간적 수렴을 강조하였는데, 세 가지 요소의 효과는 가산적(additive)이기보다는 승법적(multiplicative)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1979: 604). 즉 범죄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또는 보호의 부재가 각각 독립적일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된 범죄자와 적절한 범죄대상과 보호의 부재가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 모두 어느 정도 유형화된 잠재적 피해자의 일상활동(routine activities)이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생활양식이론이 사회적 집단에 따른 범죄피해의 차이를 설명하려 한다면, 일상활동이론은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일상활동의 변화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Meier and Miethe, 1993).

(Bursik and Grasmick, 1993: 72).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 간의 독립적 효과는 물론 상호작용 효과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처럼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은 범죄학 이론을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모호함과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Bursik and Grasmick, 1993; Miethe, Stafford and Long, 1987). 예를 들어, 적절한 범죄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매력성은 높은 수입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동시에 수입이 높을수록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크기 때문에 수입을 잠재적 피해자의 매력성(attractiveness)으로 볼 것인지 범죄피해로부터의 보호능력(guardianship)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이론과 조사를 연결하는 측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념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근사변인’(proxy variables)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코헨 등(Cohen, Kluegel, and Land, 1981)은 수입, 인종, 직업 등이 어떻게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출’(exposure), ‘보호/감시’(guardianship),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proximity), ‘잠재적 피해자의 매력’(attractiveness), ‘특정 범죄의 고유한 특성’(definitional properties of specific crimes themselves)이라는 매개 변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1981: 507-508), 노출(exposure)이란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가시성(visibility)이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의미하고, 근접성(proximity)은 잠재적 피해자가 사는 지역과 잠재적 범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를 의미하며, 보호(guardianship)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치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의미하고, 매력(target attractiveness)은 잠재적 범죄자가 느끼는 물질적·상징적 보상의 정도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의 저항력(inertia)을 의미한다.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된 개념들 간의 구분과 개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개념과 측정 간의 연결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후 구조적 선택이론(structural-choice model of victimization)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조적 선택이론(Miethe and Meier, 1990)에서는 코헨 등(Cohen et al. 1981)이 제시한 범죄피해의 요인을 범죄의 기회구조를 만드는 ‘거시-동태적’(macro-dynamic) 요인과 특정한 범죄대상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미시-수준’(micro-level)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근접성(proximity)과 노출(exposure)을 ‘구조적’(structural) 요인으로,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과 보호능력(guardianship)을 합리적 개인의 ‘선택’(choice)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요인을 ‘주어

진'(predisposing) 조건으로 보는 반면 선택 요인은 피해를 '유발하는'(precipitating) 조건으로 보았다. 구조적 선택이론은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보다 정교화하여 범죄피해의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Meier and Miethe, 1993). 왜냐하면, 네 가지 요인은 같은 수준에서가 아니라 구조적 수준의 요인이 개인적 수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개인수준의 요인(매력성과 보호능력)에 의한 범죄피해 가능성의 차이는 구조적 수준에서 높은 근접성과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Miethe and Meier, 1990: 246).

또한 구조적 선택 이론에서는 근접성, 노출, 매력성, 보호능력을 범죄피해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한다. 바꾸어 말하면, 네 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가 없더라도 범죄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Meier and Miethe, 1993: 475). 범죄피해가 네 가지 요인의 승법적(multiplicative) 효과로 나타난다는 이러한 주장은 코헨과 펠슨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미드와 마이어는 범죄피해 이론의 방법론적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들은 핵심개념을 부적절하게 측정하였고,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통제변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변인에 따른 다수준 효과의 분석에 실패하였다(Meier and Miethe, 1993: 484-489).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의 근사변인이 아닌 네 가지 요인(노출, 근접성, 매력성, 보호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다른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독립 효과는 물론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다수준 분석의 문제점은 사회해체이론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2. 사회해체와 범죄피해

쇼와 맥케이(Shaw and McKay, 1931)는 시카고 도시 지역 내 전이지대(the zones in transition)에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왜 비행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비행율이 높은 지역은 가난하고(poverty), 사람들의 이동이 잦고(mobility), 인종적으로 이질적인(heterogeneity)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이러한 특성을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라고 불렀다. 시카고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들의 후속 연구(Shaw and McKay, 1942)에서도 지역 사회의 해체적 특성과 비행율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은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지역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는 거시이론으로서(이성식·황지영, 2008), 지역수준의 사회통제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Kornhauser, 1978).

하지만 사회해체이론은 비행율의 생태적 분포(ecological distribution) 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사회해체의 조건과 결과를 구분 짓는 데 실패하였다. 즉 사회해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해체가 지역사회의 비행을 유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높은 비행율이 사회해체의 증거로 설명되는 동어반복(tautological)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Liska and Messner, 1999). 또한 사회해체이론은 방법론적으로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²⁾ 그 결과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 이후 범죄학 이론은 사회구조적 원인보다는 개인의 동기과 기회에 보다 관심을 갖는 사회심리학적 경향으로 나아갔다(Bursik, 1988: 522-523).

최퇴 일로의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재조명은 버식 등이 주장한 체계이론(Bursik and Webb, 1982; Bursik, 1984; Bursik, 1988; Bursik and Grasmick, 1993)과 사회해체이론을 범죄피해에 적용한 샘슨의 연구(Sampson, 1983; 1985; 1987; 1991; Sampson and Groves, 1989)에서 비롯되었다. 샘슨과 울드릿지(Sampson and Wooldredge)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기회 모델(opportunity model)로 간주하고 기회 이론의 요소는 모두 개인수준의 변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역수준의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를 고려해야만 진정으로 미시-거시 수준이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987: 372-373). 이후 범죄피해와 관련한 이슈는 맥락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모아졌다.³⁾ 이들이 사용한 지역 혹은 맥락 변인들은 기존의 사회해체이론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 결과 종속변인(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해체의 개념을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데 적용함으로써 개인중심

2) 로빈슨(Robinson, 1950)은 집합적 자료(aggregate data)를 통해 개인수준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버식(Bursik, 1988)에 따르면, 로빈슨이 모든 이론적 논의에 대해 집합적 자료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연구자들에게는 집합적 자료의 사용을 금기(taboo)시 하는 풍토가 생겼고, 이러한 경향이 사회해체이론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3) 예를 들어, 샘슨과 울드릿지(Sampson and and Wooldredge, 1987)는 가족해체 비율, 사회적 응집도, 실업률, 빈집 비율, VCR소유 비율 등으로 구조적 변인을 측정하였고, 스미스와 잘주라(Smith and Jarjoura, 1989)는 인종적 이질성, 인구밀도, 거주지 불안정성, 다가구주택 비율, 12-20세 인구 비율, 한부모 가구비율, 지역평균수입, 사회적 통합도, 1인 가구비율 등을 지역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미드와 맥도웰(Miethe and McDowell, 1993)은 맥락 변인을 몇 가지 주요한 복합변수(composit variable), 즉 상업지역, 인종적 이질성, 사회경제적 조건/지역의 무질서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의 논의를 넘어섰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해체이론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동어반복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해체의 결과가 범죄피해를 유발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피해가 사회해체의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론적 논의와 분석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역수준의 효과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지역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변인을 통제한 후에 지역/맥락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두 수준 간의 변인을 통제한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지 지역/맥락의 조건에 따라 개인의 행위가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사회해체(가난, 주거불안정, 인종적 이질성)가 직접적으로 범죄나 범죄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통제는 물론 공식적 통제와 같은 사회통제(약화)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사회해체가 범죄 또는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ursik and Grasmick, 1993; Hawdon and Ryan, 2009; Rosenfeld, Messner and Baumer, 2001; Sampson, Raudenbush and Earls, 1997; Sampson, Morenoff and Rowley, 2002).⁴⁾ 예를 들어, 샘슨과 동료들(Sampson et al., 1997; 2002)은 이러한 매개과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유형은 사회적 유대/상호작용(social ties/interaction)으로 이웃 간에 유대의 정도와 상호작용의 빈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으로 이웃 간 상호신뢰, 비공식적 사회통제나 사회적 응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포함된다. 셋째 유형은 제도적 자원(institutional resources)으로 지역 내 치안유지를 위한 사법기관의 공식통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집합효율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행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낮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Lee, 2000; Morenoff and Sampson, 1997; Morenoff, Sampson and Raudenbush, 2001; Sampson and Raudenbush, 1999).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통해 개인수

4) 일부 학자들은 공식·비공식 사회통제를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과 관련 지어 설명하고자 하는데, 버식과 그라스믹(Bursik and Grasmick, 1993)은 이를 커뮤니티 수준에서 보호/감시(guardianship)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윌콕스와 동료들(Wilcox et al., 2007)은 보호/감시(guardianship)도 수준에 따라 개인수준의 보호/감시(사회적 유대 및 대인감시)와 환경수준의 보호/감시(공식·비공식 사회통제)로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의 변인들이 지역수준의 변인에 따라 각 개인의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Miethe and Meier, 1994; Wilcox, Land and Miethe, 1994; Wilcox and Land, 1996; 2000; Lauritsen, 2001; Wilcox, Madensen and Tillyer, 2007; Zhang, Messner and Liu, 2007). 윌콕스 등(1994)은 기존의 시애틀 범죄피해조사(Miethe and McDowell, 1993)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하여 재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범죄피해율(burglary rate)에 대한 지역변인(인구유동 지역, 인종적 이질성, 지역의 무질서)의 영향력이 개인(가구)수준의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매우 강한 효과를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후속 연구(Wilcox and Land, 2000)에서 시애틀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윌콕스와 랜드는 각 도시별로 지역변인들의 차이가 가구범죄피해율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수준 변인들의 효과를 단순히 검증하였다는 데 있기보다는 지역수준의 변인과 개인수준의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의 통합모형을 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해체이론은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부각시킴으로써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Bursik and Grasmick, 1993; Zhang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과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통합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의 변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해체이론 변인들에 의해 조절효과(conditional effects)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하여 두 이론의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는 일상활동이론의 개념 가운데 하나인 근접성(proximity)을 개인수준이 아닌 지역수준의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근접성은 잠재적 피해대상과 잠재적 범죄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Cohen et al. 1981; Meier and Miethe, 1993; Miethe and Meier, 1994).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범죄피해의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Singer, 1981). 그러나 근접성을 측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근접성은 엄밀히 말해서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장소에서부터 가해자가 사는 집까지의 거리로 측정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근사변인(proxy variable)을 사용하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피해자의 거주지(도시/농촌), 사회경제적 수준(평균수입, 실업률, 인종구성비), 동네나 이웃의 지각된 위험수준 등으로 측정되었다(Miethe

and Meier, 1990; Tseloni, Wittebrood, Farrell and Pease, 2004). 근접성을 이러한 변인들로 측정한다면 개인수준의 변인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근접성을 지역수준의 변인으로 간주하여 근접성이 개인수준의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수준(individual level)에서 초기 범죄피해 연구들에서 근사변인(proxy variable)으로 사용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범죄피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의 개념들로서 매력성(attractiveness), 노출(exposure), 보호능력(guardianship) 변인들과 범죄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한다. 셋째,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보호/감독의 부재가 시·공간적으로 수렴할 때 범죄피해가 발생한다는 일상활동이론의 핵심적 주장을 매력성, 노출, 보호능력 변인들 간의 통계적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수준(community level)에서는 첫째, 사회해체변인들(주거불안정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공식적 사회통제, 근접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에 대한 개인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이 지역수준 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9년에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선정은 전국의 표본규모를 450개 조사구로 결정한 후에 16개 시도 및 동부, 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별로 조사모집단 분포의 가구 수에 비례배분을 고려하였고, 조사구당 10가구를 조사하여 총 4,710가구에 총 10,671명이 응답하였다⁵⁾.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2수준(level 2) 분석단위는 표본설계 시 사용한 조사구가 아니라 행정구역(시/군/구)을 단위로 하였다. 따라서 2수준 자료는 KCVS에 포함된 시/군/구 사례(aggregated cases)의 평균값으로 되어 있으며, 분석에 사용된 행정구역은 총 174개 지역이다. 2수준의 분석단위를 조사구가 아닌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조사구당 표본 수가 10가구라 1수준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표본수를 늘이기 위함이며, 행정구역이 조사구보다는 2수준 단위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행정구역은 조사구에 비해 나름대로 사회적인 동질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여 2수준 단위로 설정하였다.

2. 변인의 측정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크게 개인범죄피해와 가구범죄피해로 구분을 하였다. 개인범죄피해는 다시 재산범죄피해, 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피해로 나누었다. 개인재산범죄피해는 사기를 제외한 절도만 포함되고,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단순폭행, 심한폭행, 단순협박이 포함되며, 개인성폭력피해(여성만 포함)는 성폭행, 강제추행, 스토킹을 포함시켰다.⁵⁾ 그리고 지역수준의 요인이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사건 발생지가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동일한 경우만을 분석하였다.

가구범죄피해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단순손괴, 기타 가구대상범죄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구범죄피해의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고, 가구의 응답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5)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것.

6) 남성의 성폭력피해도 6명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워 제외시켰다.

(2) 독립변인

① 개인수준 변인

먼저 개인범죄피해와 관련한 독립변인으로는 ‘평소 되도록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 한다’(매력성), ‘호루라기,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보호/감시)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직장이나 학교일로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노출)의 경우 ‘전혀 없음’(1점)부터 ‘거의매일’(8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가구범죄피해와 관련한 독립변인으로는 ‘외출이나 출퇴근으로 집이 비어 있는 시간’(노출)은 ‘거의 비우지 않음’(1점)부터 ‘12시간 이상’(6점)으로,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보호/감시)는 1점부터 5점으로 측정하였고, 집 안팎을 감시하는 장치 및 시설(보호/감시)은 10개의 문항 가운데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점수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주택의 유형’(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세대 구성’(1인가구/2인이상), ‘가구의 성’(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을 포함시켰다.

각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0=남성/1=여성), 연령(10대/20대/30·40대/50대이상), 혼인상태(0=미혼/1=기혼), 취업여부(0=직장있음/1=직장없음(주부제외)), 직업유형(0=기타직종/1=전문·사무·서비스직), 교육수준(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대학원이상), 본인소득수준, 가구소득수준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② 지역수준 변인

지역수준의 변인은 이론적인 논의에 따라 근접성(proximity), 비공식적 통제(informal control), 공식적 통제(public control), 주거불안정성(residential instability)으로 나누어, 관련 문항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하였다. 우선 근접성에는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포함시켰다.⁷⁾ 비공식적 통제는 ‘우리 동네/지역으로서의 인식’, ‘집합효율성’, ‘주민들 간의 친밀성’이 포함되었다.⁸⁾

7)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수준/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렵다’, ‘밤에 혼자서 골목을 다니기가 두렵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렵다’, ‘나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다’, ‘후미진 곳이나 골짜기 등이 많다’, ‘냄새나 소음 등으로 쾌적하지 않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의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8) ‘나는 대략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대체로 누가 동네 아이들인지 알 수 있다’,

공식적 통제는 ‘경찰에 대한 신뢰 및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측정하였고,⁹⁾ 주거 불안정성은 ‘거주 기간’과 ‘이사 횟수’로 측정하였다.¹⁰⁾

IV. 분석 결과

1. 개인의 특성과 범죄피해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범죄피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재산범죄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 개인재산범죄피해는 여성(0.0264)에 비해 남성(0.0313)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0.0630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젊은 연령대일수록 집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0.0246)에 비해 미혼(0.0357)인 경우에 범죄피해를 더욱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인 사람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집밖에서의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잘 돕고 신뢰한다’, ‘이웃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웃들은 우리 집과 생활정도나 교육수준이 비슷하다’ / ‘동네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이웃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가벼운 목례나 눈웃음 정도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말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 ‘약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며 반갑게 안부를 묻는 사람의 수’, ‘30초 이상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인사하는 사람의 수’의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9)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의 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10)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까?’는 거주기간 개월수를 역순으로 재구성하였고, ‘최근 5년이내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는 횟수로 측정하였다.

범죄피해에 노출이 쉽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여부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0.0258)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경우(0.0371)가 범죄피해를 더욱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야외활동에 더욱 자유롭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별로 10대나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높다는 점과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즉 10대나 20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취업여부가 직업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부에 따라 범죄피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연령의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

〈표 1〉 사회인구학적 요인별 개인재산범죄피해

| | 구분 | 사례수 | 평균 | F값 |
|------|------------|--------|--------|------------|
| 성별 | 남성 | 5,112 | 0.0313 | 2.247 |
| | 여성 | 5,559 | 0.0264 | |
| 연령 | 10대 | 1,047 | 0.0630 | 26.134 *** |
| | 20대 | 1,456 | 0.0378 | |
| | 3,40대 | 4,171 | 0.0307 | |
| | 50대 이상 | 3,997 | 0.0145 | |
| 혼인상태 | 미혼 | 4,005 | 0.0357 | 11.047 ** |
| | 기혼 | 6,666 | 0.0246 | |
| 취업여부 | 직업있음 | 7,867 | 0.0258 | 9.430 ** |
| | 직업없음 | 2,804 | 0.0371 | |
| 직업유형 | 기타 직종 | 6,940 | 0.0275 | 1.106 |
| | 전문/사무/서비스직 | 3,731 | 0.0311 | |
| 학력 | 무학 | 477 | 0.0063 | 5.197 *** |
| | 초등학교 | 1,321 | 0.0129 | |
| | 중학교 | 1,458 | 0.0350 | |
| | 고등학교 | 3,699 | 0.0335 | |
| | 대학교 | 3,421 | 0.0304 | |
| | 대학원 이상 | 295 | 0.0271 | |
| 소득수준 | 100만원 미만 | 3,758 | 0.0208 | 8.458 *** |
| | 100~300만원 | 5,003 | 0.0308 | |
| | 300만원 이상 | 1,910 | 0.0393 | |
| 전체 | | 10,671 | 0.0288 | |

*p<0.05 **p<0.01 ***p<0.001

직업유형별로는 전문/사무/서비스직종(0.0311)이 기타 직종(0.0275)에 비해 개인재산 범죄피해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력별 개인재산범죄피해는 중학교를 정점으로 학력이 그보다 낮을수록, 그보다 높을수록 범죄피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학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인재산범죄의 매력성이 높아지게 되어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결과에서는 학력과 매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힘들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과 연령간의 관계로 인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취업여부별 범죄피해와 같이 10대와 20대는 대체로 학교에 재학중인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학력의 범죄피해가 가장 높다는 것은 성인 중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피해보다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의 범죄피해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범죄피해가 0.0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득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범죄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에 있어서 매력성이 높아지게 되어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0.0079)이 남성(0.006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0.02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 개인폭력범죄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의 개인재산범죄피해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0대나 2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집밖에서 자유로운 활동들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사회인구학적 요인별 개인폭력범죄피해

| | 구분 | 사례수 | 평균 | F값 |
|------|------------|--------|--------|------------|
| 성별 | 남성 | 5,112 | 0.0067 | 0.586 |
| | 여성 | 5,559 | 0.0079 | |
| 연령 | 10대 | 1,047 | 0.0229 | 26.134 *** |
| | 20대 | 1,456 | 0.0130 | |
| | 3,40대 | 4,171 | 0.0046 | |
| | 50대 이상 | 3,997 | 0.0040 | |
| 혼인상태 | 미혼 | 4,005 | 0.0130 | 28.519 *** |
| | 기혼 | 6,666 | 0.0039 | |
| 취업여부 | 직업있음 | 7,867 | 0.0050 | 22.872 *** |
| | 직업없음 | 2,804 | 0.0139 | |
| 직업유형 | 기타 직종 | 6,940 | 0.0086 | 4.884 * |
| | 전문/사무/서비스직 | 3,731 | 0.0048 | |
| 학력 | 무학 | 477 | 0.0084 | 1.378 |
| | 초등학교 | 1,321 | 0.0038 | |
| | 중학교 | 1,458 | 0.0110 | |
| | 고등학교 | 3,699 | 0.0084 | |
| | 대학교 | 3,421 | 0.0061 | |
| | 대학원 이상 | 295 | 0.0034 | |
| 소득수준 | 100만원 미만 | 3,758 | 0.0088 | 1.194 |
| | 100~300만원 | 5,003 | 0.0060 | |
| | 300만원 이상 | 1,910 | 0.0079 | |
| 전체 | | 10,671 | 0.0073 | |

*p<0.05 **p<0.01 ***p<0.001

혼인상태별로는 미혼(0.0130)이 기혼(0.0039)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 앞에서 살펴본 개인재산범죄피해에서와 같이 미혼인 경우에 기혼자보다 집밖에서의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짐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피해가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취업여부별로는 직업이 있는 경우(0.0050)에 비해 직업이 없는 경우(0.0139)에서 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높은 10대와 20대가 대체로 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직업유형별로는 전문/사무/서비스직(0.0048)에 비해 기타 직종(0.0086)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타 직종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대와 20대의 학생들로 인해 전문/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력과 소득수준별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력과 소득수준은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범죄를 유발하는 매력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매력성은 재산범죄피해와 폭력범죄피해에 대해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각각 0.0145와 0.0280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집단들 간의 범죄피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범죄피해가 대체로 연령대가 낮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별로는 미혼(0.0154)이 기혼(0.002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미혼자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야외활동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취업여부별로는 직업이 없는 경우(0.0148)가 직업이 있는 경우(0.005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성범죄피해가 주로 10대와 20대에 집중되고 있고, 주로 이 연령대에서는 학교에 재학중으로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직업유형별로는 전문/사무/서비스직(0.0114)이 기타 직종(0.006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문/사무/서비스직의 경우에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가 다른 직업유형범주에 비해 더욱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무학과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성범죄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학교(0.0142)와 대학원 이상(0.0103)은 다른 학력범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부에서와 같이 성범죄피해가 특히 20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여성의 피해가 더욱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 이 0.00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성범죄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요인별 성범죄피해

| | 구분 | 사례수 | 평균 | F값 |
|------|------------|-------|--------|------------|
| 연령 | 10대 | 483 | 0.0145 | 20.265 *** |
| | 20대 | 751 | 0.0280 | |
| | 3,40대 | 2,127 | 0.0061 | |
| | 50대 이상 | 2,198 | 0.0005 | |
| 혼인상태 | 미혼 | 2,201 | 0.0154 | 30.422 *** |
| | 기혼 | 3,358 | 0.0024 | |
| 취업여부 | 직업있음 | 4,275 | 0.0054 | 11.699 ** |
| | 직업없음 | 1,284 | 0.0148 | |
| 직업유형 | 기타 직종 | 3,984 | 0.0060 | 4.399 * |
| | 전문/사무/서비스직 | 1,575 | 0.0114 | |
| 학력 | 무학 | 407 | 0.0000 | 3.920 ** |
| | 초등학교 | 875 | 0.0000 | |
| | 중학교 | 763 | 0.0052 | |
| | 고등학교 | 1,866 | 0.0080 | |
| | 대학교 | 1,551 | 0.0142 | |
| | 대학원 이상 | 97 | 0.0103 | |
| 소득수준 | 100만원 미만 | 2,078 | 0.0087 | 1.503 |
| | 100~300만원 | 2,527 | 0.0083 | |
| | 300만원 이상 | 954 | 0.0031 | |
| | 전체 | 5,559 | 0.0076 | |

*p<0.05 **p<0.01 ***p<0.001

앞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개인범죄피해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간에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요인들과 개인범죄피해간의 관계이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1〉에서의 결과는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이 각각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소득수준만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상태, 취업여부, 학력의 효과가 대체로 연령의 효과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즉 <표 1>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대체로 10대와 20대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취업여부가 아니고, 학력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상태의 경우에서도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높은 10대와 20대가 대체로 미혼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인상태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수준은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 범죄에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연령과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성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변인 | 개인재산범죄피해 | | 개인폭력범죄피해 | | 성범죄피해 | |
|----------------------|----------|----------|----------|----------|---------|----------|
| | B | exp(B) | B | exp(B) | B | exp(B) |
| 성별 | -.114 | .893 | .186 | 1.204 | | |
| 연령 | -.540 | .583 *** | -.603 | .547 *** | -.443 | .642 * |
| 혼인상태 | .168 | 1.183 | -.477 | .621 | -1.170 | .311 * |
| 취업여부 | -.059 | .943 | -.025 | .976 | .528 | 1.695 |
| 직업유형 | .183 | 1.201 | -.127 | .881 | .788 | 2.200 |
| 학력 | -.044 | .957 | -.184 | .832 | .569 | 1.766 ** |
| 소득수준 | .192 | 1.211 * | -.198 | .821 | -.677 | .508 ** |
| -2Loglikelihood | 2703.586 | | 874.215 | | 427.595 | |
| Cox & Snell R Square | .007 | | .005 | | .012 | |

*p<0.05 **p<0.01 ***p<0.001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2>에서는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그리고 직업유형이 각각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상호통제한 결과는 연령만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령과 개인폭력범죄피해는 정적 관계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상태, 취업여부, 그리고 직업유형이 연령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대체로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혼인상태가 기혼이고, 취업여부가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직업유형이 전문/사무/서비스직인 경우에는 대부분 30대 이상

인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혼인상태, 취업여부, 그리고 직업유형이 독립적으로 개인폭력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다.

범죄를 유발시키는 매력성으로 볼 수 있는 학력과 소득수준은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달리 여전히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연령, 혼인상태,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표 3>에서는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로는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직업유형 그리고 학력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분석과 비교하여 취업여부와 직업유형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3>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취업여부는 연령과 연관되어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업유형은 전문/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직업유형이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유형이기 때문에 학력과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소득수준은 이전의 분석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상호 통제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범죄피해요인들과 범죄피해와의 관련성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범죄대상의 매력성, 보호, 노출을 들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것이라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연령은 젊은 세대일수록 집밖에서의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이는 범죄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범죄피해요인을 통해 범죄피해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피해요인에 따른 개인재산범죄피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현금소지 성향은 낮음이 0.0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금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현금소지 성향은 과거에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에 개인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 현금을 가

급적 소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현금소지 성향은 개인재산범죄피해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에 대해서는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 경우에 0.0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낮아짐에 따라 개인재산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늦은 귀가 성향은 높음이 0.0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늦은 귀가 성향이 낮아질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늦은 귀가 성향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으로는 범죄의 매력성과 관련된 현금소지 성향과 범죄에 노출된 늦은 귀가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금소지 성향은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범죄피해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 5〉 범죄피해요인에 따른 개인재산범죄피해

| 구분 | | 사례수 | 평균 | F값 |
|----------------------|----|--------|--------|------------|
| 현금소지 성향 (매력성) | 낮음 | 5,416 | 0.0358 | 13.379 *** |
| | 보통 | 3,170 | 0.0265 | |
| | 높음 | 2,085 | 0.0139 | |
| 호신도구소지 성향 (보호) | 낮음 | 7,873 | 0.0277 | 0.638 |
| | 보통 | 2,093 | 0.0315 | |
| | 높음 | 705 | 0.0326 | |
| 늦은 귀가 성향 (노출) | 낮음 | 3,573 | 0.0193 | 14.784 *** |
| | 보통 | 4,469 | 0.0282 | |
| | 높음 | 2,629 | 0.0426 | |
| 전체 | | 10,671 | 0.0288 | |

*p<0.05 **p<0.01 ***p<0.001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¹¹⁾ 현금소지 성향을 살펴보면 현금소지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다른 집

11) '현금소지 성향'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낮음으로, '보통이다'를 보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높음으로 재구성하였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낮음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보통으로,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를 높음으로 재구성하였다. '늦은 귀가 성향'변인은 '6개월에 한두번 정도'와 '전혀 없음'을 낮음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름에 한번 정도', '한달에 한번 정도', '3~4개월에 한두번 정도'를 보통으로, '거의 매일'과 '2~3일에 한번 정도'를 높음으로 재구성하였다.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현금소지 성향이 보통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집단의 개인폭력범죄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에 대해서는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개인폭력범죄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보통인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호신도구 소지 성향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늦은 귀가 성향에 대해서는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늦은 귀가 성향이 낮아질수록 범죄피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늦은 귀가 성향의 집단간 개인폭력범죄피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으로는 현금소지 성향과 같은 매력성과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같은 보호요인보다는 늦은 귀가 성향으로 인한 범죄에 노출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범죄피해요인에 따른 개인폭력범죄피해

| 구분 | | 사례수 | 평균 | F값 |
|-----------------------|----|--------|--------|----------|
| 현금소지 성향 (매력성) | 낮음 | 5,416 | 0.0078 | 1.941 |
| | 보통 | 3,170 | 0.0050 | |
| | 높음 | 2,085 | 0.0096 | |
| 호신도구 소지 성향 (보호) | 낮음 | 7,873 | 0.0074 | 1.152 |
| | 보통 | 2,093 | 0.0057 | |
| | 높음 | 705 | 0.0113 | |
| 늦은 귀가 성향 (노출) | 낮음 | 3,573 | 0.0048 | 4.696 ** |
| | 보통 | 4,469 | 0.0069 | |
| | 높음 | 2,629 | 0.0114 | |
| 전체 | | 10,671 | 0.0073 | |

*p<0.05 **p<0.01 ***p<0.001

범죄피해요인에 따른 성범죄피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현금소지 성향에 대해서는 현금소지 성향이 낮은 집단의 성범죄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현금소지 성향이 높은 집단의 성범죄피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현금소지 성향에 따른 집단간 성범죄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은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은 집단일 경우에 성범죄피해가 가장 높았고,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호신도구 소지 성향에 따른 성범죄피해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늦은 귀가 성향에 대해서는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은 집단이 성범죄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늦은 귀가 성향이 낮은 집단일수록 성범죄피해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늦은 귀가 성향에 따른 집단간 성범죄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으로는 매력성과 보호와 같은 범죄피해요인보다는 범죄에 노출과 같은 늦은 귀가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7〉 범죄피해요인에 따른 성범죄피해

| 구분 | | 사례수 | 평균 | F값 |
|-----------------------|----|-------|--------|-----------|
| 현금소지 성향 (매력성) | 낮음 | 3,118 | 0.0090 | 1.542 |
| | 보통 | 1,529 | 0.0072 | |
| | 높음 | 912 | 0.0033 | |
| 호신도구 소지 성향 (보호) | 낮음 | 3,935 | 0.0071 | 0.212 |
| | 보통 | 1,209 | 0.0083 | |
| | 높음 | 415 | 0.0096 | |
| 늦은 귀가 성향 (노출) | 낮음 | 2,434 | 0.0029 | 8.204 *** |
| | 보통 | 2,170 | 0.0092 | |
| | 높음 | 955 | 0.0157 | |
| 전체 | | 5,559 | 0.0076 | |

*p<0.05 **p<0.01 ***p<0.001

범죄피해는 매력성, 보호, 그리고 노출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피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매력성이 높으면서 보호가 낮은 사람들이거나 보호가 낮으면서 노출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지 매력성만 높거나, 노출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피해가 더욱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요인들의 개별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우선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금소지 성향과 늦은 귀가 성향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현금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 결

과는 <표 5>에서와 같이 현금소지 성향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보다는 과거의 개인재산범죄피해로 인해 현재의 현금소지 성향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요인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매력성, 보호, 그리고 노출과 같은 범죄피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범죄피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그리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 간의 상호작용

| 변인 | 개인재산범죄피해 | | 개인폭력범죄피해 | | 성범죄피해 | |
|----------------------|----------|-----------|----------|----------|---------|-----------|
| | B | exp(B) | B | exp(B) | B | exp(B) |
| 현금소지성향(a) | -.344 | .709 *** | -.045 | .956 | -.458 | .633 * |
| 호신도구소지성향(b) | .091 | 1.095 | -.021 | .980 | .224 | 1.251 |
| 늦은 귀가 성향(c) | .115 | 1.122 *** | .167 | 1.182 ** | .280 | 1.323 *** |
| a*b | -.052 | .950 | .152 | 1.165 | -.170 | .844 |
| a*c | .039 | 1.039 | -.095 | .910 | .003 | 1.003 |
| b*c | -.055 | .947 | .003 | 1.003 | -.243 | .785 |
| a*b*c | -.032 | .969 | -.161 | .851 | -.021 | .979 |
| -2Loglikelihood | 2723.960 | | 907.004 | | 465.194 | |
| Cox & Snell R Square | .006 | | .001 | | .005 | |

*p<0.05 **p<0.01 ***p<0.001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늦은 귀가 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늦은 귀가 성향을 가질수록 폭력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피해요인들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으로는 범죄에 노출이라 할 수 있는 늦은 귀가 성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범죄피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현금소지성향과 늦은 귀가 성향이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현금소지 성

향이 낮을수록,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증가하였다. 현금소지 성향의 경우에는 성범죄가 주로 10대와 20대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의 효과와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현금소지 성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금소지 성향과 성범죄피해 가능성 간에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유형들의 모든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매력성, 보호, 그리고 노출과 같은 범죄피해요인들 중에서 매력성과 노출의 주효과가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출과 같이 늦은 귀가 성향은 모든 범죄피해유형들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범죄피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모든 범죄피해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결과에서와 같이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요인들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관계지어 볼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범죄피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현금소지성향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연령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보다는 남성일 경우에, 혼인상태는 미혼일 경우, 취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현금소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호신도구 소지성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일 경우에 호신도구 소지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은 낮은 경우에, 미혼인 경우, 학력과 소득수준은 높은 경우에 호신도구 소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늦은 귀가성향은 남성인 경우, 낮은 연령대이고, 미혼인 경우, 학력과 소득수준은 높은 경우에 늦은 귀가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학력의 상관계수가 각각 -.366과 .441로 나타나고 있어 늦은 귀가 성향과의 상관관계가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범죄피해요인 간의 상관관계

| | 성별 | 연령 | 혼인상태 | 취업여부 | 학력 | 소득수준 |
|-----------|-----------|-----------|-----------|----------|-----------|----------|
| 현금소지성향 | -.111 *** | -.007 | -.082 *** | .072 *** | -.049 *** | -.031 ** |
| 호신도구 소지성향 | .067 *** | -.080 *** | -.020 * | .001 | .065 *** | .027 ** |
| 늦은 귀가 성향 | -.263 *** | -.366 *** | -.156 *** | .006 | .441 *** | .225 *** |

*p<0.05 **p<0.01 ***p<0.001

2. 가구의 특성과 가구범죄피해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유형, 집을 비우는 정도, 세대구성, 장금장치, 그리고 가구주 성별을 통해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주거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0.0710으로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연립, 다세대, 기타가 0.386이었다. 이들 주거유형별 집단간 가구범죄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을 비우는 정도별로는 4~8시간 이내가 0.05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거의 비우지 않음은 0.03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집을 비우는 정도에 따라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집을 비우는 정도에 따른 집단간 가구범죄피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대구성별로는 1인 가구인 경우에 0.0500으로 2인 이상 가구(0.042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장금장치별로는 3~4개를 설치한 가구에서 가구범죄피해가 0.05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장금장치가 없다는 가구에서는 0.0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금장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장금장치가 많아질수록 가구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 가구주일 경우에 가구범죄피해는 0.0481이고 여성 가구주일 경우에는 0.0491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10> 가구의 특성별 가구범죄피해

| 구분 | | 사례수 | 평균 | F값 |
|-----------|-----------|-------|--------|------------|
| 주거유형 | 단독주택 | 2,042 | 0.0710 | 17.995 *** |
| | 연립/다세대/기타 | 648 | 0.0386 | |
| | 아파트/오피스텔 | 2,020 | 0.0287 | |
| 집을 비우는 정도 | 거의 비우지 않음 | 920 | 0.0391 | .817 |
| | 2시간 이내 | 523 | 0.0497 | |
| | 2~4시간 이내 | 839 | 0.0429 | |
| | 4~8시간 이내 | 1,173 | 0.0580 | |
| | 8~12시간 이내 | 965 | 0.0487 | |
| | 12시간 이상 | 290 | 0.0517 | |
| 세대구성 | 1인 가구 | 3,763 | 0.0500 | .853 |
| | 2인 이상 가구 | 947 | 0.0422 | |

| | | | | |
|--------|--------|-------|--------|----------|
| 장금장치 | 없음 | 275 | 0.0182 | 5.125 ** |
| | 1~2개 | 1,486 | 0.0572 | |
| | 3~4개 | 1,497 | 0.0588 | |
| | 5개 이상 | 1,452 | 0.0344 | |
| 가구주 성별 | 남성 가구주 | 3,284 | 0.0481 | .018 |
| | 여성 가구주 | 1,426 | 0.0491 | |
| 전체 | | 4,710 | 0.0484 | |

*p<0.05 **p<0.01 ***p<0.001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각 요인들을 통제한 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우선 주거유형이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가구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립, 다세대, 기타의 주거유형에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가구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반해,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와 같은 주거유형에서는 범죄예방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금장치는 가구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장금장치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범죄피해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장금장치의 수는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가구범죄피해의 결과로 장금장치를 설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변인 | B | exp(B) |
|----------------------|----------|-----------|
| 주거유형(1=단독주택) | 1.229 | 3.419 *** |
| 주거유형(1=연립/다세대/기타) | .547 | 1.728 * |
| 집을 비우는 정도 | .076 | 1.079 |
| 세대구성 | -.369 | .692 |
| 장금장치 | .098 | 1.103 * |
| 가구주 성별 | .147 | 1.159 |
| 가구소득 | .021 | 1.022 |
| -2Loglikelihood | 1690.269 | |
| Cox & Snell R Square | .009 | |

*p<0.05 **p<0.01 ***p<0.001

3. 사회해체와 범죄피해

(1) 사회해체요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해체요인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주거 불안정성,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은 정적인 영향을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고 있다. 즉 주거 불안정성이 클수록, 근접성이 클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빈번한 가구의 이사나 현 거주지에 오래동안 살지 않음으로 인해 이웃주민들과 유대의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접성과 같이 현거주지에 서의 범죄수준이나 범죄의 두려움, 혹은 무질서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통제는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경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

| 변인 | B | exp(B) |
|----------------------|----------|-----------|
| 주거 불안정성 | .107 | 1.113 ** |
| 비공식적 통제 | .050 | 1.051 |
| 근접성 | .156 | 1.169 *** |
| 공식적 통제 | -.095 | .909 *** |
| -2Loglikelihood | 2350.402 | |
| Cox & Snell R Square | .006 | |

*p<0.05 **p<0.01 ***p<0.001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접성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신의 현거주지가 범죄수준이나 범죄의 두려움, 혹은 무질서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표 14>의 개인재산범죄피해와 비교하면, 주거 불안정이나 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이 개인재산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는 근접성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범죄피해는 범죄수준이나 범죄의 두려움과 같이 직접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경우에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

| 변인 | B | exp(B) |
|----------------------|---------|-----------|
| 주거 불안정성 | -.077 | .926 |
| 비공식적 통제 | -.102 | .903 |
| 근접성 | .279 | 1.321 *** |
| 공식적 통제 | .053 | 1.054 |
| -2Loglikelihood | 766.378 | |
| Cox & Snell R Square | .002 | |

*p<0.05 **p<0.01 ***p<0.001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들은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근접성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근접성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증가하였고, 공식적 통제는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공식적 통제가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지역의 환경이 범죄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인지한 경우에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경찰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성범죄피해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어 성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찰활동과 같은 공식적 통제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14〉 성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

| 변인 | B | exp(B) |
|----------------------|---------|-----------|
| 주거 불안정성 | .032 | 1.032 |
| 비공식적 통제 | -.125 | .882 |
| 근접성 | .312 | 1.366 *** |
| 공식적 통제 | -.135 | .874 * |
| -2Loglikelihood | 370.182 | |
| Cox & Snell R Square | .006 | |

*p<0.05 **p<0.01 ***p<0.001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은 비공식적 통제와 근접성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근접성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 통제는 다른 이웃주민들 간의 유대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같이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 통제는 오히려 범죄피해와 부적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는 반대로 비공식적 통제가 가구범죄피해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범죄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의 <표 12>에서와 같이 주거유형 중에서 단독주택의 가구범죄피해가 가장 높았다. 주거유형이 단독주택인 지역에서는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비공식적 통제가 높다면 비공식적 통제가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주거유형의 특성이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식적 통제는 가구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경찰활동이 활발할수록 가구범죄피해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해체요인

| 변인 | B | exp(B) |
|----------------------|----------|-----------|
| 주거 불안정성 | -.014 | .986 |
| 비공식적 통제 | .145 | 1.156 *** |
| 근접성 | .168 | 1.182 *** |
| 공식적 통제 | -.118 | .888 *** |
| -2Loglikelihood | 1673.550 | |
| Cox & Snell R Square | .013 | |

*p<0.05 **p<0.01 ***p<0.001

(2) 사회해체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다수준분석

① 사회해체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표 16>과 같다. 우선 사회해체요인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근접성, 공식적 통제가 모두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근접성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주민들 간의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감독과 같은 요인들이 낮아짐에 따라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접성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이 높다고 인지된 지역에서는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의지로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가정했으나 오히려 범죄피해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해체요인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은 사회해체요인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사회해체요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수준에서 성별이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에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인상태와 이들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미혼인 경우에 범죄피해를 더욱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기혼자에 비해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혼인상태와 근접성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미혼인 경우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12)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 불안정성과 혼인상태 간의 상호작용이 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준다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기혼자일수록 범죄피해가 적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동시에 주거 불안정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혼자일수록 범죄피해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해석과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미혼자일수록 범죄피해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다수준분석 프로그램인 HLM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통해 가장 타당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표 16〉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 변인 | Coefficient | T값 | 변인 | Coefficient | T값 |
|-----------|-------------|------------|------------|-------------|------------|
| Intercept | | | 연령 | -.540 | -.209 *** |
|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374 | 3.374 ** | *주거 불안정성 | .042 | .384 |
| *비공식적 통제 | .266 | 2.793 ** | *비공식적 통제 | -.041 | -.393 |
| *근접성 | .389 | 4.476 *** | *근접성 | -.067 | -1.064 |
| *공식적 통제 | -.266 | -3.185 ** | *공식적 통제 | -.066 | -.906 |
| 성별 | -.297 | -2.835 ** | 소득수준 | .259 | 3.374 **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048 | .279 | *주거 불안정성 | -.178 | -1.266 |
| *비공식적 통제 | .234 | 1.608 | *비공식적 통제 | -.092 | -.806 |
| *근접성 | .169 | 1.544 | *근접성 | -.325 | -4.014 *** |
| *공식적 통제 | -.119 | -1.028 | *공식적 통제 | -.029 | -.287 |
| 혼인상태 | .114 | .845 | 늦은 귀가 성향 | .041 | 2.104 *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617 | -3.036 ** | *주거 불안정성 | -.034 | -1.069 |
| *비공식적 통제 | -.650 | -3.973 *** | *비공식적 통제 | -.076 | -2.347 * |
| *근접성 | -.499 | -4.274 *** | *근접성 | -.135 | -7.424 *** |
| *공식적 통제 | -.173 | -1.184 | *공식적 통제 | .033 | 1.430 |
| 취업여부 | -.235 | -1.725 | 호신도구 소지 성향 | .014 | .269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153 | -.737 | *주거 불안정성 | -.328 | -4.438 *** |
| *비공식적 통제 | -.299 | -1.831 | *비공식적 통제 | -.273 | -4.186 *** |
| *근접성 | -.141 | -1.301 | *근접성 | -.052 | -.761 |
| *공식적 통제 | .086 | .653 | *공식적 통제 | .066 | 1.121 |
| 학력 | -.126 | -2.748 ** | 현금소지 성향 | -.333 | -6.287 ***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034 | -.544 | *주거 불안정성 | .118 | 1.908 |
| *비공식적 통제 | .017 | .272 | *비공식적 통제 | .074 | 1.318 |
| *근접성 | .099 | 2.231 * | *근접성 | .041 | 1.026 |
| *공식적 통제 | .128 | 2.576 * | *공식적 통제 | -.002 | -.028 |

*p<0.05 **p<0.01 ***p<0.001

취업여부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해체요인들과의 상호작용 모두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러한 점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 취업여부가 범죄의 노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력과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상호작용은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력과 공식적 통제의 상호작용에서도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였다.

연령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렇지만 연령은 사회해체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이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개인재산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늦은 귀가 성향과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더욱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접성이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재산범죄피해에는 유의한

13) <표 4>에서의 결과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다 수준분석에서는 지역수준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주거 불안정성과 비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곳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재산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에 대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만 개인재산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더욱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앞의 <표 5>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과거의 범죄피해로 인해 현재의 현금소지 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우선 사회해체요인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공식적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일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비공식적 통제는 개인재산범죄피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하였으나 오히려 범죄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7>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 변인 | Coefficient | T값 | 변인 | Coefficient | T값 |
|-----------|-------------|-----------|-----------|-------------|------------|
| Intercept | | | 연령 | -.434 | -7.355 *** |
| | | | 상호작용 | | |
| * 주거 불안정성 | .424 | 4.434 *** | * 주거 불안정성 | .233 | 2.606 * |
| * 비공식적 통제 | .467 | 4.813 *** | * 비공식적 통제 | .194 | 2.187 * |
| * 근접성 | .104 | 1.602 | * 근접성 | -.096 | -1.978 * |
| * 공식적 통제 | -.282 | -2.758 ** | * 공식적 통제 | -.344 | -4.625 *** |
| 성별 | .295 | 3.060 ** | 소득수준 | -.344 | -3.360 **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 주거 불안정성 | -.533 | -3.267 ** | * 주거 불안정성 | -.248 | -1.783 |
| * 비공식적 통제 | -.179 | -1.331 | * 비공식적 통제 | .063 | .419 |

| | | | | | |
|-----------|-------|------------|------------|-------|-----------|
| * 근접성 | .436 | 3.968 *** | * 근접성 | .342 | 5.174 *** |
| * 공식적 통제 | -.182 | -1.798 | * 공식적 통제 | -.135 | -1.233 |
| 혼인상태 | -.307 | -2.128 * | 늦은 귀가 성향 | .128 | 4.999 ***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 주거 불안정성 | .379 | 2.172 * | * 주거 불안정성 | -.128 | -3.666 ** |
| * 비공식적 통제 | -.172 | -.778 | * 비공식적 통제 | -.120 | -3.533 ** |
| * 근접성 | -.496 | -4.564 *** | * 근접성 | -.057 | -2.685 ** |
| * 공식적 통제 | .033 | .205 | * 공식적 통제 | -.071 | -2.830 ** |
| 취업여부 | .030 | .194 | 호신도구 소지 성향 | .434 | 6.506 ***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 주거 불안정성 | 1.268 | 5.579 *** | * 주거 불안정성 | .016 | .216 |
| * 비공식적 통제 | .222 | 1.368 | * 비공식적 통제 | .102 | 1.210 |
| * 근접성 | -.266 | -1.901 | * 근접성 | .176 | 2.002 * |
| * 공식적 통제 | -.275 | -2.122 * | * 공식적 통제 | .219 | 3.383 ** |
| 학력 | -.158 | -3.063 ** | 현금소지 성향 | .071 | 1.399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 주거 불안정성 | -.069 | -1.065 | * 주거 불안정성 | -.067 | -.822 |
| * 비공식적 통제 | .050 | .784 | * 비공식적 통제 | -.157 | -2.187 * |
| * 근접성 | .154 | 3.834 *** | * 근접성 | -.066 | -1.093 |
| * 공식적 통제 | -.022 | -.586 | * 공식적 통제 | .104 | 1.670 |

*p<0.05 **p<0.01 ***p<0.001

성별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일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를 더욱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사회해체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여성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근접성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에 따라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과 같은 사회해체요인들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자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혼인상태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혼인상태와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혼인상태와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혼자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개인적 수준에서 혼인상태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와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혼자들에 비해 미혼자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취업여부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개인폭력범죄피해를 더욱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취업여부와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대해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공식적 통제가 높아질수록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욱 감소하였다.

학력에 대하여 개인적 수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연령과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연령과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나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도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근접성, 공식적 통제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이나 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은 개인적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만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 비공식적 통제,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늦은 귀가 성향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폭력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불안정성이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늦은 귀가 성향과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아질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늦은 귀가 성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통제와 늦은 귀가 성향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범죄에 취약한 상황을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우선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을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경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현금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낮은 지역에서는 현금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성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사회해체요인이 성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은 성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는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식적 통제는 성범죄피해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적 요인 중에서 우선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혼인상태는 성범죄피해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정적으로 성범죄피해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미혼의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부는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여부와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취업여부와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직업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여부와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학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주거 불안정성과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력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사회해체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 변인 | Coefficient | T값 | 변인 | Coefficient | T값 |
|-----------|-------------|------------|------------|-------------|------------|
| Intercept | | | 소득수준 | -1.308 | -9.996 *** |
|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190 | .792 | *주거 불안정성 | -.163 | -.677 |
| *비공식적 통제 | -.194 | -.967 | *비공식적 통제 | -.542 | -2.640 ** |
| *근접성 | .481 | 3.316 ** | *근접성 | .248 | 2.128 * |
| *공식적 통제 | -.301 | -2.100 * | *공식적 통제 | -.725 | -5.764 ** |
| 혼인상태 | -1.036 | -5.536 *** | 낮은 귀가 성향 | -.108 | -2.861 ** |
|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425 | -1.614 | *주거 불안정성 | -.131 | -1.865 |
| *비공식적 통제 | -.211 | -.838 | *비공식적 통제 | -.056 | -1.114 |
| *근접성 | .333 | 1.966 | *근접성 | .191 | 3.930 *** |
| *공식적 통제 | .699 | 3.972 *** | *공식적 통제 | -.022 | -.502 |
| 취업여부 | -.360 | -1.287 | 호신도구 소지 성향 | .439 | 5.535 *** |
|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2.173 | 5.469 *** | *주거 불안정성 | -.048 | -.325 |
| *비공식적 통제 | .136 | .413 | *비공식적 통제 | -.310 | -2.306 * |
| *근접성 | -.757 | -3.854 *** | *근접성 | -.156 | -1.246 |
| *공식적 통제 | .248 | .920 | *공식적 통제 | .367 | 3.698 *** |
| 학력 | .867 | 8.192 *** | 현금소지 성향 | .194 | 1.855 |
|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455 | 2.501 * | *주거 불안정성 | .275 | 1.614 |
| *비공식적 통제 | .277 | 1.776 | *비공식적 통제 | -.048 | -.361 |
| *근접성 | -.370 | -4.200 *** | *근접성 | -.229 | -2.375 * |
| *공식적 통제 | -.021 | -.246 | *공식적 통제 | -.218 | -2.898 ** |
| 연령 | -.604 | -5.578 *** | | | |
| | | | | | |
| 상호작용 | | | | | |
| *주거 불안정성 | .538 | 3.319 ** | | | |
| *비공식적 통제 | .134 | .904 | | | |
| *근접성 | -.339 | -2.772 ** | | | |
| *공식적 통제 | -.400 | -2.707 ** | | | |

*p<0.05 **p<0.01 ***p<0.001

연령은 개인적 수준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주거 불안정성, 근접성, 그리고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과 주거 불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 불안정성이 낮은 지역에서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이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 비해 더욱 감소하였다. 연령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개인적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수준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는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귀가 성향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근접성과의 상호작용만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늦은 귀가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성범죄피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늦은 귀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피해가 늦은 귀가 성향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근접성과 같은 지역적 영향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신도구를 소지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인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비공식적 통제와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신도구 소지 성향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는 호신도구 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은 개인적 수준에서 성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은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과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성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현금소지 성향이 낮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높아지고 있다. 현금소지 성향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 현금소지 성향이 높을수록 성범죄피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사회해체요인과 가구의 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해체요인과 가구특성 간의 상호작용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우선 사회해체요인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근접성만이 가구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접성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가구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범죄피해는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비공식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이 가구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가구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일수록 가구범죄피해는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가구범죄피해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과 사회해체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가구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비우는 정도는 가구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집을 비우는 정도가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비우는 정도는 사회해체요인들 중에서 근접성과의 상호작용이 가구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비우는 정도와 근접성 간의 상호작용은 가구범죄피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접성이 낮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집을 비우는 정도가 높아지면 가구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사회해체요인과 가구특성 간의 상호작용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 변인 | Coefficient | T값 | 변인 | Coefficient | T값 |
|--------------|-------------|------------|--------------|-------------|-----------|
| Intercept | | | 세대구성(1=1인가구) | -.037 | -.246 |
|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236 | 1.397 | *주거 불안정성 | -.088 | -.249 |
| *비공식적 통제 | -.004 | -.038 | *비공식적 통제 | .543 | 3.131 ** |
| *근접성 | .177 | 2.195 * | *근접성 | -.066 | -.398 |
| *공식적 통제 | -.031 | -.378 | *공식적 통제 | -.580 | -3.654 ** |
| 가구소득 | .149 | 3.078 ** | 잠금장치 | -.033 | -.854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100 | .631 | *주거 불안정성 | -.066 | -.726 |
| *비공식적 통제 | .127 | 2.117 * | *비공식적 통제 | -.002 | -.052 |
| *근접성 | -.036 | -.568 | *근접성 | .011 | .209 |
| *공식적 통제 | -.079 | -1.354 | *공식적 통제 | -.055 | -1.324 |
| 주택유형(1=단독주택) | 1.015 | 4.533 *** | 가구주 성별(1=여성) | .004 | .033 |
| 상호작용 | | | 상호작용 | | |
| *주거 불안정성 | -.504 | -1.213 | *주거 불안정성 | -.153 | -.474 |
| *비공식적 통제 | .263 | 1.136 | *비공식적 통제 | -.140 | -.910 |
| *근접성 | -.027 | -.135 | *근접성 | -.274 | -1.915 |
| *공식적 통제 | -.196 | -1.261 | *공식적 통제 | .032 | .223 |
| 집을 비우는 정도 | .073 | 2.111 * | | | |
| 상호작용 | | | | | |
| *주거 불안정성 | -.012 | -.127 | | | |
| *비공식적 통제 | -.028 | -.602 | | | |
| *근접성 | -.015 | -3.962 *** | | | |
| *공식적 통제 | -.042 | -1.105 | | | |

*p<0.05 **p<0.01 ***p<0.001

세대구성은 가구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통제와 공식적 통제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대구성과 비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가구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공식적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1인 가구인 경우에 가구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구성과 공식적 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가구범죄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공식적 통제가 낮은 지역에서는 1인 가구인 경우에 가구범죄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범죄피해와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젊은 사람일수록 개인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할 확률은 높아지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은 낮아진다. 혼인상태(미혼)는 성폭력범죄와 연관이 있으나 아마도 연령효과와 노출효과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상활동이론과 범죄피해와의 연관을 살펴보기 위해 현금소지(매력성), 호신도구소지(보호), 늦은 귀가(노출)과 범죄피해와의 상관을 보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 피해는 주로 늦은 귀가와 연관이 있으며 호신도구등 보호효과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소지 성향 즉 범죄피해자의 매력성을 보여주는 요인은 예상과 달리 소지하는 정도가 낮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연령 효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즉 늦은 귀가가 많은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고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3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마이어와 미이테의 (Meier and Miethe, 1993)의 예상과는 달리 이상의 세가지 요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연하면 비록 매력이 없고 보호성이 떨어지더라도 노출 즉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은 다양한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해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늦은 시간에 밖에 나다니지 않아야한다고 해석하면 범죄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게 된다. 물론 범죄 예방에서 개인이 해야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국가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가구범죄 피해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셋째, 가구범죄피해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의 범죄피해가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 한편 집을 비우는 시간, 가구주 성별, 가구소득 등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을 비우는 정도, 세대구성 즉 식구가 많은 집, 여성 가구주, 가구소득 등등은 범죄피해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 등 단독주택에 비해 경비가 잘 된 지역은 범죄피해가 낮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 형태가 범죄피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처럼 보인다. 특히 장금장치 수가 늘어날수록 범죄피해 확률이 높아진다

는 점으로 볼 때 범죄피해 확률이 높은 지역 주택일수록 장금장치를 철저히 하나 장금장치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구범죄는 개인의 예방 노력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보다 구조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해체와 관련된 4개의 하위변인과 다양한 범죄피해와의 연관성을 로짓분석과 다수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4개의 변인 중 범죄자의 출현가능성 및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를 보여주는 '근접성'이 범죄피해와 연관성이 가장 크며, 두 번째로는 '공식적 통제'로 보인다. 즉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반면 공식적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낮아진다. '주거불안정성' 즉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현 주소에서 거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역이 재산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나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및 가구범죄와는 큰 연관이 없다.

한편 집합효율성 및 지역사회 친밀도를 보여주는 비공식적 통제는 개인의 범죄피해와는 연관이 없고 가구범죄피해만 연관이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비공식적인 통제가 높은 지역에서 가구범죄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우리나라 거주지역과 주민 간의 관계 때문이라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단독 및 연립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앞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아파트 지역의 범죄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거주자의 특성은 이웃 간에 왕래가 거의 없어 아래 위 층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비공식적 통제의 수준이 낮다는 말이다. 이 결과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범죄피해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해체 관련변인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2수준 변인이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개인 특성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재산범죄와 가구범죄 피해에 비해 개인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 폭력성 범죄와 상호작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폭력범죄에서 근접성은 거의 모든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직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폭력범죄에 대해 근접성은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말이다. 즉 지역사회가 무질서하며 주민들이 범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그 자체가 폭력성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성이 다양한 개인적 특성, 예컨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 등의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여 폭력성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식적통제는 재산범죄와는 상호작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폭력성 범죄와는 연령, 낮은 귀가성향 등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젊은 사람과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은 공식통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폭력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개인수준에서는 ‘연령’과 ‘늦은 귀가’가 범죄피해와 연관이 크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은 ‘근접성’이며 그 다음으로 ‘공식적 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는 젊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사회가 무질서하여 그 결과 주민들이 범죄를 두려워하는 지역에서 범죄피해 특히 폭력성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경찰 활동 등 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범죄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범죄예방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늦게까지 밖에서 보내는 젊은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줄이려면 일찍 귀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근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 우범지역이나 유흥가를 밤 늦게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수준 변인의 효과 중 근접성과 공식적 통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 예방 노력이 개인적인 수준의 조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성식 · 황지영 (2008).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폭력", *형사정책연구* 19(1):167-189.
- Amir, Menachem (1967). "Victim precipitated Forcible Rap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8:493-502.
- Bursik, Robert J. Jr. (1984). "Urban dynamics and ecological studies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63:393-413.
- Bursik, Robert J. Jr.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519-551.
- Bursik, Robert J. Jr., and Harold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 Bursik, Robert J. Jr., and Jim Webb (1982). "Community change and patterns of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24-42.
-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 Cohen, Lawrence E., James R. Kluegel, and Kenneth C. Land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505-524.
- Felson, Marcus, and Lawrence E. Cohen (1980). "Human ecology and crime: A routine activity approach." *Human Ecology* 8(4):389-406.
- Garofalo, James (1987). "Reassessing the lifestyle model of criminal victimization." Pp. 23-42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ichael R. Gottfredson and Travis Hirshi, Beverly Hills, CA: Sage.
- Gottfredson, Michael R., and Michael J. Hindelang (1981). "Sociological aspect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7:107-128.
- Hawdon, James and John Ryan (2009). "Social capital, social control, and changes in victimization rates." *Crime and Delinquency* 55(4): 526-549.
- Hindelang, Micheal J., Micheal R. Gottfredson, and James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Mass: Ballinger.
- Kornhauser, Ruth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uritsen, Janet L. (2001). "The social ecology of violent victimization: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in the NCV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7(1):3-32.
- Lee, Matthew R. (2000). "Community cohesion and violent predatory victimization: A theoretical extension and cross-national test of opportunity theory." *Social Forces* 79(2):683-688.
- Liska, Allen E., and Steven F. Messner (1999). *Perspectives on Crime and Deviance*.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Meier, Robert F., and Terance D. Miethe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Pp. 459-199 in *Crime and Justice* 15, edited by Albert J. Reiss Jr., and Michael Ton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ethe, Terance D., and David McDowall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741-759.
-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0). "Criminal opportunity and victimization rates: A structural-choice theor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243-266.
- Miethe, Terance D., and Robert F. Meier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iethe, Terance D., Mark C. Stafford, and J. Scott Long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84-194.
- Morenoff, Jeffrey D., and Robert J. Sampson (1997). "Violent crime and the spatial dynamics of neighborhood transition: Chicago, 1970-1990." *Social Forces* 76:31-65.
- Morenoff, Jeffrey D., Robert J. Sampson, and Stephen W. Raudenbush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3):517-559.
- Robinson, W.S. (1950). "Ecological correlation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351-357.
- Rock, Paul (2000). "Theoretical perspectives on victimization." Pp. 37-61 in *Handbook of Victims and Victimology*, edited by S. Walklate. Willan Publishing.
- Rosenfeld, Richard, Steven F. Messner, and Eric P. Baumer (2001). "Social capital and homicide." *Social Forces* 80(1):283-309.

- Sampson, Robert J. (1983). "Structural density and criminal victimization." *Criminology* 21:276-293.
- Sampson, Robert J. (1985). "Neighborhood and crime: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sonal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7-40.
- Sampson, Robert J. (1987). "Communities and crime." Pp. 91-114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ichael R. Gottfredson and Travis Hirshi, Beverly Hills, CA: Sage.
- Sampson, Robert J. (1991). "Linking the micro-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Social Forces* 70:43-64.
-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774-802.
- Sampson, Robert J., and John D. Wooldredge (1987). "Linking the micro-level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371-393.
- Sampson, Robert J., and Stephen W. Raudenbush (1999). "System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03-651.
- Sampson, Robert J., Jeffrey D. Morenoff, and Thomas Gannon-Rowley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443-478.
- Sampson, Robert J., Stephen W. Raudenbush, and Felton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918-924.
-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31). *Social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Commission on Law Observation and Enforcement, No. 13, Report on the Causes of Crime*, Volume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nger, Simon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2):779-788.
- Smith, Douglas A., and G. Roger Jarjoura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s,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621-640.
- Tseloni, Andromachi, Karin Wittebrood, Graham Farrell, and Ken Pease (2004).

- "Burglary victim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e United States and Netherlands: A cross-national comparative test of routine activities and lifestyle theori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6-91.
-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ie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and census trac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147-180.
- Wilcox Rountree, Pamela, and Kenneth C. Land (2000). "Generalizability of multilevel models of burglary victimization: A cross-city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29:284-305.
- Wilcox Rountree, Pamela, Kenneth C. Land, and Terance D. Miethe (1994). "Macro-Micro Integration in the study of victimization: Hierarchical logistic mod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Criminology* 32(3):387-414.
- Wilcox Rountree, Pamela, Tamara D. Madensen, and Marie Skubak Tillyer (2007). "Guardianship in context: Implications for burglary victimization risk and prevention." *Criminology* 45(4):771-801.
- Wolfgang, Martin, E. (1957). "Victim precipitated Criminal Homicid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48(1):1-14.
- Zhang, Lening, Steven F. Messner, and Jianhong Liu (2007).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risk of household burglary in the city of Tianjin, China."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918-937.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박정선, 이성식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박정선*, 이성식**

I. 서론

범죄두려움은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도 사용되듯이 우리의 삶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율은 낮은 편이지만 국민 과반수가 범죄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듯이(최인섭, 김지선, 1996) 범죄두려움은 실제 범죄율과 독립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범죄두려움은 범죄현상 못지않게 중요한데, 범죄두려움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사회성원들 간에 불신감을 조장하며, 그로 인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에 또 다른 주요 연구주제가 된다.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의 주요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 범죄두려움은 여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범죄두려움의 원인에 관해서는 취약성모델,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등 다양한 모델과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Taylor and Hale, 1986; Franklin et al., 2008).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존의 주요 연구모델들을 적용하여 어떠한 모델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를 통해 누가 왜 범죄두려움을 겪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런데 개인특성요인에 주목하는 취약성모델과는 달리 무질서나 사회통합모델들은 범죄두려움의 원인으로 개인보다는 지역특성에 주목하고 있는데도 기존 연구들은 개인 혹은 지역의 각 수준에서 그것을 혼용하여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그것을 개인과 지역 양 수준에서 다룸으로써 다수준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여러 모델들에 근거한 다양한 개인 및 지역수준의 요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인들로 구성된 다수준적 모델을 구성하여 기존 모델들의 상대적 우위를 검증하려고 하며, 그 모델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어떠한 주요 원인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근거로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범죄두려움에 관한 주요 모델

(1) 취약성모델

취약성모델에서는 개인의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취약성에는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신체적으로 힘이 부족한 여성이나 노인들이 더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고(Clement and Kleiman, 1977; Braungart et al., 1980), 후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수인종, 혹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에 노출됨으로 해서 더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Will and McGrath, 1995). 그 중에서 기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인종의 영향력은 뚜렷하지 않지만 주로 성과 연령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Warr, 1984).

취약성모델은 피해가설로 불리기도 하여 과거의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의 또 다른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Skogan and Maxfield, 1981). 하지만 피해가설은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당수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여성이나 노인은 피해경험이 낮음에도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면 엄밀히 말해 피해가설보다는 취약성모델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접피해가설에 의하면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두려움의 관계는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간접피해경험이 중요하여 주위로부터 간접적으로 피해경험을 접할 때 두려움에 더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Liska et al., 1988), 예컨대 TV로부터 범죄사건을 접하거나 취약한 주위친지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더 두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 있다(Skogan and Maxfield, 1981; Taylor and Hale, 1986). 이렇듯 실제 범죄피해보다는 개인취약성이나 간접피해경험으로부터 오는 피해위험의 가능성이 두려움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 무질서모델

초기의 연구가 개인의 특성에 주목했다면 무질서모델에서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으로서 지역무질서가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본다(Lewis and Salem, 1986). Wilson과 Kelling(1982)의 깨어진 창이론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의 부적절한 사회통제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한 무질서지역에서는 범죄가 통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면이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무질서에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있다. 물리적 무질서는 거리의 쓰레기나 벽의 낙서, 버려진 폐차 등의 징후를, 사회적 무질서는 거리의 불량배, 술에 만취한 사람들의 모습, 매춘녀나 홈리스들이 눈에 띄는 것으로 각각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무질서를 지역수준의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Taylor and Hale, 1986; Rountree and Rand, 1996), 그것을 개인수준에서 개인들이 인지한 무질서의 측면으로 그 영향력을 주로 살펴보았는데(Covington and Taylor, 1991; LaGrange et al., 1992), 지역 및 개인 두 수준 모두를 고려한 Perkins와 Taylor의 연구(1996)에서는 개인이 인지한 무질서가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했다. 한편 LaGrange와 동료들의 연구(1992)에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영향력을 비교했는데, 사회적 무질서가 물리적 무질서보다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3) 사회통합모델

사회통합모델은 지역해체와 지역의 구성원들의 통합력 약화가 범죄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역염려가설로도 불리는 이 모델은 구조적으로 해체된 지역에서 지역통합과 유대가 낮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역의 사회통제력이 낮다고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지역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Talyor and Hale, 1986). 사회해체이론의 논의에서는 지역구조적으로 경제수준에서 열악하고 이동율이 높은 해체된 지역, 그리고 그로 인해 지역유대와 결속력이 약한 지역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여 왔는데(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사회통합모델은 그러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통합모델과 일치하게 사회통합수준이 높을 때 두려움은 낮다는 것을 제시한다(Skogan and Maxfield, 1981;

Rountree and Rand, 1996).

하지만 Wilson(1996) 등의 학자는 지역유대와 통합이 범죄통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빈곤하고 주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지역성원들은 범죄에 관용적이어서 유대가 높다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Bellair, 1997), 실제로 Villarreal과 Silva의 연구(2006)에서는 하층지역의 사회결속력이 높은 지역의 성원이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성원이 지역주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오히려 범죄피해를 간접적으로 더 접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이는 간접피해경험을 증시한 취약성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유대와 결속력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범죄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집합효율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Sampson et al., 1997). 집합효율성은 지역구성원들의 신뢰와 비공식적 통제력, 즉 교제와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구성원들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교제하고, 또 범죄예방에 참여하면 할수록 범죄가 통제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Sampson et al., 1997; Sampson and Raudenbush, 1999; Morenoff et al., 2001).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은 이처럼 범죄가 통제됨으로 해서 그 지역성원들의 범죄두려움도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집합효율성은 범죄발생이외에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Gibson et al., 2002).

(4)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범죄피해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기존 두려움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유대 등의 특성에 주로 주목한 것에 비해 공식적 사회통제인 경찰활동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공식적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범죄와 두려움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Kelling and Coles, 1996; Skogan and Harnett, 1997)이 제기되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이 범인검거와 법집행에 주목했던 것에 반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이외의 지역의 무질서라든지, 지역주민의 삶,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문제 현안에 관심을 갖는다(Skogan and Harnett, 1997).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이 대민봉사자로서 지역에 봉사하며 지역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주목한

다. 범죄두려움의 문제도 지역사회경찰활동 측면에서 중요시 다뤄야 하는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지역 주민의 범죄두려움은 낮을 것이라고 본다.

Skogan의 연구(1990)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낮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Zhao와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는 지역사회에 경찰이 얼마나 가시적인가가 두려움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했고, 또한 Salmi와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도 경찰의 가시성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들 연구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찰이 주민에 가시화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일 때 두려움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성식(2000a)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덜 겪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보다 최근의 연구들(Scheider et al., 2003; Roh and Oliver, 2005)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2. 최근의 영향비교 연구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여러 모델들 중 어떠한 모델이 경험적 지지를 받는가? 여기서는 그 모델들의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다루었던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동안 연구를 보면 취약성모델보다는 무질서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예컨대 Carcach와 동료들의 연구(1995)에 따르면 지역의 무질서가 증가함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증가하며, 이때 남녀의 두려움의 차이는 작아진다고 봄으로써 성과 같은 개인취약성 변인보다는 지역의 무질서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McCarrell과 동료들의 연구(1997)에서도 범죄두려움은 무질서와 같은 지역특성에 의한 것이지 개인특성은 덜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지역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회통합보다는 무질서의 영향력이 다소 더 크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 Kanan과 Pruitt의 연구(2002)에서는 지역수준의 무질서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중요했지만 지역수준의 사회통합의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성식의 연구(2000b)에 의하면 개인이 인지한 사회통합과 유대의 영향력은 비록 약했지만, 지역경제가 낮고 이동율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무질서를 인지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에서의 피해위험을 인지하게 되

어 그로 인해 두려움을 더 겪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Gibson과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는 개인특성, 무질서, 그리고 사회통합변인들의 영향을 다룸에 있어 특별히 사회통합변인들은 개인수준의 집합효율성인지를 매개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개인배경변인으로는 성, 연령, 수입이, 그리고 무질서와 사회통합 모두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통합변인은 집합효율성인지를 매개로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럼에도 여러 요인들 중에서 무질서가 사회통합, 그리고 집합효율성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McCreary와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도 사회통합모델의 변인들은 두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개인특성이나 지역무질서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보다 최근에 Franklin과 동료들(2008)은 취약성, 무질서,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 모델을 검증했는데 각 모델의 주요 요인들이 모두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무질서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무질서나 사회통합, 그리고 집합효율성 등은 주로 개인수준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것을 거시지역수준에서 다룬 연구는 몇 연구를 제외하곤(Kanan and Pruitt, 2002; Wyant, 2008) 드물다. 앞서 Frankli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개인취약성, 지역무질서나 사회통합의 변인들을 모두 개인수준에서 다루듯이 대부분의 무질서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인지한 개인수준에서의 영향력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수준의 무질서를 다룬 최근의 Wyant의 연구(2008)에서는 지역의 무질서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Villarreal과 Silva의 연구(2006)에서는 무질서가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지만 범죄두려움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Roh와 Oliver의 연구(2005)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기존의 모델과 함께 다루었는데, 기존의 주요 세 모델 중 취약성모델에서의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했으나 무질서인지(무질서모델)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사회통합모델)의 영향력은 컸으며, 본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변인은 두려움과 관계가 있었으나 무질서인지나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통제된 후 그 요인들과 함께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제시했는데, 저자들은 무질서와 지역만족도가 외적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무질서인지나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무질서 해소와 주민들의 비공식통제 참여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ilver and Miller,

2003). 실제로 국내 이성식의 연구(2000b)에서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사회무질서를 해결하고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켜 두려움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Ferguson과 Mindel(2007)은 모델 간의 우위에 관한 경쟁보다는 통합모델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에서와 같이 피해위험인지가 두려움의 궁극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 연령과 같은 개인변인, 피해경험, 그리고 무질서와 지역만족도(사회통합변인), 집합효율성, 경찰의 가시성이 피해위험인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매개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에서는 위험해석모델에서와 같이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론 피해위험인지가 가장 컸지만 그 외에도 성, 개인피해, 지역만족도와 무질서가 두려움에 영향을 주었고, 이때 성, 개인피해, 지역만족도와 무질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피해위험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경찰가시성은 집합효율성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그리고 집합효율성은 지역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모델검증에서는 지역변인들을 지역수준이 아닌 개인이 인지한 점수로 측정할 점에 한계가 있다.

III. 연구가설 및 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취약성, 무질서, 사회통합모델,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에 근거하여 개인특성들(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개인범죄피해)과 지역구조적 특성(지역경제수준과 지역이동성), 지역무질서, 집합적 효율성으로서의 지역유대와 비공식 통제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경찰활동이 개인의 범죄두려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려고 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역수준의 독립변인들을 개인이 인지한 개인 값이 아닌 지역수준에서 다룸으로써 다수준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다수준적 모델은 <그림 1>에서와 같으며 이 연구는 여러 모델들의 상대적 우위의 검증에 관심을 갖는다.

취약성모델에 따르면 여성, 노인, 그리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더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취약층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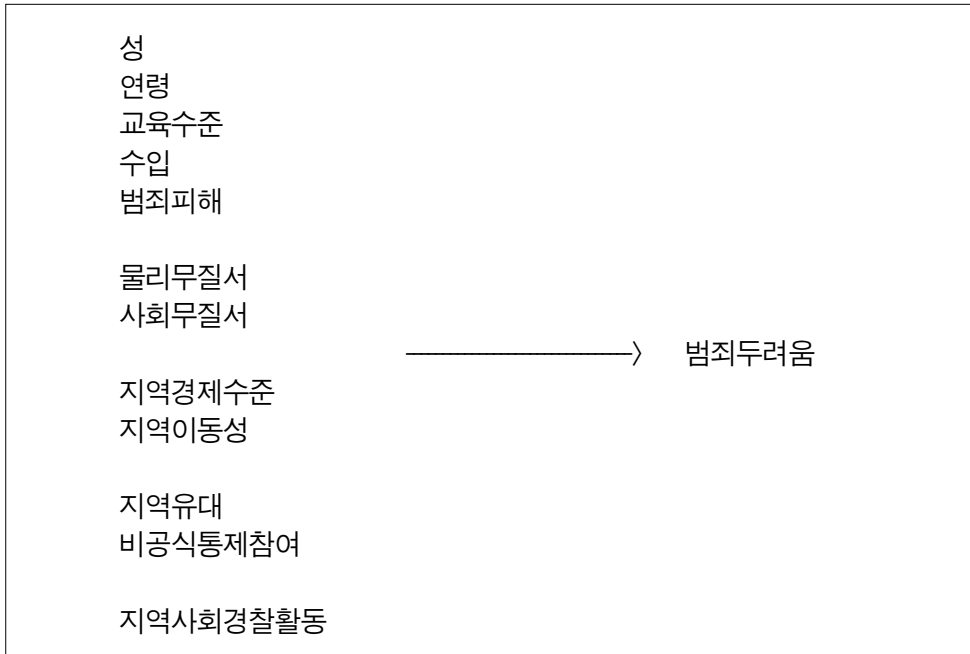
은 범죄피해를 더 당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고도 범죄피해에 취약하거나 또는 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두려움을 더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범죄두려움을 더 겪을 것이다.

깨어진 창이론에 의하면 지역의 무질서가 두려움의 주요 원인일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의 무질서 징후로 구성원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지역구성원들의 이주율이 높고, 그럼으로 지역구성원들의 유대가 낮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Skogan, 1990), 이처럼 범죄두려움의 원인은 지역무질서이고, 오히려 지역유대의 약화는 두려움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론에서는 지역무질서가 아닌 지역유대나 비공식통제참여가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Sampson과 Raudenbush(1999)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무질서나 범죄는 모두 공통된 원인에 의해 설명된다고 했는데, 지역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력이 낮은 지역에서 무질서하고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무질서와 범죄와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입장대로라면 지역무질서(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보다는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가 범죄두려움에 보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사회해체이론에 근거하여 지역구조적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기존 논의들에 근거해 본다면(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지역구조적 요인은 지역과정적 특성인 사회통합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경제수준과 이동성을 다루기로 하는데, 즉 지역경제수준이 낮고 이동성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가 낮게 되어 범죄두려움을 더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편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에 따르면 지역의 경찰활동이 활발할수록 두려움을 덜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이나 앞서 기존 연구들에서 볼 때, 지역의 경찰활동은 지역무질서, 지역유대, 비공식통제참여에 영향을 줌으로써 범죄두려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Silver and Miller, 2003; Ferguson and Mindel, 2007), 혹은 그 영향이 낮아 상대적으로 그 직접적 영향력은 낮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Roh and Oliver, 2005).



〈그림 1〉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 모델

2.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2008년도 한국의 범죄피해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의 표집틀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한 총 254,601개의 조사구이다. 이 조사구들은 16개의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하여 확률 비례계통추출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조사구에서 전국적으로 4,500가구를 표집한 후 표본가구내 만 14세이상의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4,710개의 가구에서 총 10,671명이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및 지역수준의 변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수준분석(HLM)을 사용할 것이다. 다수준분석은 일반 회귀분석과 차별화된다.

공식1: 일반회귀식

$$y_i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q x_q + \gamma_1 w_1 + \gamma_2 w_2 + \dots + \gamma_q w_q + e_i$$

여기에서 x 는 수준1의 예측변수, β 는 수준 1의 회귀계수

w 는 수준2의 예측변수, γ 는 수준 2의 회귀계수

일반최소자승(OLS) 회귀분석은 두 개의 수준에서 관찰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y_i 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 y_i 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들은 각 수준의 회귀계수 β 와 γ 에 의해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준 2의 변수 w 의 영향력이 종속변수 y_i 에 직접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수준 2의 영향력이 개인에 직접 작용할 경우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집단의 수준의 특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유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준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회귀식을 쓴다.

공식2: 다수준회귀식

$$y_{ij} = \beta_{0j} + \beta_{1j}x_{ij} + \beta_{2j}x_{2j} + \cdots + \beta_{pj}x_{pj} + r_{ij}$$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1j} + \gamma_{02}w_{2j} + \cdots + \gamma_{0q}w_{qj} + u_{0j}$$

.

$$\beta_{pj} = \gamma_{p0} + \gamma_{p1}w_{1j} + \gamma_{p2}w_{2j} + \cdots + \gamma_{pq}w_{qj} + u_{pj}$$

여기에서 x 는 수준1의 예측변수, β 는 수준 1의 회귀계수

w 는 수준2의 예측변수, γ 는 수준 2의 회귀계수

다수준분석에서 종속변수 y_{ij}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수준 1에서 측정된 변수들 뿐이다. 수준 2에서 측정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각 집단별 회귀식의 절편 β_{0j} , 즉 집단의 평균에만 영향을 준다. 또한 각 모수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식도 좀 더 견고한 방식으로 하게 되어 모수추정에 있어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3.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범죄두려움은 정서적 기반의 두려움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즉 평소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로 측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은 일반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로, 예컨대 “당신은 당신의 동네 외출이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의 안전도 혹은 피해위험인지에 대한 평가였고(Skogan and Maxfield, 1981; Lewis and Salem, 1986; Covington and Taylor, 1991) 그러한 측정은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용된다(Gibson et al., 2002; McCree et al., 2005). 하지만 이후의 많은 논의들에서는 정서적 두려움과 피해위험에 대한 인지가 각각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aGrange et al., 1992; Ferraro, 1995; Kanan and Pruitt, 2002). 그리고 Ferraro(1995)는 피해위험에 대한 인지가 정서적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고 봄으로써 두 개념을 구분했고 최종적으로는 정서적 기반 두려움을 범죄두려움으로 보았다. 따라서 엄밀한 좁은 의미에서 보면 범죄두려움은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서적 두려움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범죄두려움을 일반적인 측정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 특수적 피해가능성에 대한 정서두려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컨대 Rountree(1998)는 폭력과 재산피해 각각의 구체적인 범죄피해 항목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측정했고, Salami와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는 열네 개의 범죄항목에 있어서의 피해에 대한 염려로, 그리고 Franklin과 동료들의 연구(2008)에서도 일곱 개 항목의 구체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으로 측정했다. 이런 측정방법은 구체적인 피해항목을 통해 두려움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그 항목의 범죄가능성이외에 그 피해가능성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을 질문한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아홉 가지의 구체적인 범죄피해 문항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로 측정하기로 한다.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기물파괴, 주거침입, 스토킹, 그리고 주민번호도용 등의 항목에 대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35).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개인특성요인들은 성별(여자=0, 남자=1), 연령은 10대(1점)부터 70대(1-7점)까지, 그리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1-6점)으로 측정하였고, 개인수입은 개인의 월평균소득으로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 ‘200-300만’, ‘300-500만’, ‘500-1000만’, ‘1000만 이상’의 일곱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범죄피해경험은 지난 일년 동안의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없음=0; 있음=1)로 측정하였다.

지역구조적 특성으로 지역경제수준은 위의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질문하고 지역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점수화하였고, 아울러 지역이동성은 응답자들의 현 동네에서의 거주년수(이후 변수명칭을 지역거주기간으로 함)를 질문하고 지역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측정하였다.

지역무질서는 기존 논의들에 근거하여(Taylor and Hale, 1986; LaGrange et al., 1992)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나누고, 물리적 무질서는 동네환경에 대해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다”, “후미진 곳이나 공터가 많다”, “냄새나 소음으로 쾌적하지 않다”의 세 문항을($\alpha=.791$), 사회적 무질서는 우리 동네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84$).

지역유대는 지역구성원들과의 친밀도와 상호협조로 측정을 하여(Sampson and Groves, 1989; Gibson et al., 2002), “나는 대개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대체로 누가 동네아이들인지 알 수 있다”, “나는 급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잘 돕고 신뢰한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95$).

비공식통제참여는 Sampson과 동료들의 논의(1997)에 근거하여 그와 유사하게 주로 범죄예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로 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이웃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의 네 문항을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95$).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의 공식적 경찰활동과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데(Bursik and Grasmick, 1993), 이에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각각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51$).

여기서 지역무질서와 지역유대, 지역비공식통제참여,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의 지역변인들은 지역별로 평균값으로 지역값을 산출하도록 하였고, 모델분석에서는 이들 지역값의 지역변인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종속변인으로 다룰 범죄두려움은 9-45범위에서 평균값이 22.6으로 중간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개인수준변인(1수준)으로 조사대상자 성별은 남자 5112명(47.91%), 여자 5559명(52.09%)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고, 연령은 10대(1점)부터 70대(7점)까지에서 평균 3.94였다. 교육수준은 1-6범위에서 평균값이 3.86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수입은 1-7점에서 평균이 3.97이었다. 범죄피해의 경험자는 808명으로 전체의 7.57%이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 | 변수명 | 사례수 | 평균(빈도)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개인수준변인 | 범죄두려움 | 10671 | 22.60 | 7.44 | 9.00 | 45.00 |
| | 성별 | 10671 | 여자 5559(52.09%) 남자 5112(47.91%) | 0.50 | 0.00 | 1.00 |
| | 연령 | 10671 | 3.94 | 1.76 | 1.00 | 7.00 |
| | 교육수준 | 10671 | 3.86 | 1.20 | 1.00 | 6.00 |
| | 개인수입 | 10671 | 3.10 | 1.39 | 1.00 | 7.00 |
| | 범죄피해 | 10671 | 없음 9863(92.43%) 있음 808(07.57%) | 0.26 | 0.00 | 1.00 |
| | 변수명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지역수준변인 | 지역경제수준 | 425 | 3.85 | 0.82 | 1.83 | 6.12 |
| | 지역거주기간 | 425 | 14.79 | 13.80 | 0.5 | 65.11 |
| | 물리적무질서 | 425 | 7.80 | 1.58 | 3.52 | 13.82 |
| | 사회적무질서 | 425 | 7.63 | 1.57 | 3.21 | 12.50 |
| | 지역유대 | 425 | 12.90 | 2.17 | 6.75 | 19.55 |
| | 비공식통제참여 | 425 | 13.06 | 1.45 | 6.71 | 18.39 |
| | 지역사회경찰활동 | 425 | 12.58 | 1.39 | 8.44 | 18.36 |

지역수준변인(2수준)으로 지역구조적 특성변인 중 지역경제수준은 1.83-6.12범위에서 평균값이 3.85이었고, 지역거주기간은 0.50-65.11범위에서 평균값이 14.79년수 였다. 물리

적 무질서는 3.52-13.82범위에서 평균값이 7.80으로 다소 낮았고, 사회적 무질서는 3.21-12.50범위에서 평균값이 7.63이었다. 지역유대감은 6.75-19.55범위에서 평균값이 12.90이었고, 지역비공식통제활동에의 참여는 6.71-18.39범위에서 평균값이 13.06으로 제시되어 사회통합변인들의 점수는 다소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8.44-18.36범위에서 평균값이 12.58로 다소 낮았다.

2. 범죄두려움의 변량분석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범죄두려움의 변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HLM으로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개인수준(수준1)의 변량이 약 82.39%인데 비해 지역수준(수준2)의 변량은 약 17.61%로 나타나 개인과 지역이 약 5:1의 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역수준의 변량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수준 분석을 위한 근거가 된다. 즉 지역수준에서의 변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변량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ANOVA 표 (HLM): 범죄두려움 변량분석표

| 변수 | 범죄두려움(425읍면동) |
|------------------------------|-----------------|
| 고정효과 | |
| 전체평균 γ_{00} (표준오차) | 22.504 (0.1667) |
| 랜덤효과 | |
| 지역간 ν_j | 9.844(17.61%) |
| 지역내 ν_{ij} | 46.043(82.39%) |
| 전체 γ_{00} | 55.89(100%) |
| 카이제곱 | 2601.695*** |
| 자유도 | 424 |
| Deviance | 71919.833 |

3. 범죄두려움에 관한 모델들의 검증

여기서부터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듯이 범죄두려움에 관한 주요 모델들을 검증해보기로 한다. 우선 취약성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수준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개인수입 및 범죄피해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평균 두려움은 22.88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3.677점 정도 낮았고, 연령이 10년 단위로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0.349점 정도 낮아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0.570점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비해 개인수입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 본 연구의 예측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히려 젊은층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위험성과 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피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두려움은 2점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2.010$) 통계적 유의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HLM에서는 표준오차에 대한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출력하지 않으나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작업을 통해 회귀계수를 표준화시켜 본 결과, 성별의 영향력이 가장 커서 $\beta=-0.247$ 의 값을 보였고, 다음이 교육수준($\beta=0.092$), 연령($\beta=-0.083$), 피해경험($\beta=0.0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환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상으로는 피해경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었으나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경험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도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경험과 같이 편차가 적은 변수는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취약성에 근거한 취약성변인들은 개인수입만 빼고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과 범죄피해의 경우만 취약성모델과 일치함을 제시했다.

〈표 3-1〉 범죄두려움에 관한 취약성모델 검증결과

|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β | T-ratio | 자유도 | P 값 |
|----------------|-----|----------|--------|---------|---------|----------|-------|
| 절편(B0) | G00 | 22,926 | 0,468 | | 48,983 | 424 | 0,000 |
| 성별(B1) | G10 | -3,677 | 0,147 | -0,247 | -25,024 | 10665 | 0,000 |
| 연령(B2) | G20 | -0,349 | 0,050 | -0,083 | -6,960 | 10665 | 0,000 |
| 교육수준(B3) | G30 | 0,570 | 0,078 | 0,092 | 7,316 | 10665 | 0,000 |
| 개인수입(B4) | G40 | 0,125 | 0,069 | 0,023 | 1,814 | 10665 | 0,069 |
| 범죄피해(B5) | G50 | 2,256 | 0,250 | 0,080 | 9,026 | 10665 | 0,000 |
| 확률효과 | | 표준편차 | 변량요소 | | 자유도 | 카이제곱 | P 값 |
| 절편 | U0 | 2,941 | 8,648 | | 424 | 2528,304 | 0,000 |
| 범죄두려움 | R | 6,475 | 41,929 | | | | |
| Deviance | = | 70917,08 | (DF=2) | | | | |

두 번째 무질서모델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주목한다. 그 결과는 〈표 3-2〉에서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오직 지역수준의 무질서 변인만을 고려할 때의 평균 두려움은 22,507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 무질서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두려움의 정도는 0,072점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엔 무질서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두려움의 정도가 0,872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거리의 쓰레기나 소음보다는 사회적 무질서들을 통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로 무질서모델은 나름대로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범죄두려움에 관한 무질서모델 검증결과

|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β | T-ratio | 자유도 | P 값 |
|----------------|-----|----------|--------|---------|---------|----------|-------|
| 절편 | G00 | 22,507 | 0,152 | | 148,529 | 422 | 0,000 |
| 물리적무질서 | G10 | 0,072 | 0,146 | 0,024 | 0,496 | 422 | 0,620 |
| 사회적무질서 | G20 | 0,872 | 0,150 | 0,282 | 5,796 | 422 | 0,000 |
| 확률효과 | | 표준편차 | 변량요소 | | 자유도 | 카이제곱 | P 값 |
| 절편 | U0 | 2,802 | 7,854 | | 422 | 2226,037 | 0,000 |
| 범죄두려움 | R | 6,785 | 46,037 | | | | |
| Deviance | = | 71843,55 | (DF=2) | | | | |

세 번째의 사회통합모델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지역경제수준과 지역이동성(지역거주기간)의 영향력, 그리고 지역과정적 특성으로서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3-3-1>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을 제시하는데, 지역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은 높아지고($b=0.859$),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적어지며($b=-0.060$) 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도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수준과 지역거주기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지역거주기간의 β 값이 -0.101 로 지역경제수준의 β 값 0.093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이동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과연 이러한 구조적 영향력이 지역과정변인들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변인과 지역과정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했다. 그 분석결과 <표 3-3-2>를 보면 구조적 특성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지역거주기간이 그 영향력에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앞서 지역거주기간의 영향력은 β 값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경제수준의 효과보다 더 컸었는데, 이 결과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지역거주기간의 효과가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지역유대와 참여도는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정작 과정적 변인들인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가 유의미하지 않아 사회통합모델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했다. 비공식통제참여의 영향은 매우 낮았고, 지역유대의 경우는 $p<.10$ 수준에서만 유의미했다. 지역구조변인으로 지역경제수준의 영향력은 여전히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지만 사회통합모델의 예측과는 달리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표 3-3-1> 범죄두려움에 관한 사회통합모델 검증결과(지역구조)

|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β | T-ratio | 자유도 | P 값 |
|----------------|-----|----------|--------|---------|---------|----------|-------|
| 절편 | G00 | 22.480 | 0.155 | | 144.922 | 422 | 0.000 |
| 지역경제수준 | G10 | 0.859 | 0.211 | 0.093 | 4.069 | 422 | 0.000 |
| 지역거주기간 | G20 | -0.060 | 0.016 | -0.101 | -3.737 | 422 | 0.000 |
| 확률효과 | | 표준 편차 | 변량요소 | | 자유도 | 카이제곱 | P 값 |
| 절편 | U0 | 2.866 | 8.213 | | 422 | 2257.233 | 0.000 |
| 범죄두려움 | R | 6.785 | 46.039 | | | | |
| Deviance | = | 71862.59 | (DF=2) | | | | |

〈표 3-3-2〉 범죄두려움에 관한 사회통합모델의 검증결과(지역구조+지역과정)

|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β | T-ratio | 자유도 | P 값 |
|-------------|-----|----------|--------|---------|---------|----------|-------|
| 절편 | G00 | 22,482 | 0,154 | | 145,892 | 420 | 0,000 |
| 지역경제수준 | G10 | 0,933 | 0,215 | 0,101 | 4,333 | 420 | 0,000 |
| 지역거주기간 | G20 | -0,020 | 0,024 | -0,034 | -0,825 | 420 | 0,410 |
| 지역유대 | G10 | -0,295 | 0,155 | -0,079 | -1,903 | 420 | 0,057 |
| 비공식통제참여 | G20 | -0,008 | 0,146 | -0,001 | -0,052 | 420 | 0,959 |
| 확률효과 | | 표준편차 | 변량요소 | | 자유도 | 카이제곱 | P 값 |
| 절편 | U0 | 2,849 | 8,118 | | 420 | 2226,103 | 0,000 |
| 범죄두려움 | R | 6,785 | 46,039 | | | | |
| Deviance | = | 71861,24 | (DF=2) | | | | |

네 번째의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위해서는 〈표 3-4-1〉에서와 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할수록 범죄피해두려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0.923$). 한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이 지역무질서와 지역유대 및 비공식통제참여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의 과정적 변인들을 추가한 결과는 〈표 3-4-2〉에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은 지역무질서와 사회통합변수에 의해 일부 효과만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값은 $b=-0.923(\beta=-0.341)$ 에서 $b=-0.543(\beta=-0.094)$ 로 약 41.1%(β 값 상으로는 72.4%)나 감소하였다. 실제로 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무질서 변인들에 부(-)적으로,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에 정(+)적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은 여전히 직접적이고, 또한 매개변수들 가운데는 사회적 무질서만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을 보면 그것이 직접적이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은 크게 지지되지는 못한 것을 제시한다.

〈표 3-4-1〉 범죄두려움에 관한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 검증결과

|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β | T-ratio | 자유도 | P 값 | |
|-------------|-------|----------|---------|---------|---------|----------|-------|
| 절편 | G00 | 22,503 | 0,155 | | 144,772 | 423 | 0,000 |
| 지역사회경찰활동 | G10 | -0,923 | 0,149 | | -6,211 | 423 | 0,000 |
| 확률효과 | 표준 편차 | 변량요소 | | 자유도 | 카이제곱 | P 값 | |
| 절편 | U0 | 2,883 | 8,309 | | 423 | 2316,777 | 0,000 |
| 범죄두려움 | R | 6,785 | 46,033 | | | | |
| Deviance | = | 71858,34 | (DF=2) | | | | |

〈표 3-4-2〉 범죄두려움에 관한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그 매개변인들의 검증결과

| 고정효과: 피해두려움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β | T-ratio | 자유도 | P 값 | |
|-------------|-------|----------|---------|---------|---------|----------|-------|
| 절편 | G00 | 22,508 | 0,147 | | 152,872 | 419 | 0,000 |
| 물리적무질서 | G10 | 0,134 | 0,142 | 0,027 | 0,942 | 419 | 0,347 |
| 사회적무질서 | G20 | 0,538 | 0,175 | 0,107 | 3,066 | 419 | 0,003 |
| 지역유대 | G30 | -0,178 | 0,113 | -0,047 | -1,570 | 419 | 0,117 |
| 비공식통제참여 | G40 | 0,211 | 0,145 | 0,039 | 1,454 | 419 | 0,147 |
| 지역사회경찰활동 | G50 | -0,543 | 0,160 | -0,094 | -3,404 | 419 | 0,001 |
| 확률효과 | 표준 편차 | 변량요소 | | 자유도 | 카이제곱 | P 값 | |
| 절편 | U0 | 2,719 | 7,391 | | 419 | 2118,428 | 0,000 |
| 피해두려움 | R | 6,785 | 46,033 | | | | |
| Deviance | = | 71825,14 | (DF=2) | | | | |

4. 전체모델의 검증

지금까지는 취약성모델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까지 네 개의 모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모델들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넣어 분석해봄으로써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고 각 모델의 상대적 효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개인수준변인들의 영향력은 〈표 3-1〉에서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데, 개인수입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가($b = -3.665$), 연령은 낮을수록($b = -0.333$), 교육수준은 높은 사람들이($b = 0.537$), 끝으로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b=2.232) 범죄두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을 보면 단 연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는데 β 값은 -0.246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이 교육수준 (β =-0.087), 범죄피해경험(β =0.0793), 연령(β =0.0790) 순이었다.

〈표 4〉 범죄두려움에 관한 전체모델 검증결과

|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β | T-ratio | 자유도 | P 값 | |
|-------------|------|-------------|-------------|---------|------------|-------------|------------|
| 절편(B0) | G00 | 23.094 | 0.462 | | 49.941 | 417 | 0.000 |
| 지역경제수준 | G01 | 0.706 | 0.216 | 0.077 | 3.266 | 417 | 0.002 |
| 지역거주기간 | G02 | 0.016 | 0.023 | 0.027 | 0.704 | 417 | 0.481 |
| 물리적무질서 | G03 | 0.323 | 0.150 | 0.066 | 2.160 | 417 | 0.031 |
| 사회적무질서 | G04 | 0.414 | 0.177 | 0.083 | 2.331 | 417 | 0.020 |
| 지역유대 | G05 | -0.080 | 0.144 | -0.021 | -0.558 | 417 | 0.577 |
| 비공식통제참여 | G06 | 0.185 | 0.130 | 0.035 | 1.420 | 417 | 0.156 |
| 지역사회경찰활동 | G07 | -0.437 | 0.151 | 0.076 | -2.891 | 417 | 0.005 |
| 남성(B1) | G10 | -3.665 | 0.147 | -0.246 | -24.914 | 10658 | 0.000 |
| 연령(B2) | G20 | -0.333 | 0.050 | -0.0790 | -6.640 | 10658 | 0.000 |
| 교육수준(B3) | G30 | 0.537 | 0.077 | 0.087 | 6.946 | 10658 | 0.000 |
| 개인수입(B4) | G40 | 0.089 | 0.073 | 0.017 | 1.222 | 10658 | 0.222 |
| 범죄피해(B5) | G50 | 2.232 | 0.250 | 0.0793 | 8.946 | 10658 | 0.000 |
| 확률효과 | | 표준편차 | 변량요소 | | 자유도 | 카이제곱 | P 값 |
| 절편 | U0 | 2.612 | 6.823 | | 417 | 2103.762 | 0.000 |
| 범죄피해두려움 | R | 6.474 | 41.918 | | | | |
| Deviance | = | 70848.61 | (DF=2) | | | | |

지역수준변인들을 보면 총 일곱 개의 변인들 가운데 지역거주기간, 지역유대 및 비공식통제참여를 뺀 네 개의 변수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경제수준이 높을수록(b=0.706), 물리적 무질서(b=0.323)와 사회적 무질서(b=0.414)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낮을수록(b=-0.437)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β 값 상으로 사회적 무질서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0.083) 그 다음이 지역의 경제수준(β =0.077)과 지역사회경찰활동(β =-0.076), 물리적 무질서(β =0.066)순이었다. 이 결과는 무

질서모델과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사회통합모델의 영향력은 미약했고, 또한 사회통합모델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표 3-1〉에서부터 〈표 4〉까지의 Deviance값을 통한 모델비교에서도 보이듯 모든 변수를 총 망라한 총모델(70848.61)을 제외하고는 취약성모델 자료의 모델적합성(70917.08)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무질서모델(71861.24),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71858.34) 그리고 사회통합모델(71861.24)이 따랐다. 이와 같이 볼 때 범죄두려움은 개인수준의 변인이 지역수준의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2009년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구성원들의 범죄두려움과 그것의 설명요인을 알기 위해 여러 모델들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변인을 고려하는 취약성모델이외에 지역수준의 영향력을 다루는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검증하고, 특별히 거시지역수준의 개인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다수준적 검증에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우선 개별적으로 모델들을 검증한 결과로는 개인수준변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유의미하여 취약성모델이 어느 정도 가장 크게 지지되었고, 아울러 무질서모델과 지역사회경찰모델도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통합모델에서는 지역구조적 특성으로 지역경제수준이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없었으며, 그나마 지역경제수준도 사회통합모델과 기존 외국연구와는 다르게 지역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지지도는 가장 낮았다. 보다 정확한 분석은 여러 변인들이 서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표 4〉의 최종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개인수준요인들로는 개인수입을 제외하고, 성,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개인피해경험이 모두 $p < .001$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여성이, 그리고 과거에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결과는 취약성모델과 일치했으나, 연령과 두려움과는 부(-)적 관계이고,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을 더 겪는다는 결과를 제시해 취약성모델과

는 정반대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지역수준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가 가장 큰 영향력을 제시했고, 아울러 물리적 무질서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 무질서모델을 크게 지지했다. 아울러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두려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해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도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 하지만 사회통합모델과는 달리 지역유대나 비공식통제에의 참여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수준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보면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사회통합모델보다는 무질서모델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유대와 비공식 범죄통제활동에의 참여보다는 지역의 환경이 범죄두려움에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요성이 큰 것을 보면 범죄두려움에 있어서는 비공식통제보다 어느 정도 공식기관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또한 무질서모델 결과와 연관지워 보면 지역경찰이 순찰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이외에도 지역의 무질서 해결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이 무질서나 사회과정변인들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그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것을 보면 경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비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모델에서의 지역유대나 비공식통제에의 참여의 영향력은 낮았으나 그것은 차후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의 비공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미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범죄두려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결과는 사회통합모델의 예측과 달리 그 관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를 보면 하층의 빈곤 혹은 흑인비율이 높은 범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합적 효율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고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듯이, 실제로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과연 지역유대가 높고 비공식통제활동에의 참여가 높은 곳에서 두려움이 감소하는지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연령의 경우 취약성모델과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두려움을 더 겪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젊은층이 밤늦게 집밖 외출이 많아 범죄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취약성모델에서의 주장대로 과연 따로 노인층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두려움을 더 겪는지의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더 범죄두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은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이 자신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설명모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관한 몇몇 주요 모델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수준변인들이외에 지역수준의 변인들도 중요하다는 다수준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모델들에서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도 도출되는 바 앞으로 세밀한 분석과 또 새로운 모델의 구성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박정선. 2003. 다수준적 접근의 범죄학적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4(4): 281-314.
- 이성식. 2000a.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1(1):117-139.
- 이성식. 2000b.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133-159.
- 최인섭, 김지선. 1996.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Bellair, P.E. 1997.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crime: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eighbor networks. *Criminology* 35:677-704.
- Braungart, M.M., R.G. Braungart, and W.J. Hoyer. 1980. Age, sex, and social factors in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cus* 13:55-66.
- Bursik, R.J. and H.G. Grasmick, 1993. *Neighborhood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arcach, C., P. Frampton, K. Thomas, and M. Cranich. 1995. Explaining fear of crime in Queensland.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3):271-287.
- Clemente, F. and M.B. Kleinman, 1977.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ces* 56:519-30.
- Covington, J. and R.B. Taylor.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Sociological Quarterly* 32:231-249.
- Ferguson, K.M. and C.H. Mindel,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53(2):329-349.
- Ferraro, K.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erraro, K.F. and R. LaGrange.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70-101.
- Franklin, T.W., C.A. Franklin, and N.E. Fearn.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204-227.
- Gibson, C.L., J. Zhao, N.P. Lovrich, and M.J. Gaffney.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536-563.

- Kanan, J.W. and M.V. Pruitt. 2002. Modeling fear of crime and the perceived victimization risk: significance of neighborhood integration. *Sociological Inquiry* 72:527-548.
- Kelling, G.L. and C.M. Coles. 1996. *Fixing Broken Windows*. New York: Touchstone.
- LaGrange, R., K.F. Ferraro, and M. Supancic.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311-34.
- Lewis, D. and G. Salem. 1986. *Fear of Crime: Incivilities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Liska, A.E., A. Sanchirico, and M.D. Reed.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ocial Forces* 66:827-837.
- McCree, R., T. Shyy, J. Western, and R.J. Stimson. 2005. Fear of Crime in Brisbane: individual, social and neighborhood factors in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41(1):7-27.
- McGarrell, E.F., A.L. Giacomazzi, and Q.C. Thurman. 1997. Neighborhood disorder, integration and the fear of crime. *Justice Quarterly* 14:479-499.
- Morenoff, J.D., R.J. Sampson and S. Raudenbush.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517-33.
- Perkins, D.D. and R.B. Taylor. 1996. Ecological assessment of commun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63-107.
- Roh, Sunghoon and W.M. Oliver. 2005. Effects of community policing upon fear of crime. *Policing* 28(4):670-683.
- Rountree, P.W. and K.C. Land.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147-180.
- Rountree, P.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41-72.
- Salmi, S., M. Gronroos, and E. Keskinen. 2004. The role of police visibility in fear of crime in Finland. *Policing* 27(4):573-591.
- Sampson, R.J. and W.B.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774-802.

- Sampson, R.J., S. Raun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918-924.
- Sampson, R.J. and S. Raundenbush.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03-651.
- Scheider, M.C., T. Rowell, and V. Bezdikian. 2003. The impact of citizen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on fear of crime. *Police Quarterly* 6(4):363-386.
- Silver, E. and L.L. Miller. 2003.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3):551-583.
- Skogan, W.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C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kogan, W. and M.G. Maxfield.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Sage.
- Skogan, W. and S.M. Harnett. 1997. *Community Policing, Chicago Sty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R.B. and M. Hale.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151-189.
- Villarreal, A. and B. Silva.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1725-1753.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681-702.
- Will, J.A. and J.H. McGrath. 1995. Crime, neighborhood perceptions, and the underclas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class posi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163-176.
- Wilson, J.Q. and G. Kelling. 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11:29-38.
- Wilson, W.J. 1996. *When Work Disappears*. Knopf.
- Wyant, B.R. 2008. Multilevel impacts of perceived incivilities and perception of crime risk on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1):39-64.
- Zhao, J.S., M. Scheider, and Q.C. Thurman. 2002. The effect of police presence on public fear reduction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literature. *The Justice Professional* 15:273-299.